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17-156

www.kcpi.or.kr

2017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통합지표

KCA

보건복지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CONTENTS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주요 변경내용

-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 1

Ⅰ. 서 론 ····· 23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 25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 28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성과 ····· 39
4.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 43

Ⅱ.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 47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 49
2.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 96

Ⅲ.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 113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115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219
영역 3. 건강·안전 ····· 267
영역 4. 교직원 ····· 351

Ⅳ. 부 록 ····· 381

「자체점검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 383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주요 변경내용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신청 - 재인증 사전신청	평가인증 과정은 상시 신청 이후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3단계로 인증결과 발표까지 진행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상시 신청 이후 참여확정, 현장평가, 종합평가 3단계를 거쳐 인증결과 공표까지 진행된다.
	〈변경〉 마. 재인증 사전신청 ------- (중 략) ------- ●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입원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 (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 · 39인 이하 ↔ 장애아전문으로 변동되는 경우) - 3차 지표 시범사업 진행 희망	마. 재인증 사전신청 ------- (중 략) ------- ●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입원 - 소재지 변경 〈삭제〉
참여 확정 단계 - 참여확정 자격	〈변경〉 가. 참여확정 자격 ------- (중 략) -------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가. 참여확정 자격 ------- (중 략) ------- 〈삭제〉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참여 확정 단계 - 기본 사항 확인</td>
<td>
나. 기본사항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은 기수별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을 지자체에 안내한다.
------- (중 략) -------
◎ 기본사항
• 필수항목 : 9항목
<table>
<tr><th>항목</th><th>평정</th><th>평정기준</th></tr>
<tr><td colspan="3">------- (중 략) -------</td></tr>
<tr><td rowspan="2">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td><td>준수</td><td>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td></tr>
<tr><td>미준수</td><td>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td></tr>
</table>

〈변경〉
• 기본항목(2017년 4월 기본사항 확인 어린이집(신규인증 3기, 재인증 5기)부터 적용)
※ 2017년 3월 기본사항 확인 어린이집(신규인증 2기, 재인증 4기)은 2016년 기본사항 확인 평정기준에 따름
</td>
<td>
나. 기본사항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기수별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에서는 기수별로 해당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항목을 확인한다.
------- (중 략) -------
◎ 기본사항
• 필수항목 : 9항목
<table>
<tr><th>항목</th><th>평정</th><th>평정기준</th></tr>
<tr><td colspan="3">------- (중 략) -------</td></tr>
<tr><td rowspan="2">어린이집의 설치기준</td><td>준수</td><td>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td></tr>
<tr><td>미준수</td><td>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td></tr>
</table>

• 기본항목(2017년 9월 기본사항 확인 어린이집(신규인증 8기, 재인증 10기)부터 적용)
〈삭제〉
</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참여 확정 단계 - 기본 사항 확인</td>
<td>
<table>
<tr><th>평정</th><th>구분</th><th>평정기준</th><th>감점</th></tr>
<tr><td rowspan="5">10점 만점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td><td rowspan="5">운영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td><td colspan="2">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td></tr>
<tr><td>-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td><td>8점</td></tr>
<tr><td>-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td><td>6점</td></tr>
<tr><td>-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td><td>4점</td></tr>
<tr><td colspan="2">※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운영정지 산정기간에 따름</td></tr>
</table>
</td>
<td>
<table>
<tr><th>구분</th><th>확인내용</th><th>결과반영</th></tr>
<tr><td rowspan="6">운영정지*</td><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td><td rowspan="8">종합 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td></tr>
<tr><td rowspan="2">과징금 처분*</td><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참여 확정 단계 - 기본 사항 확인</td>
<td>
<table>
<tr><th>평정</th><th>구분</th><th>평정기준</th><th>감점</th></tr>
<tr><td rowspan="15">10점 만점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td><td rowspan="4">보조금 반환명령*</td><td colspan="2">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td></tr>
<tr><t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td><td>5점</td></tr>
<tr><t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td><td>3점</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5호</td><td>2점</td></tr>
<tr><td rowspan="5">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td><td colspan="2">영유아보육법 제46조</td></tr>
<tr><td>- 제4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td><td>6점</td></tr>
<tr><td>-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td><td>5점</td></tr>
<tr><td>-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td><td>3점</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8조</td><td>3점</td></tr>
<tr><td rowspan="5">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td><td colspan="2">영유아보육법 제47조</td></tr>
<tr><td>-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td><td>4점</td></tr>
<tr><td>-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td><td>2점</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8조</td><td>2점</td></tr>
<tr><td colspan="2">※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td></tr>
<tr><td rowspan="2">시정 명령*</td><td>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2건 이상</td><td>2점</td></tr>
<tr><td>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1건</td><td>1점</td></tr>
</table>
</td>
<td>
<table>
<tr><th>구분</th><th>확인내용</th><th>결과반영</th></tr>
<tr><td>보조금 반환명령*</td><td>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td><td rowspan="7">종합 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td></tr>
<tr><td rowspan="2">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td><td>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td></tr>
<tr><td rowspan="2">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td><td>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td></tr>
<tr><td></td><td>〈삭제〉</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참여확정 단계 - 기본사항 확인</td>
<td>
<table>
<tr><th>평정</th><th>구분</th><th>평정기준</th><th>감점</th></tr>
<tr><td rowspan="6">10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td><td rowspan="3">식품 위생법 위반*</td><td>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td><td>3점</td></tr>
<tr><td>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td><td>2점</td></tr>
<tr><td>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또는 제74조 시설 개수명령</td><td>1점</td></tr>
<tr><td rowspan="2">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td><td>아래의 사항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세입, 세출) 예·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td><td>2점</td></tr>
<tr><td>〈신설〉</td><td></td></tr>
</table>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 전체 감점 점수가 10점을 초과할 경우 10점까지만 감점 처리
</td>
<td>
<table>
<tr><th>구분</th><th>확인내용</th><th>결과반영</th></tr>
<tr><td>식품 위생법 위반*</td><td>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td><td rowspan="3">종합 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td></tr>
<tr><td></td><td>〈삭제〉</td></tr>
<tr><td>아동 복지법 등 위반*</td><td>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td></tr>
</table>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td>
</tr>
</table>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참여 확정 단계 - 기본 사항 확인	〈변경〉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 〈신설〉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참여 확정 단계 -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변경〉 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한다. 〈신설〉	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안내한다. ◎ 어린이집은 참여확정 마지막 달에 영역별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내용 • 평가항목별로 Y 또는 N에 체크,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영역별 특장점 및 개선 노력을 작성한다.(부록 참고)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참여확정마감일(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한다.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은 현장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참여 확정 단계 - 참여 수수료 납부	〈변경〉 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신설〉	라. 참여수수료 납부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한다.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현장 평가 - 현장 평가 실시	〈변경〉 나. 현장관찰 실시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며 현장관찰은 1일간 실시한다.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이다. 〈신설〉 ------- (중 략) -------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현장관찰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관찰일에 현원·출석(정원의 1/3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심의 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 (중 략) ------ 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④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등 ◎ 현장관찰 후 상호확인 ------- (중 략) ------- ※ 현장관찰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사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나. 현장평가 실시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며 현장평가는 1일간 실시한다.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이다. ※ 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중 략) -------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4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다만, 정원 15명 이하는 3명, 정원 16~20명은 4명)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평가일에 현원·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종합평가 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 (중 략) ------ ② 현장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삭제〉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중 략) ------- ※ 현장관찰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현장 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변경〉 4) 3단계 : 심의 다. 부적절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 〈신설〉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관찰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부적절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한다.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 항목) 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평가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한다. ------- (중 략) ------- ◎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1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으로 처리한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보육정책과-1719, 2017.2.28.)의 '부적절사례'에 해당함
종합평가 단계 - 종합평가 위원회 구성	〈변경〉 4) 3단계 : 심의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된다. ------- (중 략) ------- 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중 략) -------	4) 3단계 : 종합평가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 (중 략) ------- 가.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중 략) -------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td>종합평가
단계
-
종합평가
진행</td><td>나. 심의
◎ 심의진행
• 심의는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의견서 및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td><td>나.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td></tr>
<tr><td>종합평가
단계
-
종합평가
절차</td><td>〈변경〉
◎ 심의기준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
심의
필수확인
항목</td><td>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td></tr></table></td><td>다. 종합평가 절차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
소위원회</td><td>■ 학계, 행정, 현장전문가 3인 1조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기본사항 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인증여부 결정,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현장평가 결과 및 확인사항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인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평가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td>종합평가 단계 - 종합평가 절차</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2단계) 기본사항 확인서, 자체점검 보고서, 현장관찰 보고서 등</td><td>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 (중 략) ------
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td></tr>
</table>
※ 각 기수별로 심의 종료~결과발표 직전 최종심의를 실시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심의 시 반영될 수 있음
</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2단계) 종합평가 위원회</td><td>■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등급 및 인증여부를 결정</td></tr>
</table>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기본항목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 결과 반영
</td></tr>
<tr><td>종합평가 단계 - 참여변동 사항 확인</td><td>〈변경〉
6) 참여변동사항 확인
------- (중 략) -------
나.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한다.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불인증’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변경〉
다.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중 략) -------
◎ 한국보육진흥원
•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반영함</td><td>라. 참여변동사항 확인
------- (중 략) -------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참여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한다.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불인증’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삭제〉
◎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중 략) -------
• 한국보육진흥원
-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인증결정</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종합평가
단계
-
인증결정</td>
<td>〈변경〉
라. 인증결정
◎ 인증결정은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table><tr><th>구 분</th><th>반영비율</th></tr><tr><td>기본사항확인서</td><td>10%</td></tr><tr><td>자체점검보고서</td><td>10%</td></tr><tr><td>현장관찰보고서</td><td>55%</td></tr><tr><td>심의위원회의견서</td><td>25%</td></tr><tr><td>총 계</td><td>100%</td></tr></table>◎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점 만점)/75점(100점 만점)이다.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심의 필수확인 항목’ 발생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인증과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 인 증 : 신규인증 및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 인증유보 : 신규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불 인 증 : 신규인증 재참여 및 재인증 어린이집의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td>
<td>마. 인증결정
◎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래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차하위등급으로 조정되는 사항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⑥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⑦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⑧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 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
⑩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⑪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종합평가
단계
-
인증결정</td>
<td>〈변경〉
•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불인증
※ 다만, 해당 시설이 여타 ‘심의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참여변동사항 중 ① 소재지 변경 또는 ② 정원·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③ 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 관리’의 절차 및 수수료를 따름
* 재인증 참여과정 중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 현장관찰 이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table>
<tr><th>인증결과</th><th>총 점</th><th>영역별 점수</th></tr>
<tr><td>인 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 rowspan="3">인증유보
(신규인증)
불인증
(재인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able>
※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인증결과가 인증유보인 경우 재참여 과정에 참여 가능함</td>
<td>◎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하고, 등급에 따라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 (인증) A, B, C등급
※ B, C등급의 경우는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신청 가능
• (불인증) D등급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증’으로 결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확인하여 정함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본사항 확인 시작일부터 현장평가 이전에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평가인증 기준▐
<table>
<tr><th>어린이집 등급</th><th>인증구분</th></tr>
<tr><td>A등급, B등급, C등급</td><td>인 증</td></tr>
<tr><td>D등급</td><td>불인증</td></tr>
</table>
※ 평가결과 D등급 어린이집(신규 또는 재인증)은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재참여 시 인증결정이 유보됨</td>
</tr>
<tr>
<td>결과
공표
단계
-
결과
통보</td>
<td>〈변경〉
마. 인증결과 발표
〈신설〉

------- (중 략) -------</td>
<td>5) 결과 공표
가. 결과 통보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등을 통해 통보한다.
------- (중 략) -------</td>
</tr>
</table>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결과 공표 단계 - 결과 통보	〈위치변경〉	◎ 인증서 및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인증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부한다. ※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 발급된 현판 사용)
결과 공표 단계 - 소명	〈신설〉	나. 소명 ◎ 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인증결과(A~D 등급)에 대한 소명신청이 가능하다. • 평가인증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소명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명 절차 소명 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 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함 • 최종 인증결과를 공표함
결과 공표 단계 - 재참여	〈변경〉 5) 재참여 관리 〈신설〉 〈변경〉 ◎ 재참여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참여 신청 ⇒ 재점검(2개월) ⇒ 재관찰/재심의(1개월 내외) ⇒ 결과통보	다. 재참여 ◎ 인증참여 어린이집(신규, 재인증) 중 인증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재참여 절차 재참여 신청 ⇒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2개월) ⇒ 현장평가/종합평가(1개월 내외) ⇒ 결과통보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결과 공표 단계 - 재참여	◎ 재참여신청 및 참여수수료 납부 • 재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수수료: 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 (중 략) -------	◎ 재참여 신청 •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수수료: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중 략) -------
	◎ 재점검 • 시·군·구는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기본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참여 시 평정점수를 반영하나, 이후(최초 참여확정 마감일~재점검 마감일) 추가 감점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 평정된 점수에 추가 반영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시·군·구는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삭제〉
	• 재참여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재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 재참여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재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
	◎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관찰이 진행된다. ※ 단, 참여변동사항이 발생(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장평가/종합평가 • 재참여 신청 어린이집은 전체영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기본사항 확인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 여부를 재확인한다. 〈삭제〉
	•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수사례·부적절사례를 재확인한다. 〈신설〉	〈삭제〉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최종 등급 및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결과
공표
단계
-
재참여</td>
<td>◎ 재참여 결과
•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된 경우 해당 참여 과정은 모두 종료된다.

<table>
<tr><th>재참여
인증결과</th><th>총 점</th><th>영역별 점수</th></tr>
<tr><td>인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 rowspan="3">불인증</td><td>기준 점수 이상</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이상</td></tr>
<tr><td>기준 점수 미달</td><td>기준 점수 미달</td></tr>
</table>
</td>
<td>◎ 재참여 결과
• 재참여 결과는 인증여부 및 등급으로 공개하며 불인증인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된다.
※ 재참여 결과 인증인 경우, 신규인증은 재참여 결과통보월의 15일부터, 재인증은 당초 참여기수의 유효기간 시작시점부터 유효기간 시작
〈삭제〉</td>
</tr>
<tr>
<td>결과
공표
단계
-
결과
공표</td>
<td>〈신설〉</td>
<td>라. 결과공표
◎ 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결과(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참여·변동(취소, 만료 등)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부터 공표
• (공표 내용) 인증여부, 등급(영역별 등급, 어린이집 등급), 평가결과통보서(총평, 개선필요 사항)
※ 재참여 및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공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table>
<tr><th>구분</th><th>결과공표</th></tr>
<tr><td>A~C등급</td><td>인증(A~C등급)</td></tr>
<tr><td>D등급</td><td>불인증(D등급)</td></tr>
<tr><td>미인증(인증취소·종료·만료)</td><td>미인증(인증취소·종료·만료)</td></tr>
<tr><td>평가 미참여</td><td>미인증(평가인증 미신청)</td></tr>
</table>
</td>
</tr>
</table>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결과 공표 단계 - 인증유효 기간 관리	〈변경〉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 인증은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매월 1일 → 15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참여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한다('11~13년 인증어린이집 한함). ※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래 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함	마. 인증유효기간 관리 ◎ 인증 결과가 통보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유효하며, 인증 통과 어린이집 중 A등급은 1년 연장한다. ※ 'A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 'B, C등급'은 3년 ※ '11~13년 인증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매월 1일 → 15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참여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함 ※ 재인증 사전신청을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래 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함
결과 공표 단계 - 재평가 관리	〈신설〉	6) 재평가 관리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신청대상 : 평가결과 등급이 B, C인 어린이집 중 재평가 희망 어린이집 •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신청 가능함. ◎ 재평가 절차 재평가 신청 ⇒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통보 ◎ 재평가 신청 • 평가결과 통보월부터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평가수수료를 납부한다. • 수수료 : 40만원(99인 이하), 60만원(100인 이상) • 환불 : 재평가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td>결과
공표
단계
-
재평가
관리</td><td></td><td>
<table>
<tr><th>재평가신청
마감일까지*</th><th>현장관찰자
파견 전**</th><th>현장관찰자
파견 후</th></tr>
<tr><td>100%</td><td>50%</td><td>0%</td></tr>
</table>
* 재평가 신청 마감일은 재평가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환불은 참여확정 마감일 익일부터 현장평가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참여 포기·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나. 재평가 과정 및 결과공표
◎ 재평가 과정은 평가인증 과정과 동일하게 1단계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로 진행한다.
◎ 재평가 결과공표
• 재평가에 따른 결과통보, 소명, 재참여, 결과통보, 인증유효기간은 〈5. 평가인증 결과공표〉의 내용을 적용한다.
</td></tr>
<tr><td>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
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td><td>〈변경〉
7)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 입력·제출 한다.
〈신설〉</td><td>7)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 한다.
• 2018년 상반기 제출대상부터 통합지표를 적용함</td></tr>
</table>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 관리 - 확인 점검	〈변경〉 다. 확인점검 ------- (중 략) ------- ◎ (확인내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 사례 ◎ (결과반영)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일 경우 자체 개선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신설〉	다. 확인점검 ------- (중 략) ------- ◎ (확인내용)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결과활용)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A등급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잔여 유효기간동안 A등급으로 결과 공표)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인 경우 자체개선 •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단, 2018년도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 관리 - 확인 점검	〈신설〉	◎ (경과조치)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결과활용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인증당시 지표를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결과반영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 관리 - 인증 취소	〈변경〉 라. 인증취소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 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 방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 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신설〉	라. 인증취소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 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 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 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정원·운영형태 변경은 2차 지표 적용 어린이집에 한함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 관리 - 확인 방문	〈변경〉 마. 확인방문 ◎ 확인방문의 신청 ------- (중 략)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 운영형태 변경: 시·군·구에서의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신설〉	마. 확인방문 ◎ 확인방문의 신청 ------- (중 략)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 시·군·구에서의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2차 지표 적용 어린이집에 한함

<table>
<tr><th>항목</th><th>변경 전(2017.3)</th><th>변경 후</th></tr>
<tr>
<td>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
관리
-
확인
방문</td>
<td>〈변경〉
◎ 확인방문 실시
------- (중 략) -------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table>
<tr><th colspan="2">평가인증지표 전 영역</th></tr>
<tr><th>40인 이상 및 장애아전문</th><th>39인 이하</th></tr>
<tr><td>영역 1. 보육환경
영역 2. 운영관리
영역 3. 보육과정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역 6. 안전</td><td>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2. 보육과정
영역 3.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 4. 건강과 영양
영역 5. 안전</td></tr>
</table>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지표 중 해당 영역
<table>
<tr><th colspan="2">평가인증지표 중 해당 영역</th></tr>
<tr><th>40인 이상 및 장애아전문</th><th>39인 이하</th></tr>
<tr><td>영역 1. 보육환경
영역 5. 건강과 영양
영역 6. 안전</td><td>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4. 건강과 영양
영역 5. 안전</td></tr>
</table>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된다
〈신설〉</td>
<td>◎ 확인방문 실시
------- (중 략) -------
- 확인내용 :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삭제〉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내용 : 통합지표 중 해당 영역(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3영역 건강·안전)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삭제〉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통합지표 적용 결과 모든 영역이 C등급 이상인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등급이 D등급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 된다.
◎ 경과조치
•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인증유지 여부결정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td>
</tr>
</table>

항목	변경 전(2017.3)	변경 후
경과 조치	〈신설〉	8) 경과조치 ◎ 적용 대상 어린이집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는 2017년 10월 참여확정, 2017년 11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함 - 2017년 11월 이전 평가인증 현장관찰 대상 어린이집은 2차 또는 3차 시범지표를 선택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 평가인증 후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확인점검, 확인방문은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8년 3월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를 적용함

Ⅰ 서 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성과
4.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I
서 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배경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요구는 매우 높아졌다. 특히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에 대한 중요성과 영유아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미래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활발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고 1995년부터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은 양적 측면에서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 내 급속한 어린이집 양적 확충정책의 결과는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부모의 요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보육발전위원회, 2001; 서문희·이상헌·임유경, 2000; 양옥승, 2000; 유희정, 1998; 이순형·이옥경, 1999; 정기원·오미영·안현애, 1995). 이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이전까지 매우 미흡했던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신고제 운영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설립이 쉬웠던 이유로 민간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양적

확충에 집중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던 탓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는 보육 수요자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 스스로도 심각하게 보육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및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평가인증제도는 인가 후 어린이집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질 관리 제도로써, 어린이집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의 미흡했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한 대표적 질 관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2006년 본격 시작된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제1차 평가인증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까지 완료되었으며, 제2차 평가인증은 개정된 지표를 적용하여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3차 시행을 위한 지표 개정이 2014년 추진되어 지표(안)이 2014년 11월경 개발되었으나, 2014년 말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유보통합 1단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평가체계 구축이 추진됨에 따라 3차 지표(안)은 2차 지표와 병행하여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체계 통합은 기관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각각의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도 6월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이 발표되어 2017년 하반기부터 부처별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보육의 발전은 단순한 양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발한 보육은 태어난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최근 부모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영유아 양육과 양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서비스의 실제를 제시하고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익한 어린이집 선택기준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기제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2003년부터 지표 및 운영체계가 개발되어 2년여에 걸쳐 시행준비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2009년까지의 제1차 시행시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지표개정을 통해 제2차 평가인증이 추진되었으며, 2014년 3차 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을 거쳐 2017년 11월부터는 유보통합지표를 적용한 제3차 평가인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수렴·발표(2002. 3.)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관련 연구용역 실시(2003. 4.~12.)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제30조〕(2004. 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2005)
-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06~2009)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진행(2009. 3.~12.)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10~2017. 10)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2013. 9.)
- 3차 지표 개발 및 의견수렴(2014)
- 3차 지표 시범사업 시행(2014. 11.~2017. 10)
-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 발표(유보통합추진단)(2016. 6)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적용)(2017. 11~)

1)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1)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주요 특징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05년 시범운영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제1차 평가인증 시행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평가인증 제도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및 1차 시행기간 중 평가인증 지표를 재정비하고 적절성을 보완하였다. 2005년 시범운영에서는 지표를 어린이집 규모와 재원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21인 이상, 21인 미만,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4종으로 구분하였으나, 모든 규모의 어린이집에 영아들이 재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의 규모별 지표에 영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21인 이상, 21인 미만,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 3종으로 개편하여 2006년 본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8년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지표적용 기준을 21인에서 40인으로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현재까지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용 3종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둘째, 어린이집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당초 인증유보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재참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불인증된 어린이집이 원하는 경우 인증과정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참여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인증제도의 목적이 인증통과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자체점검 및 전체 인증과정 소요기간을 점차 단축하였다. 평가인증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집 스스로가 운영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는데 있다. 따라서 제도도입 초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지표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점검 준비 등을 위해 전체

인증과정 중 자체점검 기간을 4~5개월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의 준비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8년부터 자체점검 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함으로써 6~7개월 내에 전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어린이집의 편의성을 위해 참여수수료 납부 이전에 참여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인증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질적 수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인증과정의 진행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점차적으로 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이 인증통과 당시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인증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문지원, 인증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한 교육 등이 시작되었고, 2009년부터는 인증취소사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재지 변경 등 일부 예외적인 품질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인방문을 통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도부터 1차 시행시기를 종료하는 2009년까지 전국에서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 수는 총 29,084개소에 달하였고, 그 중 20,402개소의 어린이집이 인증을 통과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시범운영 시 참여를 신청했던 1,089개소 중 650개소가 인증에 통과하였으며, 매년 참여신청 어린이집 수와 인증통과 어린이집 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 2009년에는 9,440개소가 신청하여 총 7,303개소가 인증에 통과하였다.

1차 시행의 연도별 인증통과 및 설립유형별 인증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2〉

▌표 1▐ 1차 평가인증 신청 및 통과현황(2005~2009)

기준일 : 2009. 12. 31. 단위 : 개소

구분	2005(시범)	2006	2007	2008	2009
인증신청	1,089	4,420	6,359	7,776	9,440
인증통과	650	2,804	4,181	5,464	7,303

2009년 말 기준 인증유지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16,686개소의 어린이집이 인증을 유지하여 46.9%의 유지율을 나타낸다. 당시 인증유지 어린이집의 설립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이 93.3%, 84.2%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체 어린이집의 약 89.2%에 달하는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은 각각 39.0%, 46.9%로 나타나 1차 시행을 마감하는 시기인 2009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설립유형에 따라 인증유지율의 편차가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이나 협동어린이집과 같이 설립주체의 철학이나 인식 등이 평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린이집은 더욱 편차가 큰 경향이 나타나,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25.8%에 불과하였다.

▌표 2▐ 설립유형별 인증유지 어린이집 현황(2009)

기준일 : 2009. 12. 31.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어린이집	1,917	1,470	370	17,359	66	14,368
인증유지	1,615	1,371	175	6,775	17	6,733
인증유지율(%)	84.2	93.3	47.3	39.0	25.8	46.9

(3)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질적 수준

1차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증어린이집의 전체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인증통과 기준 점수 73.33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어린이집의 운영형태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86.9점,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87.8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92.7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역의 점수가 높은 편으로 해당 영역에서는 평균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영역의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1차 시행 운영형태별 총점 및 영역별 평균점수

단위 : 점

구분	전체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영역6	영역7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지역 사회와의 협력
40인 이상	86.9	92.6	90.6	91.4	93.5	90.6	85.9	91.7
39인 이하	87.8	93.0		91.0	95.4	90.6	89.1	-
장애아 전담	92.7	94.4	94.8	95.5	96.4	94.2	88.5	96.2

* 39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1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영역 보육과정, 3영역 상호작용, 4영역 건강과 영양, 5영역 안전'으로 이루어짐

2)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1)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주요 특징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은 제1차 평가인증 시행에 이어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의 정착과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인 질 관리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표 개정을 통해 법적 사항 준수, 건강 및 안전기준 강화, 수요자중심 평가요소 도입 등을 지향하였다.

첫째, 인증과정 및 사후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2010년 2차 평가인증 시행에 들어가면서 1차 시행 시 인증에 통과한 후 인증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인증 과정을 신설하여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과정에서는 신청 이전에 자체점검을 상시화 함으로써 인증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법적 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자체가 함께 해당 지역 내 어린이집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결정 시 어린이집에서 보고하는 자체점검 반영비율은 낮추고 현장관찰의 비중은 높였다.

또한 인증유지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증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해 재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기준 미달 시 신청 가능했던 재참여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2012년부터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을 불시 방문하여 인증유지 수준을 점검하는 확인점검을 신설하였다. 확인점검 결과는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인증유지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질 관리 기제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관찰 과정 운영을 위해 현장관찰 진행절차 개선 및 관찰자 평가관리를 강화하였다. 2012년 현장관찰 후 관련 항목들에 대해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확인을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는 공정한 평가과정 운영을 위한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과정을 신설하였다. 2015년부터는 현장관찰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관찰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셋째, 법적사항 준수, 건강·안전 관련 지표 등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지표의 평정기준은 어린이집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평가지표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기본적인 법적 사항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영아용 보호장구,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의 안전관련 지표 등의 평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우수사례에 신설하였다.

2014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3차 시범지표를 개발하여 재원 중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정원,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차 시범지표는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와 실행과정 중심의 평가개선으로 실제적인 보육의 질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2014년 이후 2017년 10월까지 어린이집에서 2차와 3차 시범지표를 선택하여 스스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어린이집 선택권 강화를 위한 평가인증 결과공표를 시행하고, 평가지표에 부모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인증여부와 점수 등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고, 이후에는 평가인증지표에 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준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상시 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문서 준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였다. 2011년 이후 평가인증 문서자료, 온라인 교육영상 등을 보급하였고 매월 지표교육을 상설화하였으며,

사후관리 안내서를 인증어린이집에 배포함으로써 인증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1차 시행과 비교하여 달라진 제2차 평가인증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제1차 및 제2차 평가인증의 특징 비교

구분	제1차 평가인증		제2차 평가인증
참여대상	• 신규인가 1년 미만 참여 제한	⇨	• 신규인가 1년 미만 참여 가능
평가 인증 지표	- 40인 이상 7영역 80항목 - 39인 이하 5영역 60항목 - 장애아전담 7영역 85항목	⇨	• 지표항목 축소 - 40인 이상 6영역 70항목 - 39인 이하 5영역 55항목 - 장애아전문 6영역 75항목
			• 지표의 적절성 보완 - 평정 기준 상향 조정 - 비중 조절
법적기준 강화	• 필수항목 확인(3항목)	⇨	• 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확인 (11항목)
합리적 운영	• 소요기간 : 6~7개월		• 소요기간 : 4개월
	• 인증결정 반영비율 - 자체점검보고서 25% - 현장관찰보고서 50% -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	• 인증결정 반영비율 - 자체점검보고서 10% - 기본사항확인서(신설) 10% - 현장관찰보고서 55% -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통과점수	• 73.33점	⇨	• 75점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 방문지원, 교육 등	⇨	• 연차별 자체점검, 확인방문, 확인점검 등

(2)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2010년부터 시작된 2차 평가인증은 미인증 상태의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신규인증 과정과 인증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어린이집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재인증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2011년부터는 매년 10,0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 인증에 참여하여 통과하였다.

2차 시행의 연도별 인증통과 및 설립유형별 인증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5, 6〉

▌표 5▐ 2차 평가인증 신청 및 통과현황(2010~2016)

기준일 : 2016. 12. 31. 단위 :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증신청	8,847	12,899	13,328	13,408	13,036	11,821	11,682
인증통과	6,899	11,331	11,506	12,746	12,618	11,322	7,150*

* 신규인증 1~7기, 재인증 1~9기까지 포함된 수

▌표 6▐ 설립유형별 인증유지 어린이집 현황(2016)

기준일 : 2016. 12. 31.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어린이집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인증유지	2,636	1,289	687	11,194	16,360	65	564
인증유지율(%)	92.2	91.9	85.4	78.2	79.4	41.4	59.5

(3)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질적 수준

2차 시행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2010년에는 87.9점이었던 인증참여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매년 상향하여 2016년 95.9점까지 상승하였다. 1차 시행 시 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87.4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차 참여했던 어린이집의 전체 평균점수는 2016년 말 현재 93.5점으로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며, 총점 및 대부분의 영역의 점수가 신규인증 어린이집보다 재인증 어린이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에 대한 점수가 높은 편이며, 신규인증, 재인증 전 유형에서 안전영역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1차 시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영역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임을 나타낸다.

▌표 7▐ 2차 시행 운영형태별 총점 및 영역별 평균점수

기준일 : 2016. 12. 31. 단위 : 점

구분		전체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영역6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신규 인증	40인이상	91.9	96.4	92.5	95.6	92.8	91.8	89.3
	39인이하	92.4	93.7		94.6	94.8	92.1	91.7
	장애아전담	94.3	97.2	94.9	98.3	96.8	93.8	89.8
재인증	40인이상	94.3	97.8	94.8	96.9	93.9	93.9	90.9
	39인이하	94.8	96.2		96.2	96.0	94.0	94.0
	장애아전담	95.3	96.9	95.9	97.9	96.6	94.4	90.8

* 39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1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영역 보육과정, 3영역 상호작용, 4영역 건강과 영양, 5영역 안전'으로 이루어짐

3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어린이집의 인증통과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신규인증 어린이집은 92.1점, 재인증 어린이집은 94.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 영역의 점수가 90점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안전 영역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편으로 이는 1차 시행, 2차 시행에서의 2차 지표 선택 어린이집의 결과와 동일하여 역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영역은 안전 부분임이 확인되었다.

▌표 7▐ 3차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총점 및 영역별 평균점수

기준일 : 2016. 12. 31. 단위 : 점

구분	전체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영역6
		보육환경	건강	안전	보육과정 운영	보육활동과 상호작용	운영관리
신규인증	92.1	94.3	93.4	91.0	92.9	94.1	94.3
재인증	94.1	94.6	94.5	92.4	94.8	94.9	96.8

* 3차 시범지표는 어린이집 유형 구분 없이 통합된 지표임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성과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정착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부담, 변별력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 2차 시행을 거치면서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한다.

여러 연구와 조사 결과에서도 평가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로 인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평가인증 시행결과에서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약 80%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고, 1차 시행 시 평균점수 87점대에서 2차 시행 시 평균점수가 93점대로 나타나 참여한 어린이집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평가인증에 대한 이해와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의 시행이 평가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평가인증제도가 도입 시 목적했던 보육서비스 질 관리 기제로써의 역할, 합리적인 재정집행의 기준 제공 등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처럼 평가인증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약 10여년 동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제로의 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육교직원들의 평가준비를 위한 업무 경감, 평가 후 보육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사후 관리 등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과

2005년 평가인증 실시 이후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인식, 효과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한 어린이집의 88.8%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4.0%가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인증 참여 과정을 통한 교사의 변화로는 1순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2순위 '직무에 대한 애정과 만족도 향상'을 꼽았다. 특히 교사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영유아를 위한 환경이 개선된 점'과 '교사 자신을 계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꼽아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된 인증통과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사와 원장의 자부심과 교사 효능감을 높이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인증어린이집에 비하여 평가

1) 서문희·김온기·김명순·서영숙·이완정·서소정·나종혜·김은영·이계윤·이원선·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인증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부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증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인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 간에 교사 효능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 원장의 약 40%, 응답 보육교사의 60%가 평가인증통과가 보육아동 모집 등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2]. 평가인증 참여 이전과 참여 이후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현장관찰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환경개선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점수가 사전관찰 75.3점에서 평가인증 시 89.6점으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78.1점에서 평가인증 시 90.6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각 지표의 하위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의 효과성 및 편익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3]. 보육관계자, 원장 및 교사, 부모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전반적 질적 수준 향상, 환경개선, 교직원 전문성 향상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부모들도 영양·건강·안전, 교육내용, 물리적 환경, 교사 자질에 기본적인 신뢰를 보였다. 또한 평가인증제도 도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정도를 화폐가치로 환가하여 평가인증제도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가정한 경우는 순편익이 1조 1,302억원으로 편익비가 20배가 넘고, 2009년 이후 민간시설과 가정시설에만 적용할 경우는 순편익이 5,032억원으로 편익비가 8.5배로 계산되는 등 평가인증은 편익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

2)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3)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 평가인증 운영체계와 지표, 인증에 대한 인식 및 효과 등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평가인증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학계, 원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 시행을 평가한 결과, 90% 이상이 어린이집 질 관리 방안으로 평가인증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60% 이상은 매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4].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집단이 그렇지 않은 교사집단에 비해 평가인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 개인적 효능감과 직무만족도 또한 비참여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고[5], 평가인증이 교사의 보육활동 자료 활용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평가인증 참여가 교사의 보육과정과 궁극적으로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고되었다[6]. 그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가졌던 평가인증제도의 부정적인 시각이 평가인증 참여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고[7], 평가인증 참여가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과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8]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인증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부모, 영유아의 발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4)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5) 조미환·성은영(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 한국보육학회지, 12, 101-119.

6) 김영희·박지현·이은주(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3), 387-397.

7) 김향은(2008).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효과. 아동학회지, 29(1), 169-188.

8) 남미경(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발달과 교수 효능감 및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3), 68-90.

4.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1)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배경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제도도입 이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자율신청방식의 인증참여로 인한 평가 사각지대 발생, 현장의 평가부담 등으로 평가인증 운영체계와 지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관계부처 합동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통합지표와 운영체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행을 위해 보육단체별, 학계 전문가, 공무원,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 및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장 시범적용을 통해 통합지표의 현장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통합지표와 운영체계를 적용하여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다.

2)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주요 개선내용

(1) 통합지표 적용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의「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을 기초로 어린이집 특성화지표를 반영하여 4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영아 및 소규모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세부 평정기준을 조정하였다. 통합지표 영역은 2차 지표와 3차 시범지표 중 유사성이 높은 영역과 지표를 통합, 감축하여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의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강화하였다.

통합지표는 하위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로 구성되며 현행 평가인증 2차 지표의 점수평정 방식을 등급평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항목별 충족 여부와 개수에 따라 최종결과가 등급으로 산출된다. 또한 관찰과 면담의 평가방법 비중을 확대하고 보육일지 평가기간 단축 등 문서 확인 비중을 축소하였다.

(2) 운영체계 개선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현장평가를 100% 반영하여 결과를 산출하고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2차 시행에서의 기본사항 확인 필수항목은 3차에서도 유지하되, 참여 이전 1년 이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 영역별 및 기관 등급, 인증여부, 평가결과서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현재 불인증된 신규참여 어린이집만 실시하고 있는 재참여를 재인증 참여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B, C 등급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여 자체 품질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제2차 시행과 비교하여 달라진 제3차 평가인증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 8〉

표 8 제2차 및 제3차 평가인증의 특징 비교

구분	제2차 평가인증		제3차 평가인증
평가 지표	• 2차, 3차 시범지표 중 어린이집 선택 - (2차) 6영역, 70지표, 218개 단위 - (3차) 5영역, 50지표, 308개 단위	⇨	• 통합지표 - 4영역, 21지표, 123개 단위
평정 방식	• 절대평가 방식의 점수제 - 항목별, 영역별 점수 합산	⇨	•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A-B-C-D) - 평가항목에 대해 충족/미충족 체크
평가 절차	• 평가절차 : 4단계(4개월 소요) 신청 (어린이집) ⇨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지자체, 어린이집) ⇨ 현장 관찰 (현장 관찰자) ⇨ 심의, 결과 통보 (심의 위원회)		• 평가절차 : 4단계(4개월 소요) 신청 (어린이집) ⇨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지자체, 어린이집) ⇨ 현장 평가 (현장 평가자) ⇨ 종합평가, 결과통보 (종합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결정	⇨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평가관련 주요사항 심의·결정
	• 재참여(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 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불인증시 재참여 신청하는 경우 인증결과 통보를 유예하고, 3개월 이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통보		• 재참여 확대(신규→신규·재인증 참여 어린이집) • 재평가 신설 - B, C등급은 1년 이내 재평가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후 등급 결정·조정
평가 결과	• 절차별 배점 합산 방식 - (2차) 기본사항 확인 10%, 자체점검 10%, 현장관찰 55%, 심의 25% - (3차) 기본사항 확인 15%, 현장관찰 65%, 심의 20%		• 현장평가 100% 반영
	•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발생 시 점수 차감 - (2차) 10점 이내, (3차) 15점 이내	⇨	• 중대한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인증기준) 총점 및 영역별 점수 75점 이상 인증 • (유효기간) 3년 *공통 유효기간 적용		• (평가등급) 4등급(A~D), C등급 이상 인증, D등급 불인증 • (유효기간) 'A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 'B, C등급'은 3년, 'D등급'은 불인증
결과 공개	• 인증어린이집만 공시	⇨	•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결과공개(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취소, 종료 등) 공개

Ⅱ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2.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Ⅱ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지표를 중심으로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평가인증에 참여 신청한다. 평가인증 과정은 상시 신청 이후 참여확정, 현장평가, 종합평가 3단계를 거쳐 인증결과 공표까지 진행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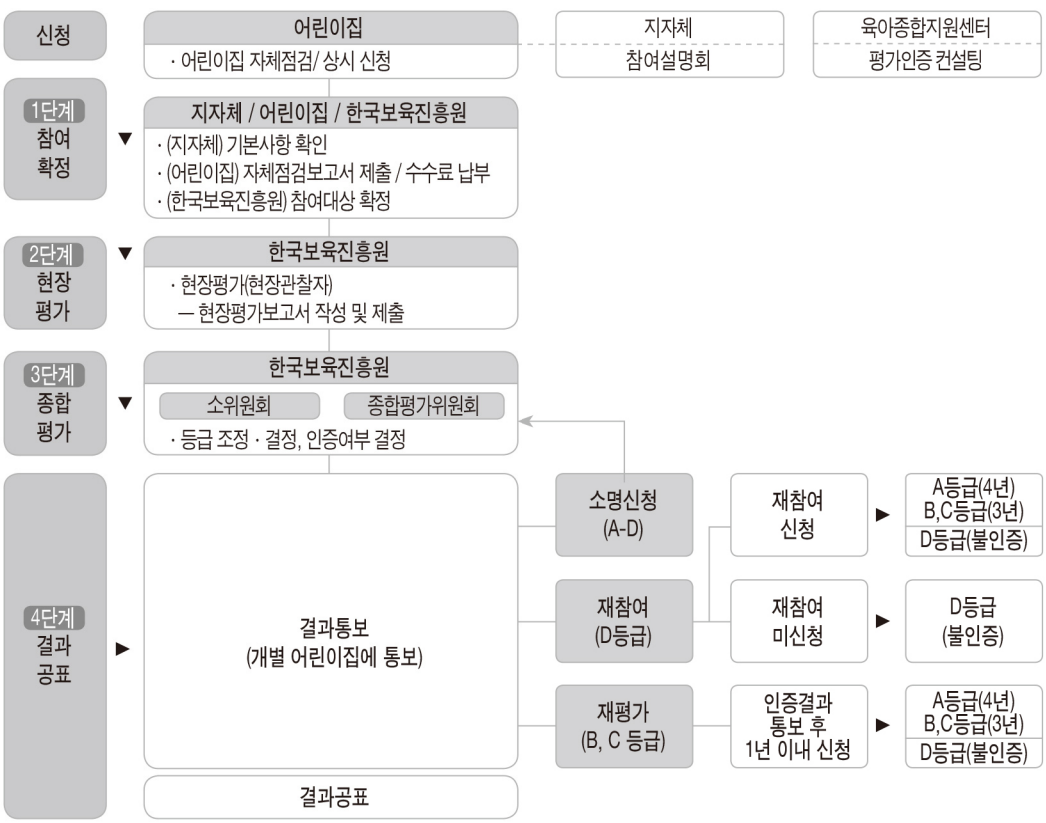

▌그림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1) 신청(상시) : 상시 자체점검, 신청

가. 상시 자체점검

◎ 자체점검 준비 및 실시(부록 참조)

- 어린이집은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 자체점검 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우수한 영역과 개선필요 영역을 파악한 후, 우수한 영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개선필요 영역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나.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방과후전담어린이집 제외)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다.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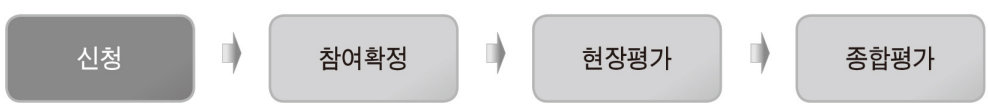

◎ 시기

- 신규인증 :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 재인증 : 기수별 일정에 따라 가능

◎ 진행 : 기수별 모집(2017년 신규인증 1~10기, 재인증 1~12기)

◎ 신청방법 : 2017년도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기수(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시기(재인증)에 참여 신청

- 신규인증은 1개 기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를 변경할 경우 취소 후 희망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재인증은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기수별 대상과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기수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평가인증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신청 관리 ⇨ 기수 선택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정보는 신청관리 화면 상단에 표시

[○○○어린이집은 ○○○○년 ○○기에 신청 중(○○번)입니다]

라. 진행일정

2017년도 신규인증 진행일정

기수	신청	진행일정				
		참여확정(2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1기	1. 6.~1. 25.	2. 1.~2. 28.	3. 10.~3. 20.	4월	5월	6월
2기	1. 6.~2. 25.	3. 1.~3. 31.	4. 10.~4. 20.	5월	6월	7월
3기	1. 6.~3. 25.	4. 1.~4. 30.	5. 10.~5. 20.	6월	7월	8월
4기	1. 6.~4. 25.	5. 1.~5. 31.	6. 10.~6. 20.	7월	8월	9월
5기	1. 6.~5. 25.	6. 1.~6. 30.	7. 10.~7. 20.	8월	9월	10월
6기	1. 6.~6. 25.	7. 1.~7. 31.	8. 10.~8. 20.	9월	10월	11월
7기	1. 6.~7. 25.	8. 1.~8. 31.	9. 10.~9. 20.	10월	11월	12월
8기	1. 6.~8. 25.	9. 1.~9. 30.	10. 10.~10. 20.	11월	12월	’18.1월
9기	1. 6.~9. 25.	10. 1.~10. 31.	11. 10.~11. 20.	12월	’18.1월	’18.2월
10기	1. 6.~10. 25.	11. 1.~11. 30.	12. 10.~12. 20.	’18.1월	’18.2월	’18.3월

※ 신규인증 8기(11월 현장평가)부터 적용

2017년도 재인증 진행일정

기수	유효 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2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1기	’17. 4월	(재참여) 2013. 6기 2013. 재인증 11기	’16. 11. 20.~ 11. 25.	’16. 12. 1.~ 12. 31.	1. 10.~1. 20.	2월	3월	4월
2기	’17. 5월	(재참여) 2013. 7기	’16.12. 20.~ 12. 25.	1. 1. ~1. 31.	2. 10.~2. 20.	4월초	4월	5월

기수	유효 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2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3기	'17. 6월	2014. 1기	1. 20.~1. 25.	2. 1.~2. 28.	3. 10.~3. 20.	4월	5월	6월
		2014. 재인증 1기						
		(재참여) 2013. 8기						
4기	'17. 7월	2014. 2기	2. 20.~2. 25.	3. 1.~3. 31.	4. 10.~4. 20.	5월	6월	7월
		2014. 재인증 2기						
		(재참여) 2013. 9기						
5기	'17. 8월	2014. 3기	3. 20.~3. 25.	4. 1.~4. 30.	5. 10.~5. 20.	6월	7월	8월
		2014. 재인증 3기						
6기	'17. 9월	2014. 4기	4. 20.~4. 25.	5. 1.~5. 31.	6. 10.~6. 20.	7월	8월	9월
		2014. 재인증 4기						
7기	'17. 10월	2014. 5기	5. 20.~5. 25.	6. 1.~6. 30.	7. 10.~7. 20.	8월	9월	10월
		2014. 재인증 5기						
		(재참여) 2014. 1기						
8기	'17. 11월	2014. 6기	6. 20.~6. 25.	7. 1.~7. 31.	8. 10.~8. 20.	9월	10월	11월
		2014. 재인증 6기						
		(재참여) 2014. 2기						
9기	'17. 12월	2014. 7기	7. 20.~7. 25.	8. 1.~8. 31.	9. 10.~9. 20.	10월	11월	12월
		2014. 재인증 7기						
		(재참여) 2014. 3기						

기수	유효 기간	대상	진행일정					
			신청	참여확정(2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 보고서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10기	'18. 1월	2014. 8기	8. 20.~8. 25.	9. 1.~9. 30.	10. 10.~10. 20.	11월	12월	'18. 1월
		2014. 재인증 8기						
		(재참여) 2014. 4기						
11기	'18. 2월	2014. 9기	9. 20.~9. 25.	10. 1.~10. 31.	11. 10.~11. 20.	12월	'18. 1월	'18. 2월
		2014. 재인증 9기						
		(재참여) 2014. 5기						
12기	'18. 3월	2014. 10기	10. 20.~10. 25.	11. 1.~11. 30.	12. 10.~12. 20.	'18. 1월	'18. 2월	'18. 3월
		2014. 재인증 10기						
		(재참여) 2014. 6기						

※ 재인증 10기(11월 현장평가)부터 적용

마. 재인증 사전신청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이 가능

※ 단, 해당 월 평가 진행 개소수에 따라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재인증 사전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어린이집에 통보함

재인증 사전신청

- 대상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소재지 변경
- 신청기간 : 기수별 신청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 확인방법 : 인정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2) 1단계 : 참여확정

참여확정 단계에서는 신청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며, 아래 '가. 참여확정 자격'의 조건에 충족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대상으로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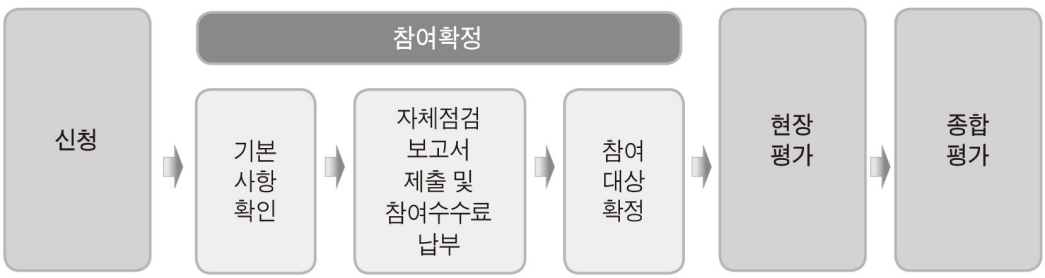

가. 참여확정 자격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 필수항목 :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 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 자격'에서 정한 요건(처분 종료,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을 모두 충족하여야 참여확정 대상이 됨

나. 기본사항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기수별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에서는 기수별로 해당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항목을 확인한다.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업무
  - 시·군·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한다.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주 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안내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및 기간 안내
↓		
시 · 군 · 구	기본사항 확인 및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시 · 도 통보 •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에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		
시 · 도	기본사항 최종 확인 및 통보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및 최종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결과 확인 및 조치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 필수항목 미준수 어린이집은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그림 2 기본사항 확인 업무흐름도

기본사항

-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항목	평정	평정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항목(2017년 9월 기본사항 확인 어린이집(신규인증 8기, 재인증 10기)부터 적용)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방법

-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 준수 여부'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자체점검 보고서	⇨	기본사항(필수항목) 〈준수/미준수〉로 표시됨

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안내한다.

- 어린이집은 참여확정 마지막 달에 영역별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내용
  - 평가항목별로 Y 또는 N에 체크,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영역별 특장점 및 개선 노력을 작성한다.(부록 참고)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참여확정마감일(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한다.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은 현장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자체점검보고서 입력방법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평가인증 메뉴 중 [자체점검보고서] 클릭→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③ 자체점검보고서 입력 후 내용 점검

④ [제출완료] 클릭하여 제출

※ [제출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완료] 전 최종 점검 후 [제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⑤ 나의 상태 확인 [참여수수료 입금 요망]

라. 참여수수료 납부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한다.
  - 참여 신청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필수항목이 준수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참여수수료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참여수수료: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가상계좌 입금 방법

1.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 [참여수수료 입금] 클릭
2. 검색메뉴의 년도, 전체 확인 후 [검색] 클릭
3. 해당기수 확인 후 표의 선택 아래 ☐를 ☑로 체크 후 [참여수수료 입금] 클릭
4. 팝업창이 뜨면 가상계좌 클릭,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5. 입금정보 확인 후 입금은행, 입금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을 입력, '상기 결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다음] 클릭
6. 은행에서 부여받은 계좌번호로 참여수수료 입금

※ **주의**

1. 확인한 입금정보(입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기간)는 1회성 소멸계좌이므로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만 입금
2. 참여수수료 입금기간에만 입금 가능
3. 예금주명 : (재)한국보육진흥원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이 참여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분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환불	90%	50%	0%

* 참여확정 마감일은 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환불은 참여확정 마감일 익일부터 현장평가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포기·환불신청서 작성 방법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참여포기 신청	⇨	[참여포기 신청] 클릭

- 참여포기·환불신청서의 환불 계좌번호와 은행명, 예금주를 정확히 입력
- 참여수수료 환불은 참여포기·환불신청서 작성 후 4주 내외 소요

마. 참여확정 업무흐름도

단 계	주 체	내 용
신 청	어린이집	• 상시 자체점검 • 상시 신청
참여 확정	한국보육진흥원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 안내 (시 · 도/시 · 군 · 구 대상)
	시 · 도/시 · 군 · 구	• 기본사항 확인 및 결과입력
	한국보육진흥원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안내 (필수항목 준수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한국보육진흥원	• 참여대상 어린이집 확정

▌그림 3▐ 참여확정 업무흐름도

3) 2단계 : 현장평가

현장평가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자가 참여확정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가. 현장평가 주간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 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현장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단, 현장관찰자가 위치 확인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연락할 수 있다.

  ※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 보수교육, 상(喪)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여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어린이집의 현장평가 주간은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평가 주간 확인 방법

-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평가월 1주일 전
- 확인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평가/종합 평가 ⇨ 기수 선택 ⇨ [현장평가 주간 확인] 클릭

나. 현장평가 실시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며 현장평가는 1일간 실시한다.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이다.

    ※ 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관찰자는 실명이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한다.

  - 현장관찰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관찰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관찰자는 현장평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평가를 시작한다.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한다.

    ※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 3인 중 1인은 문서 검토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찰반을 선정할 수 있음(영유아 모두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되어야 함)

    - 무작위로 3개반 추첨 후, 어린이집 원장이 2개반을 최종 선정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4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다만, 정원 15명 이하는 3명, 정원 16~20명은 4명)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평가일에 현원·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종합평가 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 정원대비 현원 산정 시 인가 정원에서 방과 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산정함

* 방과 후 아동이 있는 경우의 정원 대비 현원 산정 및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에서 방과 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산정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를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예시) 인가정원 55명인 어린이집(현원 33명 : 종일반 영유아 25명, 방과 후 아동 8명)의 경우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55명) - 방과 후 아동(8명) = 47명
  따라서 47명의 1/4 이상 = 11명 이상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를 제외한 종일반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따라서 25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② 현장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① 원아명단(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별 출력)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⑤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⑥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 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임용되어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함

※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⑦ 평가인증지표 각 영역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문서

※ ①, ②, ③은 제출하며 항목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예 : 재정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는 현장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 기록 확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보육일지 : 현장관찰월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 :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부터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기록 확인

-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교직원(원장 포함)은 관찰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활동을 할 수 없다.

  ※ 어린이집에 미임용 교직원이 있는 경우 현장관찰자와 원장은 미임용 교직원이 타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한다.

    * 작성완료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공유(복사본 제공)

    ※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되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추후 인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찰자는 현장평가 후 개별 현장평가보고서 및 종합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평가 관련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한다.

현장관찰자 자격

①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한다.

※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다. 어린이집 운영기준[9]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 항목) 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평가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한다.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1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으로 처리한다.

9)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보육정책과-1719, 2017.2.28.)의 '부적절사례'에 해당함

주 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여부 확인 • 지자체 통보
시 · 군 · 구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및 개선결과 시 · 도 통보
시 · 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통보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최종확인 및 한국보육진흥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단,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미개선 시 종합평가 회부 등 관련조치)

그림 4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

연번	항목	확인방법
1	영유아 재원사항	- 증빙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미등록 영유아가 재원하는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등록된 반과 다른 반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경우 • 등록된 반 구성을 임의 변경하여 서로 다른 연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퇴소한 원아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 원장 및 보육교사가 무자격인 경우 • 원장 및 보육교사가 미임용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 • 원장 및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경우 • 타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여기서 잠깐!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2017 보육사업안내 참조
3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유무 ※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식자재(교사용 식자재, 수입식품도 포함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커피는 제외

※ 운영기준 관련 주의 사항

-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반 구성 및 영유아 재원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임의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다르게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4) 3단계 : 종합평가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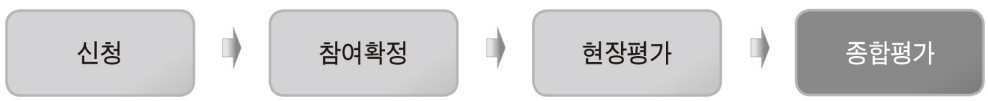

가.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나.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다. 종합평가 절차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학계, 행정, 현장전문가 3인 1조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인증여부 결정,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현장평가 결과 및 확인사항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인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평가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2단계) 종합평가 위원회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등급 및 인증여부를 결정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기본항목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 결과 반영

라. 참여변동사항 확인

◎ 인증 참여 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참여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한다.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불인증'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 2011. 8. 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참여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 참여 어린이집

-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부터 결과통보 전에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낸 업무연락 및 결과통보 전 설문지를 통해 참여변동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 한국보육진흥원

-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인증결정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행정처분 범위 및 자격여부

<table>
<tr><th>구분</th><th>참여확정</th><th>참여과정 중</th><th>인증 이후</th></tr>
<tr><td>필수항목*</td><td>•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참여가능</td><td>•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종합평가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반환명령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참여 가능</td><td rowspan="6">•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td><td rowspan="2">• 인증취소 절차에 따라 취소 처분</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가능</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 어린이집 참여 가능</td><td>-</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6조 [원장의 자격정지]</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가능</td><td rowspan="3">• 인증취소 절차에 따라 취소 처분</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td><td>•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어린이집 참여가능</td></tr>
<tr><td>영유아보육법 제48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td><td>• 행정처분 시행일부터 1년 경과 후 참여가능</td></tr>
</table>

* 필수항목 : 총 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마. 인증결정

-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래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차하위등급으로 조정되는 사항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⑥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⑦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⑧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
⑩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⑪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하고, 등급에 따라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 (인증) A, B, C등급

    ※ B, C등급의 경우는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신청 가능

  - (불인증) D등급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증'으로 결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확인하여 정함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본사항 확인 시작일부터 현장평가 이전에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평가인증 기준▐

어린이집 등급	인증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증
D등급	불인증

※ 평가결과 D등급 어린이집(신규 또는 재인증)은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재참여 시 인증 결정이 유보됨

5) 결과 공표

가. 결과통보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 · 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등을 통해 통보한다.

◎ 인증결과 통보 전

- 통보 전 어린이집 정보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통보, 인증서 제작, 인증어린이집의 사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방법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원장 및 대표자명 : 확인 후 수정은 시·군·구 보육 담당공무원에게 요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설치운영관리

- 보육교직원 현황 : 보육교직원 변동 사항 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원장 휴대전화 번호 : 평가인증 신청관리에서 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신청관리 [참여정보수정] 클릭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 인증결과 통보 전 참여어린이집에서는 참여변동사항 확인서 및 어린이집용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방법

-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인증결과 확인	⇨	[질문지 작성] 클릭	⇨	[참여변동사항 확인서] 입력	⇨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

- [참여변동사항확인서] 평가인증 참여확정 후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여부를 확인
- [어린이집용 설문지] 평가인증 참여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용으로 평가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평가인증 결과 통보 전 참여변동사항 확인서,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이 모두 완료되어야 인증결과 확인 가능

인증결과 확인

-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인증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결과 확인 방법

- 인증결과 통보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통보로 안내
- 인증결과 확인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인증결과확인	⇨	[인증결과확인] 클릭

인증서 및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인증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부한다.

  ※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 발급된 현판 사용)

나. 소명

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인증결과(A~D등급)에 대한 소명신청이 가능하다.

- 평가인증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 (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소명 절차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 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함
- 최종 인증결과를 공표함

다. 재참여

◎ 인증참여 어린이집(신규, 재인증) 중 인증결과가 불인증(D등급)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재참여 절차

재참여 신청 ⇒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2개월) ⇒ 현장평가/종합평가(1개월 내외) ⇒ 결과통보

◎ 재참여 신청

-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정원을 기준으로 함
- 환불 : 재참여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100%	50%	0%

* 재참여 신청 마감일은 재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환불은 참여확정 마감일 익일부터 현장평가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참여포기·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시·군·구는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재참여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재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

◎ 현장평가/종합평가

- 재참여 신청 어린이집은 전체영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기본사항 확인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 여부를 재확인한다.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최종 등급 및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재참여 결과

- 재참여 결과는 인증여부 및 등급으로 공개하며 불인증인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된다.

  ※ 재참여 결과 인증인 경우, 신규인증은 재참여 결과통보월의 15일부터, 재인증은 당초 참여기수의 유효기간 시작시점부터 유효기간 시작

라. 결과공표

◎ 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결과(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참여 · 변동(취소, 만료 등)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부터 공표
- (공표 내용) 인증여부, 등급(영역별 등급, 어린이집 등급), 평가결과통보서(총평, 개선 필요사항)

  ※ 재참여 및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공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A~C등급	인증(A~C등급)
D등급	불인증(D등급)
미인증(인증취소·종료·만료)	미인증(인증취소·종료·만료)
평가 미참여	미인증(평가인증 미신청)

마. 인증유효기간 관리

- 인증 결과가 통보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유효하며, 인증 통과 어린이집 중 A등급은 1년 연장한다.

※ 'A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 'B, C등급'은 3년

※ '11~13년 인증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매월 1일 → 15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인증 참여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함

※ 재인증 사전신청을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래 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함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인증유효기간 종료되는 대표자 변경,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통보(시·군·구→시·도→한국보육진흥원)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조치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처리 • 해당 시 · 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 · 현판 회수 협조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어린이집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그림 5▐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 인증유효기간 종료되는 대표자 변경,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통보 (시·군·구→시·도→한국보육진흥원)

6) 재평가 관리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신청 대상 : 평가결과 등급이 B, C인 어린이집 중 재평가 희망 어린이집
  -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신청 가능함.
- 재평가 절차

재평가 신청 ⇒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통보

- 재평가 신청
  - 평가결과 통보월부터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평가수수료를 납부한다.
  - 수수료 : 40만원(99인 이하), 60만원(100인 이상)
  - 환불 : 재평가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재평가 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100%	50%	0%

* 재평가 신청 마감일은 재평가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환불은 참여확정 마감일 익일부터 현장평가일 전일 오후 5시까지 참여포기·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나. 재평가 과정 및 결과공표

- 재평가 과정은 평가인증 과정과 동일하게 1단계 기본사항 확인/자체점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로 진행한다.
- 재평가 결과공표
  - 재평가에 따른 결과통보, 소명, 재참여, 결과통보, 인증유효기간은 〈5. 평가인증 결과공표〉의 내용을 적용한다.

7)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입력·제출한다.
- 2018년 상반기 제출대상부터 통합지표를 적용함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인증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인증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 ~ 6.15.	11.1. ~ 12.15.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 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 교육장소 및 일정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에 안내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 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 원장 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된다.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신임 원장 교육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임 원장 교육 신청서를 작성·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인증 ⇨ 신임 원장 교육 신청 ⇨ [교육신청서 작성]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한다.

다. 확인점검

◎ (개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확인내용)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결과활용)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A등급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잔여 유효기간동안 A등급으로 결과 공표)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인 경우 자체개선
-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단, 2018년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경과조치)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결과활용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인증당시 지표를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결과반영

2018년 2월까지 확인점검 확인내용 및 결과반영 기준 (종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적용)

- (확인내용) 인증 당시 평가인증지표 전체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 (결과반영)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일 경우 자체 개선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확인점검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결과를 회신한다.

라. 인증취소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정원·운영형태 변경은 2차 지표 적용 어린이집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 확정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로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반납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회수·폐기

주 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 발생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어린이집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그림 6▐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마. 확인방문

확인방문의 신청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 : 시·군·구에서의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2차 지표 적용 어린이집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 : 변경 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문서*,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를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 이후 발급)도 함께 제출

〈유의사항〉
-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확인방문 신청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확인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 인증	⇨	확인 방문	⇨	확인방문 신청서	⇨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확인방문 신청 완료 후 해당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참여수수료 입금을 클릭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발급된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이체하여야 신청이 최종 완료

확인방문 수수료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20만원(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의 수수료를 통보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될 수 있다.

구분	확인방문자 파견 전*	확인방문자 파견 후
환불	100%	0%

* 확인방문자 파견 전 참여포기는 확인방문 전일(영업일 기준) 오후 5시까지 확인방문 참여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방문 참여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확인방문자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한다.
  - 확인내용 :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방문자 1인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한다.
  - 확인내용 : 통합지표 중 해당 영역(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3영역 건강·안전)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부터 현장평가 이전에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통합지표 적용 결과 모든 영역이 C등급 이상인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등급이 D등급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다.

※ 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 하는 경우 인증종료일자는 확인방문 사유발생일 전 까지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유효기간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자는 확인방문 결과통보일로 함

경과조치

- 2018년 3월부터 통합지표 및 인증유지 여부결정을 적용하되,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

2018년 2월까지 확인방문 확인 내용 및 인증유지 여부 결정 기준 (종전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적용)

-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확인 내용 : 인증 당시 평가인증 지표 전체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어린이집 운영상황)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 내용 : 인증 당시 평가인증 지표 중 해당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어린이집 운영상황)

    - 2차지표
      40인 이상 및 장애아 전문 : 1영역 보육환경, 5영역 건강과 영양, 6영역 안전
      39인 이하 : 1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4영역 건강과 영양, 5영역 안전
    - 3차 지표 : 1영역 보육환경, 2영역 건강, 3영역 안전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확인방문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 경 해당 어린이집의 확인방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8) 경과조치

- 적용 대상 어린이집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는 2017년 10월 참여확정, 2017년 11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함
    - 2017년 11월 이전 평가인증 현장관찰 대상 어린이집은 2차 또는 3차 시범지표를 선택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 평가인증 후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확인점검, 확인방문은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8년 3월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를 적용함

2.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1) 통합지표의 구성 체계

가. 구성 체계

- 통합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요소(3영역에 한함) 순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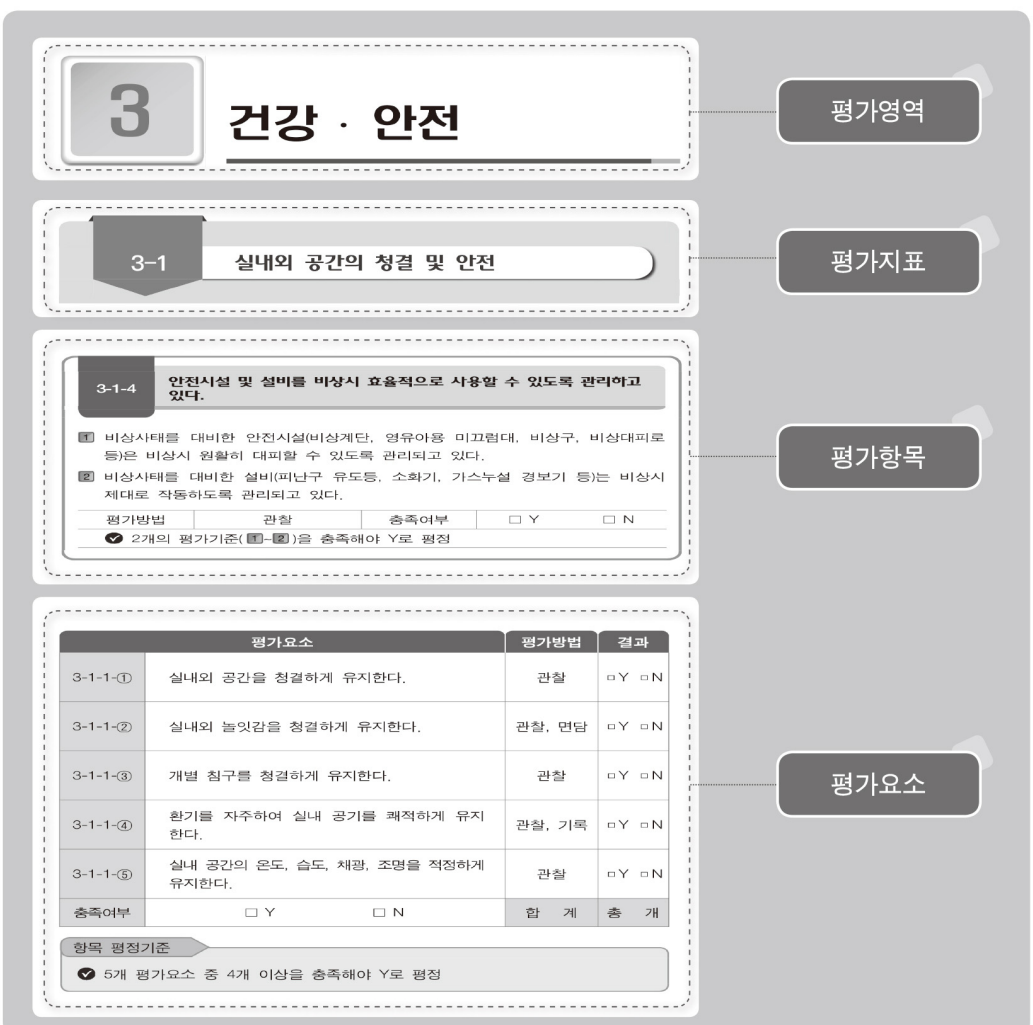

나. 평가방법

- 통합지표의 평가방법은 관찰, 면담, 기록 확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관찰	○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관찰을 진행함 ○ 등원에서 하원까지 일과 동안 이루어짐
면담	○ 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 평가인증지표(항목 · 요소)에 관한 실행 여부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함
기록	○ 평가인증지표(항목 · 요소)에서 실행 여부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기록을 확인함.

기록 관련 확인 기간

- 보육일지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 그 외의 기록 :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 단,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전년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2) 통합지표의 구성

◎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

평가영역(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평가요소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31)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4
	1-2. 일과 운영	5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6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6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4
	1-6. 평가	4
	1-7. 일상생활	2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9)	2-1. 실내 공간 구성	5
	2-2. 실외 공간 구성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3. 건강 · 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14)
	3-2. 급·간식	3(16)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9)
	3-4. 등·하원의 안전	2(8)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3(9)
4. 교직원(14)	4-1. 원장의 리더십	4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

어린이집 등급평정 방식

- **(평가항목)** 각 평가항목별로 충족 여부*에 따라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충족(Y)' 또는 '미충족(N)'에 체크
- **(평가지표)** 각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평가항목 수	'충족' 평가항목 수		
2	2개	1개	0개
3	3개	2개	1개 이하
4	3개 이상	2개	1개 이하
5	4개 이상	3개	2개 이하
6	5개 이상	3~4개	2개 이하
	↓	↓	↓
	우수	적합	개선필요

- **(평가영역)** 각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등급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 부여
  *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등급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개선필요' 등급 부여

평가영역(지표 수)	'우수' 지표 수		'개선필요' 지표 수
Ⅰ 영역(7)	5개 이상	4개 이하	1개 이상
Ⅳ 영역(4)	3개 이상	2개 이하	
Ⅱ, Ⅲ 영역(5)	4개 이상	3개 이하	
	↓	↓	↓
	우수	적합	개선필요

- **(어린이집 등급)** 4개 평가영역의 등급 종류(우수, 적합, 개선필요) 수에 따라 등급(A, B, C, D) 중 1개 부여, D등급은 불인증

어린이집 등급	등급부여기준	예시
A	모든 영역에서 '우수' 등급인 기관	'우수' 영역 4개
B	3개 영역 이상 '우수' 등급이고, '개선필요' 등급이 없는 기관	'우수' 3개, '적합' 1개 영역
C	'개선필요' 등급인 영역이 없고, A 또는 B 등급이 아닌 기관	'우수' 2개, '적합' 2개 영역 '우수' 1개, '적합' 3개 영역 '적합' 4개 영역
D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기관	'개선필요' 영역 1개 이상

통합지표 세부 평가항목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1.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31)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4)	1.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2.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3.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목표 및 내용이 적절하며, 연계성이 있다.
		4.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실시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1-2. 일과 운영 (5)	1. 계획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2.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3.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4.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5.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표 등급	(일반)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장애)우수 : 'Y'가 4개 이상, 적합 : 'Y'가 3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1-3. 교수-학습 방법 및 놀이 지원 (6)	1. 주제에 적합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2.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3. 교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1.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31)	1-3. 교수-학습 방법 및 놀이 지원 (6)	4.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를 지원한다.
		5.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6. 교사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5개 이상, 적합 : ‘Y’가 3~4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1-4. 교사-영유아 상호 작용 (6)	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한다.
		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4.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6. 교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에게 자신감을 준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5개 이상, 적합 : ‘Y’가 3~4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1-5. 영유아 간 상호 작용 시 교사 역할 (4)	1.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한다.
		2.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 시 적절히 개입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1.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31)	1-6. 평가 (4)	1. 영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기록한다.
		2. 보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3. 영유아 평가결과를 보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부모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4.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안에 반영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1-7. 일상 생활 (2)	1. 특별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2. 영유아의 일상 경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화되도록 격려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2개, 적합 : ‘Y’가 1개, 개선필요 : ‘Y’가 0개
1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5개 이상 (적합) ‘우수’ 등급 지표가 4개 이하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2.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19)	2-1. 실내 공간 구성 (5)	1. 보육실 내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 구성한다.
		2.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3.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4.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을 영유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5.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연령별, 주제별 또는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이상, 적합 : ‘Y’가 3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2-2. 실외 공간 구성 (3)	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2.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3.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2-3. 기관 운영 (4)	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2. 개별 영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3.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4. 예·결산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2.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19)	2-4.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5)	1. 부모와 상호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2.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3.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5.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4개 이상, 적합 : ‘Y’가 3개, 개선필요 : ‘Y’가 2개 이하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2)	1.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2. 종일반 및 맞춤반을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2개, 적합 : ‘Y’가 1개, 개선필요 : ‘Y’가 0개
2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4개 이상 (적합) ‘우수’ 등급 지표가 3개 이하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환기를 자주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⑤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5개 중 4개 이상
		2. 실내외 공간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하고 있다.
		①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② 전기설비 및 전선줄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③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④ 세면대, 정수기 등에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는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5개 중 4개 이상
		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① 보육실 내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4)	③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4. 안전시설 및 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요소 없음)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2. 급·간식 (3)	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① 영유아의 연령 및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고, 식단에 따른 급·간식을 제공한다.
		②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③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한다.
		④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5개 중 4개 이상
		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①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가 없다.(필수)
		③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보관한다.(필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2. 급·간식 (3)	④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⑤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5개 중 4개 이상(요소 2, 3 포함)
		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① 조리 시 앞치마, 머릿수건,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위생화를 착용한다.
		②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④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다.(필수)
		⑤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⑥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필수)
		(평가항목 Y충족 기준) 6개 중 5개 이상(요소 4, 6 포함)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1. 손 닦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요소 없음)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②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한다.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한다.
		④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② 영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⑤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5개 중 4개 이상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4. 등·하원의 안전 (2)	1.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다.
		③ 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한다.
		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4. 등·하원의 안전 (2)	2.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①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영아용 보호장구,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를 구비하고 있다.
		②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차량 운행 시 성인이 동승한다.
		④ 차량기사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4개 중 4개, 차량운행 하지 않는 경우
	지표 등급	우수 : ‘Y’가 2개, 적합 : ‘Y’가 1개, 개선필요 : ‘Y’가 0개
	3-5. 안전교육 및 사고대책 (3)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다.
		③ 영유아가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평가항목 Y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①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② 교직원은 안전관리 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③ 비상시 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3. 건강 · 안전 (15)	3-5. 안전 교육 및 사고 대책 (3)	④ 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
		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한다.(필수)
		(평가항목 Y충족 기준) 5개 중 4개 이상 (요소 5 포함)
		3. 영유아, 교직원 및 시설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요소 없음)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3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4개 이상 (적합) ‘우수’ 등급 지표가 3개 이하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항목
4. 교직원 (14)	4-1. 원장의 리더십 (4)	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원장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며, 면담을 실시한다.
		3. 원장은 정기적인 교사회의 등을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4.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2. 교직원의 근무 환경 (3)	1. 교사실과 개인사물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2.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료 및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1.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2.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3.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4)	1. 신규 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3.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표 등급	우수 : 'Y'가 3개 이상, 적합 : 'Y'가 2개, 개선필요 : 'Y'가 1개 이하
4영역 등급		(우수) '우수' 등급 지표가 3개 이상 (적합) '우수' 등급 지표가 2개 이하 (개선필요) '개선필요' 등급 지표가 1개 이상

Ⅲ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 3. 건강 · 안전

영역 4. 교직원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유아는 발달 수준에 적합한 보육내용을 균형 있게 경험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바람직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 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일 년 동안 경험할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문서로써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융통적으로 일과를 운영하며, 이러한 운영이 영유아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순환적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국가 수준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의 보육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각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보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사는 영유아의 흥미나 개별적 차이를 잘 파악하여 상호작용하며 영유아 중심으로 보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는 다양한 보육활동과 자발적 놀이, 일상생활 경험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과 전체를 통해 영유아의 생각이나 행동, 정서 상태, 표현 방식 등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반응을 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와 흥미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경험을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은 물론, 영유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상황마다 발달적, 개별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다면 보육실의 전반적 분위기는 안정되고 개별 영유아의 자존감이 향상되며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은 총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여 각 어린이집에 맞는 보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 후 결과를 다음 보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보육과정 운영과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일과 운영,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및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평가지표	
1 - 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1 - 2	일과 운영
1 - 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1 - 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1 - 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1 - 6	평가
1 - 7	일상생활

영역 평정기준

우 수	7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5개 이상
적 합	7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4개 이하
개선필요	7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어린이집은 D등급(불인증)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어린이집에서는 분명한 보육과정의 철학과 보육목표, 내용을 가지고 연간, 월간, 주간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육계획은 일 년 동안 영유아가 경험할 보육내용을 미리 계획하여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융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보육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계획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놀이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고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계획안을 작성하는지, 연간, 월간 등의 계획안은 서로 연계성이 있고 목표와 내용이 적절하며, 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실시하는지를 평가한다.

지표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1-1-1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기록	□Y □N
1-1-2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기록	□Y □N
1-1-3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목표 및 내용이 적절하며, 연계성이 있다.	기록	□Y □N
1-1-4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실시한다.	관찰, 기록 또는 면담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1-1-1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1 영유아의 연령에 해당하는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의 목표를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다.

2 계획안의 내용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영유아의 연령에 해당하는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의 목표를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다.

-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등에 영유아의 연령에 해당되는(만0-1세, 만2세, 만3-5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2 계획안의 내용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 등에 영유아의 연령에 해당되는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
  - 영아(만0-1세, 만2세) :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 유아(만3-5세)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1-1-2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1 각 반별로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을 모두 작성하고 있다.
- 혼합연령반의 경우,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함.
- 영아반의 경우,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 및 개인차를 반영함.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각 반별로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을 모두 작성하고 있다.

- 연간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반별로 수립되어 있음.
  - 혼합연령반의 경우, 그 반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음.

발달 수준을 고려한 활동의 예

- 만3, 4세 혼합연령반의 경우, '가위로 모양 오리기' 활동을 1수준(네모, 세모 등 직선으로 된 모양 오리기)과 2수준(동그라미나 하트 등 곡선으로 된 모양 오리기)으로 계획, 진행함.

-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에는 전체적인 보육 일과(시간적 구분) 및 물리적 공간 구분(실내외, 실내 흥미 영역)에 따라 실시 가능한 보육활동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에는 화장실 가기(기저귀 갈이), 급·간식, 낮잠 및 휴식 등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되어 있음.

- 일일 보육계획안에는 주간 보육계획안에 기초하여 하루에 진행될 일상생활과 실내외 보육활동 및 놀이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일일 보육계획안은 별도 작성이 가능하며, 그 외 주간 보육계획안을 활용하거나, 보육일지 내 기록 가능

영아

- 영아반(만0-1세, 만2세)의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에는 일상적 양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보육활동 및 놀이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 영아의 발달특성에 따라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여 영아가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
  - 동일 연령일지라도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 및 개인차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 등에 반영하고 있음.

영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활동의 예

- 만1세 영아반의 경우,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걷기'와 관련된 신체활동을 1수준(나는 잘 걸어요)과 2수준(경사로를 올라가요/내려가요)으로 계획, 진행함.

1-1-3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목표 및 내용이 적절하며, 연계성이 있다.

1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이 연령에 적절하고, 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2 주간(또는 일일) 계획안이 월간(또는 연간) 계획안에 기초하였으며 활동 간에 연계성이 있다.

3 계획안이 생활주제(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4 계획안은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 시기, 사회적 행사 및 이슈, 지역적 특성, 또는 계절 등을 반영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4개의 평가기준(1~4)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계획안이 연령에 적절하고, 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 연간, 월간(또는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이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음.
-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에 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음.
  — 주제 내에서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이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음.

2 주간(또는 일일) 계획안이 월간(또는 연간) 계획안에 기초하였으며 활동 간에 연계성이 있다.

- 주간(또는 일일) 보육계획안의 소주제는 월간(또는 연간) 보육계획안에 기초하고 있음.
- 주간 보육계획안의 활동 간에 영유아의 경험이나 주제 등이 연계성 있게 구성되어 있음.

3 계획안이 생활주제(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의 활동이 영유아에게 적합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것을 주제로 하며,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소주제를 중심으로 보육활동의 내용이 통합되어 있음.

4 계획안은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 시기, 사회적 행사 및 이슈, 지역적 특성, 또는 계절 등을 반영하고 있다.

-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의 주제 및 활동이 영유아의 흥미나 계절, 사회적인 특별한 상황이나 사건들, 지역사회의 주변 환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음.

생활주제 및 활동의 예

- 시기 : 3월 경 '어린이집과 친구' 주제, 봄철 나들이가 많을 때 '봄 나들이 역할놀이'
- 국가·사회적 행사 : 올림픽 시기에 '건강과 운동', '세계 여러 나라'
- 사회적 이슈 :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지진 관련 활동'
- 지역적 특성 : 지역 축제 기간에 '우리 동네'

궁금해요

Q.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에 표준보육과정 영역이나 내용 범주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

A.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에 표준보육과정의 영역이나 내용 범주 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용의 기록 여부 보다는 표준보육과정의 연령별 목표와 영역, 내용 범주 등을 알고 이를 고려하여 보다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4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실시한다.

1 유아는 신체운동·건강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 영아는 기본생활·신체운동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2 영유아는 의사소통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영유아는 사회관계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4 영유아는 예술경험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5 영유아는 자연탐구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평가방법	관찰, 기록 또는 면담	충족여부	□ Y	□ N
✔ 5개의 평가기준(1~5)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유아는 신체운동·건강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 영아는 기본생활·신체운동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 영유아는 실내외 공간에서 대근육 발달을 위한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
  - 영유아는 일과 중 다양한 감각기관(청각, 미각, 촉각, 후각, 시각)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경험을 하고,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하도록 격려함.
  - 영유아는 실내외 공간에서 걷기, 뛰기, 잡기, 오르고 내리기, 뛰어넘기 등의 대근육 신체활동을 경험함.
  - 영유아는 실내외 공간에 기본적으로 구비된 놀잇감이나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신체 움직임을 경험함.
    - 예 : 큰 블록을 놓고 건너 뛰어 보거나 그 위를 걸어 보기, 자전거 타기, 작거나 큰 공을 굴리고 이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잡으러 가기 등

- 영유아는 눈과 손의 협응과 소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신체활동을 경험함.
  - 예 : 보이는 물체에 손을 뻗어 물건 잡기, 컵에 물 따르기, 옷의 단추 끼우기, 젓가락 사용하기, 잼잼, 곤지곤지,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찍기틀로 찍기, 펀치 구멍 난 곳을 따라 끈을 끼우기 등
- 영유아는 일과 중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함.
  - 영유아는 청결과 위생, 즐거운 식생활, 수면과 휴식 등의 일상생활을 통해 건강한 기본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함.
    - 예 : 아기 인형 목욕시키기, 우리 몸에 좋은 음식 알아보기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함.
    - 예 : 놀이기구(놀잇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보기, 화재 시 대피방법 알아보기 등

2 영유아는 의사소통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유아

- 유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경험함.
  - 유아는 일과 중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함.
    - 예 : 유아와 함께 관찰했던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가족사진 보며 이야기 나누기 등
  - 유아는 막대인형 · 손인형 · 손가락인형 등을 이용한 동화 듣기, 가족사진이나 화보용 그림 보며 또래, 교사와 서로 이야기 나누기 등을 통해 듣고 말하는 경험을 함.
  - 유아는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거나, 교사가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줌.

— 유아가 글자에 흥미를 갖도록 환경 인쇄물을 활용하는 경험을 함.

• 예 : 매일 먹는 우유곽의 상표명 ‘ㅇㅇ우유’를 오려 언어카드로 사용하기, 마트 전단지에서 사진 오려 책 만들기, 자주 먹는 과자 상자로 블록 만들기, 영유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약 상자를 오려서 벽에 붙여두고 누가 누구랑 같은 치약을 사용했는지, 그 치약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등

※ 글자의 형태(모음과 자음)를 베껴 쓰거나 자모음 이름을 알도록 교사가 지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음.

— 일과 중 선, 그림, 발명철자 등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표현하는 경험을 함.

영아

● 영아는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기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함.

— 영아는 일과 중 영아 자신과 관련되어 있거나 영아가 흥미 있어 하는 자료를 보고 옹알이, 한 단어, 짧은 문장 등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함.

• 예 : 영아가 좋아하는 물건, 자신이나 또래 사진, 가족사진보며 이야기 나누기 등

— 일과 중 영아가 원할 때 교사가 개별적으로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어줌.

• 교사는 그림책의 문장이나 어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주기 보다는 영아가 보거나 듣기를 원하는 장면을 대화하듯이 이야기로 들려줌.

— 영아가 원할 때는 기다리지 않고 쉽게 접근하여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 : 영아가 자발적으로 끼적이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종이(달력 뒷장, 신문지, 전지, 박스를 크게 편 종이 등) 및 쓰기 도구(크레용, 색연필 등)가 상시 비치되어 있음.

3 영유아는 사회관계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유아

- 유아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활동을 경험함.
  - 유아가 일상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함.
    - 예 : 유아가 스스로 손을 씻거나, 신발을 신발장에 넣거나 동생의 손을 잡아주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는 '○○이가 혼자 손을 깨끗이 씻네.', '혼자서도 신발을 잘 신는구나.', '동생의 손을 잡아서 도와주는 ○○이는 이제 형(언니)가 되었네.' 등 유아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격려함.
  - 유아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경험을 함.
    - 예 : 일상에서 친구의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을 만나면 누구인지 알려주고 인사하는 경험 등
  - 유아가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험을 함.
    - 예 : 쌓기놀이, 역할놀이, 모래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를 친구와 함께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 의견을 나누며, 나와 친구의 생각, 감정 등이 다름을 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함.
    - 예 : 놀잇감 정리, 간식 도우미,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와주어야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우리 동네 이름 및 특성, 다양한 직업 등 지역사회의 특성과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경험함.
    - 예 : 어린이집 동네 산책 등을 통해 주변 도로나 건물의 형태, 동네 사람들의 직업 등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영아

- 영아는 자신을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함.
  - 영아는 반복되는 일상적 양육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경험을 함.
    - 예 : 영아의 사진을 보육실 여러 곳에 붙여 두고, 영아가 사진을 볼 때마다 영아의 이름을 친숙하게 불러줌.
    - 예 : 기저귀 갈이 시간에 영아가 전신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보고 이리저리 움직여 볼 때, 교사는 영아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로 반응해 줌.
  - 가족사진, 가족들의 목소리, 얼굴 모습이 담긴 자료 등을 보육실에 비치하여 영아들이 원할 때는 언제나 듣고 보며 가족과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함.
    - 예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노래 등을 녹음한 것 듣기, 가족과 주말에 놀러갔던 사진 보기, 엄마가 ○○이를 그린 그림이나 함께 만든 인형으로 놀이하기 등
  - 또래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함.
    - 예 : 또래친구 사진을 보육실에 비치하여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 영아와 또래친구들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해주며, 영아 자신과 또래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는 **교사**

- 관찰 당일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일 보육계획(주간 보육계획)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대체함.
- 오늘 계획하였던 활동은 무엇인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4 영유아는 예술경험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 영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 리듬,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경험을 함.
  - 교사는 영유아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즐기기 위해 음률영역이나 일상에서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노래를 부름.
  - 영유아가 신체 및 악기, 사물 등을 이용하여 리듬이 있는 소리를 만들고 강약을 조절하며 즐기는 모습이 계획된 활동이나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남.
    - 예 : 손뼉을 치거나 손으로 바닥을 치며 리듬 맞추기, 발을 구르며 리듬 맞추기, 손으로 다리를 치면서 리듬 맞추기 등
  -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악기(예 : 리듬막대, 소고, 탬버린 등)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리듬을 만들어보고 소리를 들을 때 교사는 제지하지 않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임.
    - 예 : 리듬에 맞추어서 고개를 끄덕여 주기, 리듬을 손뼉으로 맞추어 주기 등
  - 영유아가 일상에서 음악이나 리듬 있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거나 거울을 보며 움직이기를 즐김.
    - 예 : 영아의 팔이나 다리에 방울이 달린 고무줄을 끼워주어 거울을 보며 음악에 따라 몸을 흔들기, 실내외에서 리본막대, 한삼, 보자기 등의 도구를 가지고 움직이며 즐기기 등
- 영유아는 다양한 미술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체 또는 평면으로 꾸며보는 활동에 참여함.
  - 영유아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르기, 접기, 찍기, 입체로 구성하기 등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활동이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남.
    - 다양한 자료의 예 : 신문지, 잡지 등 다양한 종이류, 돌이나 낙엽 등 주변의 자연물, 폐품, 크기가 다양한 상자, 찰흙, 노끈, 실 등
  - 교사가 계획한 활동 이외에 영유아가 원하는 다른 것을 꾸미거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 영유아가 일과에서 다양한 음악, 미술작품, 춤 등을 자연스럽게 듣고 지켜보는 경험을 함.
  - 예 : 점심 먹고 쉬면서 편안한 음악 듣기, 실내외에서 밝고 경쾌한 음악 듣기, 미술작품 보며 생각이나 느낌 말해보기, 미술작품 속 행동 따라하기 등

또는 **교사**

- 관찰 당일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일 보육계획(주간 보육계획)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대체함.
- 오늘 계획하였던 활동은 무엇인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5 영유아는 자연탐구 영역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 영유아는 주변 환경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자료를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을 함.
  - 영유아가 주변 환경의 자연물이나 다양한 감각 자료들을 만지고, 냄새 맡고, 보고 듣는 감각 경험이 일과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교사는 이를 격려함.
- 영유아는 주변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이용하여 수 세기, 비교 등 수 활동을 일상에서 경험함.
  - 만0-1세 영아의 경우, '있다'와 '없다'를 구별하고, '한 개'와 '여러 개'의 수량을 지각하는 경험을 함.
  - 만2세 영아의 경우, 많고 적음을 구별하게 되면서 세 개 가량의 구체물을 말하여 세어보고, 일대일 대응 해보면서 수량을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함.

    ※ 교사는 영유아의 수 개념 습득을 위하여 학습지를 사용하지 않음.

- 영유아는 자연현상과 친근한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관련 자료를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을 함.
  - 교사는 영유아들이 실외놀이터, 산책 등을 통해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와 여러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관찰하는 경험을 하고 자연물 등을 보육실에도 비치해 주어 영유아들이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도움.
    - 예 : 다양한 모양의 잎사귀, 낙엽, 다양한 표면의 돌, 나무토막, 열매 등

또는 **교사**

- 관찰 당일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일 보육계획(주간 보육계획)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대체함.
- 오늘 계획하였던 활동은 무엇인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참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범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의 만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임.

- 표준보육과정은 만0-1세 보육과정, 만2세 보육과정, 만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으로 구분됨.
- 만0-1세, 만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총 6개 영역으로, 만3-5세 보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됨.

표준보육과정의 목표

▌만0-1세, 만2세 보육과정의 목표▐

만0-1세 보육과정	관련영역	만2세 보육과정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기본생활 영역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른다	신체운동 영역	감각, 신체조절 및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한다	의사소통 영역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기른다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	사회관계 영역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예술경험 영역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긴다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탐구 영역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긴다

▌만3-5세 보육과정의 목표▐

관련영역	만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의사소통 영역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사회관계 영역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예술경험 영역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연탐구 영역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의 내용범주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만0-1세, 만2세 보육과정	건강하게 생활하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듣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말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예술적 표현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읽기	더불어 생활하기	예술 감상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쓰기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만3-5세 보육과정 (누리과정)	신체 인식하기	듣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말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읽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예술 감상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갖기		

* 출처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2013.3.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이해(보건복지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1-2 일과 운영

영유아기는 한 영역의 발달이 다른 영역 발달에 영향을 주는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속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시키는 특성이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다양하고 적절한 경험과 일상적인 양육이 균형 있게 경험될 때, 영유아는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영유아들이 안정적인 정서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과를 계획하고 이를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일과를 계획하되, 일과 중에 영유아의 충분한 자발적인 놀이를 위해 하루 중 일정 수준 이상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이 시기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과 생리적 욕구를 반영하여 바깥놀이 시간 역시 충분히 계획, 운영하고, 일과 중 놀이와 활동, 일상적 양육을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한다.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는 어린이집 생활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과를 융통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가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에게는 시간을 분절한 교과목 형태의 활동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일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5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계획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이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 시간이 충분히 배정되어 운영되는지,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일과 운영이 융통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1-2. 일과 운영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1-2-1	계획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관찰, 기록	□Y □N
1-2-2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관찰, 기록	□Y □N
1-2-3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관찰, 기록	□Y □N
1-2-4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관찰 또는 기록, 면담	□Y □N
1-2-5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기록	□Y □N □해당없음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일반)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지표 평정기준(장애)

우 수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4개 이상
적 합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개선필요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이하

1-2-1	**계획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1 계획안에 따라 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 날씨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획에 따른 일과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함.

2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급 · 간식, 낮잠, 화장실 가기 등)을 하루 일과에 적절히 분배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된 교과목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방법	관찰, 기록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계획안에 따라 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 등원에서 하원까지 계획된 일과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됨.
  - 교사는 일관성 있는 일과 계획을 기초로 하되, 날씨, 원내 행사 등 사전에 예측 가능한 외부 요인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계획, 운영하고 있음.
    - 예 : 여름에는 실내놀이와 바깥놀이의 순서를 바꾸어 덜 더울 때 바깥놀이 계획 등

- 일과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과정을 실행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부득이하게 계획에 따른 일과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함.

2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급·간식, 낮잠, 화장실 가기 등)을 하루 일과에 적절히 분배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일과는 영유아의 자유놀이, 계획된 보육활동(개별 및 집단), 일상생활 경험(간식, 점심 식사, 낮잠, 화장실 가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균형 있게 운영됨.
- 일과는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영유아 주도 활동 및 교사 주도 활동을 포함하여 균형 있게 운영됨.
  - 유아들이 대·소집단 활동과 개별 활동을 균형 있게 경험하도록 일과를 진행함.
  - 모든 놀이 및 활동은 영아(만0-1세, 만2세)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집단 활동이 아닌 개별 활동으로 진행함.
    - 영아의 요구나 흥미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집단 활동이 전개되는 것은 가능함.
  - 영아(만0-1세, 만2세)의 발달 특성상 신체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보육실 내에서도 동적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함.
- 연령이 어릴수록, 학기 초일수록, 집단 내 영유아의 개별적인 차이가 클수록 대·소집단 활동 보다는 개별 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놀이 및 일상생활 경험을 더 많이 배정하여 운영함.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보육활동, 일상생활 경험 등 일과를 균형 있게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행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연령에 적합한 대·소집단 활동 운영

- 교사는 개별적인 보육활동 및 놀이와 함께, 이와 균형을 맞추어 대·소집단 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
  - 대·소집단 활동 시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유아의 사전경험이나 지식, 발달 수준, 흥미에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여, 영유아의 반응에 기초하여 융통적으로 진행할 때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영아의 경우 놀이와 활동은 개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영아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대·소집단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교사가 의도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은 활동 진행과정에서 영아의 흥미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집단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때에도 영아 주도적인 접근에 원칙을 두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색밀가루 반죽 탐색 활동 시 5~6명의 영아들이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소집단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교사는 영아의 발달적 수준, 요구, 흥미를 반영한 개별적 상호작용을 하며 활동을 진행함.
  - 만1-2세 영아의 경우, 교사가 해당 반 영아를 대상으로 일과 운영 시 전이시간(예 : 바깥놀이 전후, 낮잠준비 시간, 급·간식 전후, 기타 단체로 손 씻기, 이닦기 등)에 일부 집단 활동(예 : 손유희, 노래 부르기 등)을 진행 가능함.
  - 만0세 영아의 경우, 영아-교사와의 개별 활동으로만 진행하도록 함.

3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된 교과목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일과를 교과목 형태로 구분하여 진행하지 않고 대체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 영유아에게 흥미 있는 여러 영역의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함.
    ※ 부모 동의를 받아 오후시간에 진행하는 특별활동은 평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의 활동이 시간 단위로 분절된 교과목 형태의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1-2-2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1 매일 실내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을 기준시간에 맞게 배정하여 운영한다.
- 6시간 이하 운영(맞춤반 영아) : 매일 1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운영(종일반 영아, 유아) : 매일 2시간 30분 이상
  ※ 기준시간 내에서 매일 1시간 이상은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평가방법	관찰,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매일 실내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을 기준시간에 맞게 배정하여 운영한다.

- 영유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30분 이상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 시간을 연속적으로 운영함.
  — '연속적'이라 함은 놀이 시간이 오전, 오후에 각각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함. 이때, 바깥놀이 시간은 제외됨.
  ※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 시간에 대한 평가는 해당 반 영유아 현원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부터 시작함.
-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 시간에 교사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흥미영역 활동을 계획하여 제공함.

- 하루 중 오전, 오후를 합쳐 2시간 30분 이상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 시간을 연속적으로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1-2-3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1 매일 바깥놀이(대근육활동 포함)를 기준시간에 맞게 배정하여 운영한다.

영아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만1세는 매일 30분 이상
만2세는 매일 1시간 이상

유아 매일 1시간 이상

장애아전문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 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평가방법	관찰,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매일 바깥놀이(대근육활동 포함)를 기준시간에 맞게 배정하여 운영한다.

✎ 바깥놀이는 어린이집의 옥외놀이터(인근놀이터 포함)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원 등에서의 활동과 산책을 모두 의미함. 단, 날씨와 계절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실내에서 신체(대근육)활동으로 대체하여 진행함.

유아

- 바깥놀이 시간을 1시간 이상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과 자유놀이를 적절히 안배하여 경험하도록 함.

영아

- 영아(만2세)
  - 자동차 타기, 술래잡기, 미끄럼틀 타기, 식물 관찰하기, 물·모래 놀이, 어린이집 주변 산책하기 등의 바깥놀이를 오전, 오후 합쳐 1시간 이상 운영함.
- 영아(만0-1세)
  - 바깥놀이 또는 베란다 등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외부 공기를 쐬는 등의 활동을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만1세는 매일 30분 이상 경험함.

유아 **영아**

- 바깥놀이를 만2세 이상은 매일 1시간 이상, 만1세는 매일 30분 이상, 만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실행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날씨와 계절 등의 요인으로 바깥놀이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실내에서 신체(대근육)활동으로 대체한 기록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장애아전문

- 바깥놀이를 주 1회 이상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바깥놀이 운영 시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 수준에 따라 주제 관련 소집단 활동과 자유놀이를 적절히 안배하여 경험하도록 하고 있음.

1-2-4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놀이나 활동을 확장, 축소, 대체하여 운영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 날씨 등 필요에 따라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평가방법	관찰 또는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놀이나 활동을 확장, 축소, 대체하여 운영한다.

또는

- 교사는 그 날의 영유아의 흥미, 놀이 지속 시간, 보육실의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함.

놀이나 활동의 융통적 운영의 예

- 확장 : 시간을 늘리거나 놀이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
  - 예 : 쌓기영역에서 '우체국 구성하기'를 진행하던 중 유아의 관심이 '택배'로 전환되자 빈 상자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택배운반 트럭을 구성하고 역할영역에서 집 놀이를 하던 유아에게 배달하는 등 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축소 : 시간을 줄이거나 현재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을 계획안보다 빨리 마무리하는 것
  - 예 : 자유놀이 시 영아들이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실내 자유놀이를 계획한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고 영유아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바깥놀이를 진행함.
- 대체 : 원래의 계획안에 제시된 것과 다른 놀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것
  - 예 : 영아반의 손씻기 일과 중 영아들이 흐르는 물에 관심과 흥미를 보여, 바깥놀이 시간에 계획된 활동 '공 주고 받기' 대신 물을 이용해 놀이할 수 있는 '인형 목욕시키기' 활동을 진행함.

—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존중하여 이를 계획된 활동과 연계하거나 새로운 활동의 시작점으로 삼아 진행함.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일과 및 활동 운영의 예

한 유아가 종이비행기 접기를 한 것을 가지고 등원하자 다른 유아들의 관심이 비행기 접기에 집중된다면(우연히 발생한 사건), 교사는 계획한 활동과 더불어 비행기 접기 활동을 함께 실시함. 또한 교사는 접은 비행기를 날려보고자 하는 유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바깥놀이 시간에 비행기 날리기를 진행함.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계획된 주제나 활동과 관련성은 없어도 영아가 어떤 소재에 관심을 보일 경우 관련 노래나 손유희하기, 관련 그림책을 추가 제시하는 등의 보육활동으로 확장시킴.

영아의 관심을 고려한 활동 진행의 예

영아가 일과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전이 시 고양이가 등장하는 손유희나 노래 부르기를 하거나, 이동 시 고양이처럼 기어가기 등의 신체활동, 고양이가 등장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등을 진행함.

- 영유아의 흥미와 놀이 진행 정도를 고려하거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교사

-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 경험이 있는가?
  — 놀이나 활동을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 날씨 등 필요에 따라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또는

- 교사는 날씨와 기상현상(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사전 계획대로 바깥놀이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융통성 있게 대체활동(예 : 실내 신체활동, 신체게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함.
- 영유아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바깥놀이 시간을 짧게 운영하거나 실외에서도 정적인 활동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질병 등으로 바깥놀이 참여가 불가능한 영유아는 실내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휴식을 취함.
- 날씨,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여 운영한 내용이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교사

- 계획안과 다르게 일과를 운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날씨 또는 영유아의 건강 문제로 인해 계획된 일과나 보육활동을 변경하여 운영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운영하였는가?

1-2-5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1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다.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된 경우에 해당함.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해당없음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다.

- 장애영유아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 수준에 따라 개별화보육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음.
  - 개별화보육계획안은 장애영유아의 인적사항, 현행수준, 장·단기 보육목표, 시작 및 종료 시기,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부모 동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별화보육목표가 포함된 보육과정을 운영하되,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실행된 내용이 각 반별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장애영유아의 수준을 고려한 활동의 예

• 장애영유아의 경우, 처음부터 잘 하기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익힐 수 있게 지도함.
- 예를 들어 '식사 도구를 바르게 사용해요' 활동 시 식사에 필요한 도구(숟가락, 포크 등) 사용을 지도할 때 구체적인 행동들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지도함.

① 장애영유아가 숟가락을 손으로 단단히 잡는다. → ② 숟가락을 음식 속에 넣어 손목을 돌린다. → ③ 숟가락에 음식을 뜬다. → ④ 흘리지 않게 손목과 팔을 회전하여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간다. → ⑤ 입을 벌린다. → ⑥ 숟가락을 입 안의 적당한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 ⑦ 숟가락을 둘러싼 입술을 다문다. → ⑧ 음식을 입 속으로 옮긴다. → ⑨ 숟가락을 입에서 뺀다.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 치료일지 또는 보육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
  -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는 보육실 이외의 치료실 등에서도 제공할 수 있음.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보육활동과 놀이는 영유아가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 태도 등을 접하고 반복하며 내재화하는 중요한 경험들이다. 영유아와의 놀이 시, 교사는 놀이주체가 영유아임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놀이 활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외되는 영유아 없이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적절한 놀이와 활동을 찾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고, 참여하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놀이의 확장과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놀이 환경 및 자료를 제공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들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교수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지식이나 보육현장에서 축적된 경험, 아동관, 보육신념 등과 더불어 영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 흥미, 사전경험의 정도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자료를 활용하며 지도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교수방법을 점검함으로써 영유아가 경험하는 내용 및 방법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지표는 6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주제에 적합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하는지,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영유아가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놀이상황을 관찰하며 지원하는지 평가하며, 교사의 발문과 태도 등도 함께 평가한다.

지표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1-3-1	주제에 적합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관찰, 기록	□Y □N
1-3-2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관찰	□Y □N
1-3-3	교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관찰	□Y □N
1-3-4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를 지원한다.	관찰	□Y □N
1-3-5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관찰	□Y □N
1-3-6	교사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5개 이상
적 합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4개
개선필요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이하

1-3-1	주제에 적합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1 활동자료가 활동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연령,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활동자료를 준비한다.

3 교사는 영유아의 수를 고려하여 활동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고 활용한다.

4 활동방법은 영유아가 활동주제 및 내용을 이해하기에 적절하다.

평가방법	관찰, 기록	충족여부	□ Y	□ N
✔ 4개의 평가기준(1~4)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활동자료가 활동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관된다.

- 활동자료는 해당 주간의 주제와 연관되어 영유아가 활동주제를 이해하기에 용이함.
  - 예 : '가을' 주제에 가을 열매 모형(사과, 배, 감 등),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 사진, 가을풍경 그림이나 사진, 실외에서 주운 자연물(낙엽, 도토리, 밤 등), 가을과 관련된 그림책 등

2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연령,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활동자료를 준비한다.

- 영유아의 발달 수준, 연령 등을 고려하여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음.
  - 교사는 영유아의 사전경험을 토대로 친숙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
    - 예 : 역할놀이 영역에서 '병원놀이'의 경우, 만2세 영아에게는 주사기, 청진기 등 기본적인 활동자료를 제시하며, 사전경험이 있는 유아가 있다면 약 봉지나 X-ray 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3 교사는 영유아의 수를 고려하여 활동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고 활용한다.

- 활동자료는 반 전체 또는 해당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유아의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
  - 활동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은 영유아들이 동시에 구비된 놀잇감이나 활동자료를 갖고 분쟁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을 의미함.
    ※ 평소 각 영역에서 놀이하는 영유아 수의 1.5배 내외로 구비
  - 영아(만0-1세, 만2세)가 좋아하는 놀잇감은 동일한 것으로 여러 개 마련함.

4 활동방법은 영유아가 활동주제 및 내용을 이해하기에 적절하다.

-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주제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교사는 활동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교사 주도적 접근법과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보육활동을 진행함.
    - 교사 주도적 접근법의 예 : 사물의 명칭을 배우는 것과 같이 영유아에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일 수 있음.
    -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의 예 :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 등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을 탐색하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영유아가 스스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개방적 질문 등의 지원을 함.

교수-학습방법의 효과적인 사용의 예

- 교수-학습방법이란, 교사가 어떤 의도로 언제, 어떻게 영유아의 보육경험이나 활동을 이끌고자 하는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말함. 교사는 영유아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교사 주도적 접근법
  - 교사에 의해 계획된 목표에 따라 영유아에게 정보를 주거나, 기술 습득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 주도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예로는 영유아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실물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기 등이 있음.
  - 교사 주도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경우라도 교사는 영유아의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때때로 영유아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학습 경험이 전환될 수 있음.
  - 교사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주의집중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흥미로운 도입활동(예 : 손유희 등)으로 주의집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영유아 주도적 접근법
  - 영유아 스스로의 흥미와 행동,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영유아가 직접 탐색하고 실험하도록 지원하기, 영유아의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기,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가 어떤 개념이나 활동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배우도록 격려하기 등이 있음. 이때 교사는 영유아가 탐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해 주어야 함.

1-3-2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1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사전경험이나 관심사 등을 적극 활용함.

2 교사는 반 전체 영유아를 관찰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파악한다.

3 교사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킨다.

4 교사는 활동과정에서 영유아에 대한 반응을 적시에 하여 흥미를 지속시킨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4개의 평가기준(1~4)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주변의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탐색을 시도할 때, 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함께 관심을 보임.
- 교사는 영유아의 사전경험을 놀이 상황 등과 연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함.

사전경험 활용의 예

유아와 그림책을 보며 “우리 바깥놀이 때 개미 봤었지? 그 개미구나, 그때 개미가 어떻게 움직였었지?” 등 이야기를 나누거나, 쌓기영역에서 ‘개미집 구성하기’ 활동 진행 시 유아가 그린 개미집 그림, 바깥놀이 때 관찰했던 개미 사진을 쌓기영역에 게시하는 등 사전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함.

2 교사는 반 전체 영유아를 관찰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파악한다.

- 교사는 주제와 관계없이 반 전체 영유아들이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놀이 유형 및 주제를 잘 알고 있음.
  - 영유아들이 흥미를 가지는 특정 활동이나 놀이 유형을 등원 또는 활동 시작 시 알려 흥미롭게 참여하게 함.

3 교사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킨다.

- 교사는 동일한 주제의 활동이라도 그 날의 영유아의 흥미나 요구, 관심에 따라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킴.
  - 예 : 물감으로 모양 찍기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영아가 물감을 손과 발에 묻혀 찍거나 종이에 문지르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영아의 흥미대로 활동을 지속시킴.
  - 예 : 크기대로 쌓는 컵 쌓기 놀잇감을 활용할 경우, 영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따라 교사가 쌓은 탑을 영아가 무너뜨리기, 컵 굴려 따라가 잡기, 컵 속에 다른 놀잇감 숨겨 까꿍 놀이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아의 흥미를 지속시킴.

4 교사는 활동과정에서 영유아에 대한 반응을 적시에 하여 흥미를 지속시킨다.

유아

- 교사는 유아가 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의 호기심과 내적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발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형태의 질문(예 : 개방형 질문), 연령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한 반응 및 부연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함.

- 교사는 유아가 실내외 자유선택활동이나 놀이에 참여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며, 해결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함.
- 영유아가 어떤 발견을 하였거나 자신의 생각을 언어나 놀잇감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와~ 그곳에 끼울 수도 있었네'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흥미를 지속시킴.
- 영유아의 발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해결방법이 요구될 때 영유아의 호기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관련 내용을 함께 찾아봄.

영아

-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교사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반응을 하고 영아의 의도를 언어적으로 기술하거나 확장해 줌.
  -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중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 비언어적(예 : 손으로 가리키는 등)으로 표현할 때, '저 블록이 갖고 싶어? 꺼내줄까?', '안에 있던 조각을 위에 올려 놓았네'와 같이 영아가 하는 행동이나 결과를 부드럽게 문장으로 표현함.
- 교사는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의 변화를 영아와 함께 직접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여 영아와의 개별 활동이 의미 있게 경험되도록 함.
  - 예 : 색밀가루 반죽 활동 시 영아가 반죽을 잡아 당겨 반죽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반죽을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었어? 그래 점점 길어지네' 등 언어로 표현함.
  - 예 : (발목에 달린 딸랑이를 흔드는 영아에게) '딸랑딸랑, ○○이가 발을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네!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 예 : 영아가 끼적이기 한 결과물에 교사가 '○○이가 팔을 움직이니까 긴 줄이 생겼네. 이게 뭐야?'라고 질문하여 영아가 자신이 끼적이기 한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격려함.

1-3-3	교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1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흥미영역의 활동이나 놀이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2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흥미영역의 활동이나 놀이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영유아가 스스로 활동 참여를 결정하도록 함.
- 교사는 준비된 활동이나 놀이를 안내하되, 영유아에게 활동의 선택과 시작을 재촉하지 않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함.
  - 영유아가 탐색을 통해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이나 놀이를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작하도록 기다려 주고, 시작했을 때 관심을 보이며 격려함.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 격려의 예

- '물감놀이가 있네. 물감으로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이도 물감놀이 좋아하니?', '자동차가 많이 있네. ○○도 자동차 좋아하지? 어떤 자동차가 좋아?' 등
  ※ '물감놀이 하자' '자동차 놀이 하세요' 등과 같이 교사가 참여 활동 종류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 교사는 영유아에게 활동을 안내하고 제안할 수 있으나, 특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제한하지 않음.
  - 예 : '쌓기놀이는 조금 있다가 하고, 먼저 ○○꾸미기부터 해야 해' 등

— 활동에 따라서는 편안한 활동 진행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활동 시작 시 참여 인원을 조절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영유아에게 충분하게 설명함.
  - 예 : '풀그림을 재미있게 하려면 5명씩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친구 5명이 하고 있네. 친구가 다 하면 ○○에게 알려줄게, 다른 놀이를 먼저 하고 있을까?' 등

유아

- 교사는 유아의 환경 탐색을 허용하되 방치하지 않고, 놀이과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어 유아의 선택과 시도를 인정하고 격려함.
  - 예 : '○○는 퍼즐을 맞추고 싶었구나', '△△는 블록을 높이 쌓고 있네' 등

영아

- 교사는 영아가 흥미영역별로 준비된 놀잇감을 꺼내 탐색하는 것을 허용하고, 영아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영아가 교사에게 수용, 인정받는 느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새로운 놀잇감으로 놀이를 시도할 수 있게 지원함.

— 긍정적 신호 예 : 미소, 끄덕임, 부드러운 시선 주기, '○○를 좋아하는구나', '○○를 해 보고 싶구나', '~를 해보고 싶었어?' 등의 언어적 표현하기

2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한다.

유아

-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물, 사람에 대해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활동과 놀이로 연결하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놀이나 활동을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원할 때 종료하도록 격려함.
- 놀이 및 활동 과정 동안 교사가 일방적인 설명과 통제, 지시로 일관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방해하지 않음.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유발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의 예

유아가 파랑 색물과 노랑 색물을 섞어 색깔이 혼합되는 과정에 흥미를 보이며 반복하려 할 때, 유아의 호기심을 유지하기보다 '노랑하고 파랑이랑 섞으니 초록이 되었지?'와 같이 주입식으로 지식을 확인하거나, 현재 유아의 관심과 관계없이 '노랑과 파랑은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색 할까?', '○○이는 해봤으니 이번에는 기다리는 친구에게 양보하자'라고 하는 등 활동을 교사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종료함.

영아

- 교사는 영아 스스로가 자신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격려하며 언어적으로 확장해 줌.

영아의 주도적 활동 격려의 예

여러 가지 모양의 구멍에 모양조각을 맞추어 끼워넣는 놀잇감을 꺼낸 영아가 통에 모양조각을 다 넣고 쏟는 것을 즐기고 있을 때, 교사는 영아와 함께 조각을 통에 담고, 쏟아질 때의 소리를 함께 즐기며 이 과정을 '통 안에 다 담았다', '우르르 쏟아졌네' 등과 같이 언어적으로 확장해 줌. 이러한 탐색이 즐겁고 현재의 흥미가 충족된다면 영아는 점차 모양 끼우기 방법도 시도하게 될 것임.

1-3-4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를 지원한다.

1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 시간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한다.

2 교사는 한 가지 활동이 다른 흥미영역의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거나 실내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3 교사는 놀이에 개입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에게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나 놀잇감을 제안하여 놀이수준을 높인다.

4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 방관하는 영유아가 흥미로운 놀이나 활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4개의 평가기준(1~4)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 시간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한다.

- 교사는 항상 영유아가 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도 보육실 전체나 바깥놀이 공간 전체를 자주 살펴 반 전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 이를 통해, 교사는 전체 영유아가 어떤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는지,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래와의 관계는 즐거운지, 놀이나 활동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함.

2 교사는 한 가지 활동이 다른 흥미영역의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거나 실내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흥미영역 간의 활동이나 놀이가 연계되고, 실내와 실외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킴.

유아

- 교사는 놀이 내용의 전개를 세밀하게 관찰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다른 흥미영역 활동과의 연계나 확장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계를 시도하는 유아를 지원해 줌.

흥미영역 간 활동 연계 및 확장의 예

- 미술영역에서 소품을 만들어 역할놀이에 사용하기
  - 예 : 동물가면, 꼬리 등을 만들어 동물놀이에 사용
- 미술영역에서 폐품으로 만든 악기를 음률영역에서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 역할놀이에 필요한 배경이나 장소(집, 자동차 등)를 쌓기놀이에서 구성하기
  - 예 : 구성물의 규모가 커지면 영역 간 구분하는 활동자료장을 이동시키는 융통성을 두어 흥미영역 간 연계를 격려하기 등

영아

- 교사는 영아가 즐겨하는 감각·탐색놀이나 기능놀이에 대한 흥미나 집중이 증가하도록 탐색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환경을 점검함.

영아의 기능놀이의 예

- 기능놀이란, 감각운동기 영아들이 감각운동기능을 중심으로 즐거움을 위해 반복적으로 하는 단순한 놀이행동을 말함.
  - 예 : 바구니 속 블록을 만지다가 블록끼리 부딪쳐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한 영아가 계속적으로 블록을 섞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인형을 건드리자 음악소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영아가 인형을 건드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등

- 교사는 영아가 불완전한 발성으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며 언어적 시도할 때 즉시 반응해 줌으로써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진행함.
  - 예 : 영아와 놀이를 진행하면서, 영아가 '응응...' 소리를 내면 교사는 '아기가 자네요. 아기 안아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등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해 줌.
- 한 가지 활동에 대해 충분한 탐색시간을 가지고 반복하여 익숙해진 뒤, 다른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함.

영아 놀이 지원 시 고려사항

- 교사는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며 숙달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이해하고 영아의 반복 활동을 즐겁게 함께 함.
- 개별 영아의 요구나 관심을 잘 관찰하고 이에 적합한 자료나 활동을 준비하되, 각 영아마다 탐색하는 방법과 특징은 영아의 기질에 따라 다르므로 교사는 이에 적절히 반응해야 함.
  - 예를 들면, 새로운 물체에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아의 경우에는 냄새나 소리 또는 멀리서 바라보기 등 다른 감각기관을 활용해 이를 탐색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반응이 느린 기질의 영아의 경우, 시간을 충분히 갖고 탐색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음.
- 24개월 전후로 언어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전 시기 영아의 의성어, 의태어,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 방식과 함께 이해하는 말과 표현하는 말의 언어발달이 이루어짐. 이에 교사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교사 자신이 바람직한 언어적 모델이 되어야 함.

3 교사는 놀이에 개입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에게 새로운 놀이 아이디어나 놀잇감을 제안하여 놀이수준을 높인다.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가 단순히 반복되어 흥미를 잃게 되는 시점이나 다른 놀잇감이 필요할 때, 또는 놀이상대가 필요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놀잇감을 제안하거나 놀이상대로 개입하여 함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놀이를 지속시키고 놀이의 내용을 확장시킴.

유아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놀이상대의 역할을 맡거나 놀잇감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놀이를 지속시킴.
  - 예 : 역할영역에서 병원놀이 도구, 아기인형, 가방 등을 양 손에 가득 들고 다니는 유아를 보고, 교사가 '(아기 인형의) 포대기가 여기에 있네'라고 말하며 놀이에 필요한 소품 제공하기
  - 예 : 마트놀이를 하는 유아에게 물건의 가격을 물으며, '가격표는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놀이를 관찰하다가 적절한 아이디어 제공하기 등
  - — 교사의 놀이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교사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함.

영아

- 교사는 각 영아의 신체발달 수준과 흥미를 잘 관찰하여 각 영아에게 적합한 몸놀이를 제공하고 점차 흥미를 늘려가도록 격려함.
  - 예 : 만0세 영아의 경우, 붙잡고 서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안전하게 붙잡고 설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고, 영아가 서서 무언가를 잡아당기면 소리가 들리는 등의 놀잇감을 제공해 주어 영아가 흥미를 느낄만한 요소를 점진적으로 늘려감.

4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 방관하는 영유아가 흥미로운 놀이나 활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참여를 살펴보고 영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경우 놀이를 안내하는 등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함.
  - — 영유아에게 적절한 순간에 다가가 흥미 있는 놀이나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 예 : '○○아,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러운데 한번 만져볼까?'
    - 예 : (손 인형을 이용하여) '○○아, 오늘 원숭이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구나. 우리 반에 원숭이 인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등

유아

-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또래가 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을 안내하고 참여 여부를 질문함.
  - 예 : '○○게임 하고 있어. △△도 보고 있다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등
-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나 활동을 권유함.
  - 예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극을 하는데 호랑이를 할 사람이 없네...', '자동차 길을 만들고 있는데 터널을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해' 등

영아

- 영아가 흥미 있어 할 만한 놀잇감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권유함.
  - 예 : '(촉감놀이판) 이거 만져보니까 부드럽네. ○○도 만져보고 싶니?' 등
  - 예 : '(신문지 등 종이를 구겨 소리를 들려주며) 바스락 바스락, 사각 사각, 종이에서 소리가 나네. 우리 ○○도 한번 만져볼까?' 등
-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아가 또래들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 행동을 언어화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함.
  - 예 : '(또래) ○○이는 빨간 색연필로 쭉쭉 긋고 있네. ◇◇는 어떤 색으로 하고 싶니?' 등

1-3-5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1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개방적 발문을 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발문을 한다.

3 교사는 영유아가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문을 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 중 2개를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개방적 발문을 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제한된 답이 아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발문함.
  - 영아가 사물을 가리키거나 쳐다볼 때, 교사는 영아와 함께 사물을 보고 영아가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반복하여 제공함.
  - 영아의 예
    - (까꿍판을 가리키며 '엉~' 하고 소리를 내는 영아에게) '어, 누가 있을까?'라고 반응해주고 기다림. 영아가 '응응~' 하고 소리를 내면 '그래, 여기 멍멍 강아지가 있구나. 까꿍~' 하고 반응해 줌.
    - (그림책 속의 코끼리를 보며 '이게 뭐야?' 하는 영아에게) '어, 이게 뭘까? 코가 아주 기네'라고 하며 영아가 생각하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반응해 줌.
  - 유아의 예
    - '○○이가 그림을 다 완성했구나!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말해줄 수 있니?'
    - '여기 감나무가 있네! 높은 감나무에 달려 있는 감은 어떻게 따지?'
    - '우체국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 교사는 영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발문을 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사고를 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발문함.
  - 영아의 예
    - (놀이집에서 놀이하는 영아에게) 교사가 놀이집의 문을 두드리며 '똑똑똑! 집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나요?' 하면서 영아의 반응을 유도하며 눈을 맞춤. 영아가 들어오라고 손짓이나 몸짓, 발성, 말소리 등으로 표현하면 '여기 놀이집에 ○○이가 있구나! 또 누가 있나요?'라고 반응해 줌.
    - (그림책의 자동차를 가리키는 영아에게) '이게 뭘까? 자동차구나! ○○이의 자동차에 누구를 태워줄까?', '우리 반에 똑같은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
    - (볼풀장에서 교사가 볼풀 속에 손을 숨기며) '선생님 손이 어디 있을까?'
    - (마라카스를 흔드는 영아에게) '소리가 나네~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걸까?'
  - 유아의 예
    - '동화책 속의 여우와 두루미는 어떤 생각을 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 '통 속에 있는 구슬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통은 입구가 작아서 손이 들어가지 않네!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
    - '그림책 속의 친구는 왜 화가 났을까?'
    - '이것들은 어떻게 다르니? 같은 것들은 어느 것일까?'

3 교사는 영유아가 스스로 질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문을 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더 깊이 사고하고 스스로 궁금해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발문을 함.
  - 영아의 예
    - '이것의 뚜껑은 어디에 있지? 잘 맞춰지지 않네.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 (블록을 바구니에 담고 쏟는 영아에게) '무슨 소리가 나는데... 바구니 속에 뭐가 있어요? 흔들어 볼까?', '○○이는 바구니 속에 블록을 담았구나. 이번에는 어떤 블록을 담아 볼까? 선생님도 ○○처럼 흔들어 봐야지.'

— 유아의 예

- ‘다 먹은 음료수병은 어디에 버리면 좋을까? 버려진 쓰레기들은 어떻게 될까?’, ‘썩기도 하고 오염도 되는구나!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
-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네!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 ‘날아다니는 곤충은 무엇이 있을까?’, ‘곤충이 날아다니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지?’, ‘날지 못하는 곤충에는 무엇이 있을까?’

1-3-6 교사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다.

1 교사는 활동 상황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

2 교사는 활동을 자신감 있게 진행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활동 상황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나타내는 행동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나 활동을 편안하게 진행함.
  - 교사는 영유아와 대화를 나눌 때 영유아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과 톤으로 내용을 전달함.
  -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영유아의 이야기나 질문 등에 대해 긍정적 끄덕임, 미소, 토닥거림, 약간 놀라며 신기해하는 얼굴 표정 등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임.

2 교사는 활동을 자신감 있게 진행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유아의 관심 주제, 놀이 형태 등을 파악하여 놀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함.
  - 교사는 영유아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목소리와 말투로 상호작용함.
  - 영유아의 놀이 진행이 예상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반응함.
  - 교사는 유아와 대·소집단 활동을 진행할 때 활동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정감 있게 진행하고, 유아의 반응이나 흥미를 반영하여 활동을 융통적으로 진행함.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영유아는 교사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나아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놀이 상황에서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의 폭을 넓혀 사고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구성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영유아가 교사와 신뢰할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와 교사 간의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위해서 교사는 개별 영유아를 편견 없이 존중하고 영유아의 기질 등을 파악하여 개별적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가 자신이 유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유아와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영유아가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더 넓은 사회적 관계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지표는 6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지, 영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하고 개별적 요구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교사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관찰	□Y □N
1-4-2	교사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한다.	관찰	□Y □N
1-4-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관찰	□Y □N
1-4-4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관찰	□Y □N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관찰	□Y □N
1-4-6	교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에게 자신감을 준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5개 이상
적 합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4개
개선필요	6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이하

1-4-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영유아를 대한다.

2 영유아의 외모, 성격, 옷차림, 행동 등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영유아를 대한다.

- 교사는 개별 영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대화를 나눌 때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 등 개별 영유아를 존중하는 행동을 보임.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의 예

- 부드럽게 영유아의 이름 부르기
- 영유아의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 '아직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익숙해지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는 정리를 꼼꼼하게 하네'
- 영유아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기
  -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 방법도 괜찮은걸?'
-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기
  - (혼자 컵에 물을 따르다 물을 엎지른 영아에게) '○○이가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 눈높이 맞추기,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는 행동 등

-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교사의 반응이 다르거나 성 차별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놀잇감을 성별로 구분해서 제공하지 않음.
  - 예 : '남자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일어나', '선생님은 여자라서 힘이 약해', '자동차는 남자 친구들 하라고 해. 우린 인형놀이 하자' 등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의 예

-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야! 너! 얘!' 등으로 위압적으로 부르는 경우
- 표면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영유아를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 대화 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음, 짜증내는 표정, 비웃음,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 등

2 영유아의 외모, 성격, 옷차림, 행동 등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 교사가 영유아의 개별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여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없음.
  - 예 : '넌 맨날 울기만 하니?', '그 옷은 네게 안 어울린다'와 같이 영유아의 외모, 성격, 차림 등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등

1-4-2	**교사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한다.**

1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기질과 생활리듬을 알고, 어떤 상황이나 요인(소리, 맛, 음식의 냄새, 신체접촉, 낯잠, 화장실 사용, 낯선 환경 등)에 대해 특히 더 민감한지를 파악하여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2 교사는 영유아의 정서적 상태나 기분에 따라 따뜻한 말, 긍정적인 표정 및 몸짓으로 반응하여 안정감을 준다.

3 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 등을 표현할 때 우선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원인을 파악한다.

4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놀이 선호(놀이 흥미, 현재의 관심사, 놀이수준, 놀이종류, 놀이 지속 시간, 친구관계 등)를 세심히 관찰하여 개별 특성에 맞게 상호작용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4개의 평가기준(1~4)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기질과 생활리듬을 알고, 어떤 상황이나 요인(소리, 맛, 음식의 냄새, 신체접촉, 낯잠, 화장실 사용, 낯선 환경 등)에 대해 특히 더 민감한지를 파악하여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교사는 일과 내내 개별 영유아를 세심히 관찰함.
  - 영유아는 언제쯤 피곤해 하는가?
  - 낯선 사람 또는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기질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함.
  - 까다로운 기질의 영유아가 어떤 면에서 더 까다로운지, 그래도 그 중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음.
    - 예 : 소리, 맛, 음식의 냄새, 신체접촉, 낯잠, 화장실 사용, 낯선 환경 등

— 순한 기질의 영유아에게는 주변의 놀잇감 등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자극을 줌.

- 영아(만0-1세, 만2세)는 개별적 기질, 선호에 있어 개인차가 크므로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 신호, 반응과 행동을 파악하여 민감하게 상호작용함.
  — 교사는 영아의 시선이 머무는 놀잇감, 음식, 사물, 상황 등 관심거리를 알고 있음.

2 교사는 영유아의 정서적 상태나 기분에 따라 따뜻한 말, 긍정적인 표정 및 몸짓으로 반응하여 안정감을 준다.

- 교사는 일과 중 모든 영유아의 정서적 상태나 기분을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함.
- 교사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신체적 반응을 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끄덕임, 미소, 토닥거림 등으로 영유아의 기분을 수용해 줌.
- 교사는 영유아의 정서적 상태를 개별적이고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해 줌.
  - 예 :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화가 났나 보구나', '부끄러워서 그래?', '슬퍼서 눈물이 났어, 왜 그럴까?' 등
- 영유아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며 따뜻하게 수용해 줌.
  - 예 : '잠이 덜 깼나보다. 아직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나 보네.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날까?' 등
- 교사는 영유아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반응함.
  - 예 : '○○아, 오늘 어디가 불편하니?' 등
-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정서를 수용할 때 민감하고 따뜻한 반응과 표현으로 안정감을 줌.
  - 예 : 몸을 낮춰 눈높이를 맞추기,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 및 말투 사용하기, 개별 영유아의 이름 부르기 등

3 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 등을 표현할 때 우선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원인을 파악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우선 따뜻한 말로 현재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함.
  - 예 : 'ㅇㅇ이가 무척 속상했구나', 'ㅇㅇ이가 많이 화가 났구나' 등
- 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수용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하여 안정을 찾도록 함.
  - 예 : 가볍게 안아주면서 토닥이기, 등 쓸어주기, 시선을 주며 끄덕여주기, 손 잡아주기 등

— 교사는 영유아가 조금 안정된 후에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파악함.

-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보다 쉽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위로해 줌.
- 부정적 정서의 원인은 교사 스스로도 예측 가능하나 영유아가 표현할 수 있을 경우 직접 질문하여 원인을 파악하고자 노력함.
  - 예 : 'ㅇㅇ이가 많이 속상한가 보네. 왜 속상한지 선생님에게 말을 해줄 수 있겠니?' 등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원

- 대부분의 영유아는 언어적 표현보다 표정, 행동, 몸짓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 정서를 표현함(예 : 울음, 짜증, 화냄, 또래에게 소리를 지름, 또래를 밀침, 블록을 집어던짐 등).
- 교사는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기 전부터 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 그대로 수용하며 따뜻한 말투로 현재의 정서 상태를 읽어줌.
- 교사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예 : 가볍게 안아주면서 토닥이기 등)을 취함으로써 영유아가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한 후, 원인(졸음, 아픔, 불편함, 배고픔 등)을 파악함.

4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놀이 선호(놀이 흥미, 현재의 관심사, 놀이수준, 놀이종류, 놀이 지속 시간, 친구관계 등)를 세심히 관찰하여 개별 특성에 맞게 상호작용한다.

- 교사는 일과 내내 개별 영유아의 놀이를 세심히 관찰함.
  - 영유아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가?
  - 현재 영유아의 놀이의 수준은 어떠한가?
  - 영유아는 어떤 주제의 놀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흥미로워하는가?
  - 영유아는 누구와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교사는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놀이 유형 및 주제를 잘 알고 있어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유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수용함.
  - 특정 활동이나 놀이 유형을 좋아하는 영유아에게 등원 또는 활동 시작 시 개별적으로 알려 흥미롭게 참여하게 함.
    - 예 : '오늘도 ○○가 좋아하는 기차놀이를 할 수 있어' 등
-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흥미있어 하는 자료나 놀잇감을 파악하여 소개하거나 제시함.
    - 예 : '○○가 좋아하는 토끼모양 종이에 그려볼까?', '○○는 이 파란 자동차를 좋아하지?' 등
- 영유아의 목소리, 웃음, 눈짓, 몸짓, 표정 등을 잘 관찰하여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더 필요한 자극을 적절히 제시함.
- 교사는 영유아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극을 주거나 영유아가 관심 없어 하는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음.

1-4-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1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를 표현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2 교사는 영유아가 요구나 질문을 할 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수용적 행동을 하며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즉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한다.

※ 영아의 경우, 교사는 비언어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를 표현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 영유아의 요구나 표현을 허용하는 분위기의 보육실에서는 영유아들끼리 집중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등처럼 교사에게 정보나 판단을 즉시 물어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남.
  - 반면, 일과가 주로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보육실에서는 영유아 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우선 또래끼리 해결하지 않고 교사에게 상황을 계속 이르는 행동, 대부분의 영유아가 보육실 내의 놀잇감이나 물건을 사용할 때나 다른 활동으로 전이할 때 교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행동 등이 자주 나타남.
- 교사는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반응을 천천히 하는 영유아나 표현을 어려워하는 영유아를 잘 관찰하고 언제라도 교사에게 질문을 하면 허용될 수 있음을 부드럽게 알려줌.
  - 예 : '○○야 선생님에게 할 말 있으면 꼭 해줘. ○○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궁금한지 말을 해주어야 선생님이 알 수 있거든' 등

- 교사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나 질문을 하였을 때, 질문을 계속 유도하는 허용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함.
  - 예 : '○○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가 무엇을 그렸는지 얘기해 줄래?', '참 재미있는 질문이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니?' 등

2 교사는 영유아가 요구나 질문을 할 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수용적 행동을 하며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 교사는 영유아가 요구나 질문을 할 때 영유아에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수용적 표정을 지으면서 영유아의 말을 끝까지 들음.
  - 예 : 한 영유아의 요구를 듣고 있는 중 다른 영유아가 요구를 해오는 경우, 교사는 수용적인 표정을 지으며 '지금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겠니?'라고 말해 주고, '많이 기다렸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는 선생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했어?' 등 이후에 말을 걸어온 영유아의 요구에도 잊지 않고 응답해 줌.

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즉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반응함.
- 교사가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즉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에 맞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함.
  - 예 : 유아의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 '선생님도 궁금한데 우리 같이 책을 찾아볼까?'라고 이야기함.
  - 예 : 폐품 상자에 구멍을 뚫어 달라는 유아의 요구에 '○○아 선생님 손에 물감이 묻어 도와주기 어려운데 먼저 상자를 꾸미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함.

-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언어적 표현과 함께 몸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부드럽고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함.
  - 예 : 끄덕이기, 미소짓기, 경청하는 표정, '음~' 등의 수용적 억양, 영유아에게 따뜻한 시선 보내기, 영유아와 눈 맞추기 등

— 교사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비언어적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영유아가 말하는 동안 이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적절히 나타냄.
  - 예 : 영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함께 시선을 옮겨가며 바라봄.

유아

-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는 각 흥미영역에서 유아의 개별적 놀이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이 많이 일어나므로, 교사는 전체 유아를 항시 관찰하고 있다가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즉시 반응함.
- 바깥놀이 시간에는 소집단이나 개별로 유아가 다양한 질문이나 요구를 하므로, 교사는 항시 유아의 놀이 진행을 관찰하고 있다가 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함.
- 점심이나 낮잠 등의 일상적 양육 시간에 교사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만 집중하지 않고 개별 유아가 요구해 오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즉시 민감하게 반응을 해 줌.

영아

- 교사는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영아의 다양한 요구나 질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줌.
- 만2세 영아는 인지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언어적 표현이 증가하며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사는 이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수용하고 반응해 줌.
  - 예 : '그건 ○○야' 또는 '그게 뭘까?'로 거꾸로 영아에게 물어 영아가 표현하면 '그래, 토끼구나!'와 같이 확인해 주도록 함.

- 만0-1세 영아의 경우, 교사는 영아의 몸짓이나 음성화로 된 요구에 대해 언어화하며 적절하게 반응함.
  - 예 : 무언가를 가리키며 '어, 어!'하는 영아의 손끝을 보며, '아, ○○이 모자 꺼내 달라고? 그래 여기 있어'하며 모자를 꺼내줌.
  - 예 : (영아가 "무" 하고 소리낼 때) ' 아, ○○이 물 먹고 싶구나. 물~'
- 교사의 반응을 영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잘 살피며 영아가 더 궁금해 하는 것이 없는가를 파악하려고 함.

1-4-4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이해 수준에 맞는 어휘나 방법을 사용한다.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이야기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의 이해 수준에 맞는 어휘나 방법을 사용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여 짧고 정확한 문장으로 이야기함.
- 교사는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거나 모든 대화를 교사가 시도하고 교사 주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음.
- 영유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경우 영유아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줌.

영유아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상호작용의 예

- 원아 : 선생님, 이게 뭐에요?
- 교사 : 이건 '명함'이라고 해.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이 ○○○에요'라고 이 종이에 이름을 써서 주는 거란다. 내 이름 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왜 줄까? 그래!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라고 주는 거겠지.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이야기한다.

- 교사는 영유아에게 말을 할 때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부드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톤으로 내용을 전달함.
  - 특히, 영아에게 말을 할 때 좀 더 천천히 자연스러운 톤으로 이야기함.
- 교사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잘 들리며, 편안하고 진지하고 관심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함.
  - 목소리의 크기는 보통에서 부드러운 정도로, 음조는 보통에서 낮은 수준의 정도임.
- 교사가 대화하고 있는 영유아의 수를 고려하여 톤을 조절함.
  - 대집단이나 소집단의 유아들에게 말할 때보다 개별 영아와 이야기할 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어조를 사용함.

1-4-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영유아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교사는 일과 중에 위협, 비난, 조롱 등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음.
- 일과 중 교사는 영유아에게 '선생님 말 안 들어서 또 잃어버렸잖아' 등과 같이 비난하는 말 대신에 영유아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줌.
  - 예 : '○○야 잃어버려서 속상하겠다. 선생님하고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나 서랍장에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등

2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영유아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 일과 중 교사는 영유아에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선생님이 허락할 때까지 만지지 말고 보고만 있어' 등과 같이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는 명령, 지시, 통제 언어 대신에 영유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언어를 사용함.
  - 예 : '○○야 조금만 뒤로 가주면 다른 친구가 잘 보일 것 같은데' 등

1-4-6 교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에게 자신감을 준다.

1 교사는 영유아에게 칭찬이 필요할 경우 즉시 구체적 행동을 언급하며 칭찬한다.

2 교사는 영유아가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격려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 (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에게 칭찬이 필요할 경우 즉시 구체적 행동을 언급하며 칭찬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거나, 또래를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등 칭찬이 필요한 경우에 즉시 영유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칭찬함.
- 교사는 단순히 "잘했어"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칭찬하기 보다는 영유아에게 무엇을 칭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줌.
  - 예 : '○○이가 혼자서 신발을 잘 신었구나', '○○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나눠주니까 △△이가 좋아하는구나!' 등

효과적인 칭찬

- 영유아를 평가하기 보다는 과정을 인정해주는 칭찬이 이루어져야 함.
  - ○○이는 탑을 잘 만들었구나! → ○○는 블록을 높게 쌓아서 탑을 만들었네!
-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칭찬 보다는 영유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함.
  - 잘했어, 멋지다! 최고! → 물감을 섞어 쓰니까 다른 색이 나오는구나! 좋은 생각인데?
-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기 보다는 영유아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칭찬하도록 함.
  - □□는 우리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 → 오늘은 혼자서 단추를 세 개나 끼웠네!
- 영유아의 행동을 외적 보상과 연결하기 보다는 정서적 즐거움, 만족과 연결하도록 함.
  - 양치질을 깨끗이 했으니 칭찬스티커 하나 줄게요.
    → △△는 세수를 해서 얼굴이 깨끗하구나. 기분이 참 좋아 보인다.

2 교사는 영유아가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며 격려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해내기 어려운 일을 시도해보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영유아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격려함.
  - 자신감이 없어 하는 영유아의 경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한 단계씩 해나가도록 격려함.
    - 예 : '조금은 겁이 나지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손을 잡고 평균대 위를 걸어보자, 한 걸음만 먼저 해볼까?'
  - 특히 반응이 느린 기질의 영유아의 경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시도해보도록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줌.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영유아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터득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기를 수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또래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폭을 더 넓히고, 사회적 가치와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 이처럼 영유아기에 경험한 또래관계의 질은 이후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또래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에서 반복적이고 긍정적 경험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교사는 계획한 활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일상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고 모델링을 보여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영유아가 다른 또래나 다른 연령의 영유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 배려하며 공동체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하고,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하는지, 어린이집에서 함께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익혀 나가도록 지원하는지, 영유아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적절히 개입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지표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1-5-1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한다.	관찰	□Y □N
1-5-2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관찰	□Y □N
1-5-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관찰	□Y □N
1-5-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 시 적절히 개입한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1-5-1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2 교사는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관찰될 때 이에 대해 칭찬하거나 격려한다.

3 교사는 영유아의 서로 다름(생각, 행동, 모습)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를 영유아에게 설명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함께 지내는 또래에게 친밀한 관심 갖기, 긍정적 정서 표현하기, 또래와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기, 서로 배려하기, 또래를 도와주고 도움받기, 또래와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배우기 등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함.
-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이들의 언어나 행동, 표정, 놀이 진행과정 등을 잘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서로 간의 배려나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함.

영아

- 교사는 일과 중 손유희, 노래 등을 통해 다른 또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
  - 만0-1세 영아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으므로 영아가 정서적으로 편안할 때 다른 영아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교사가 대신 말을 걸어주며 모델링을 보임.
    - 예 : 다른 영아의 사진을 함께 보여 주거나 다른 영아가 곁에서 놀이할 때 '○○야 안녕, 나는 △△야. 너도 인형에게 우유를 주고 있구나' 등

2 교사는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관찰될 때 이에 대해 칭찬하거나 격려한다.

유아

-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이들의 언어나 행동, 표정, 놀이 진행과정 등을 잘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격려함.
  - 일과에서 또래와 함께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험을 나누며, 느껴지는 생각과 느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 예 : 유아가 서로 웃고, 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유아가 만든 작품이나 편지를 주고받기 등
  - 일과에서 또래와 다양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배우며, 배려하는 경험을 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자주 제공함.
    - 예 : 또래 간의 나누기, 기다려주기, 도와주고 도움받기, 놀잇감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 놀잇감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나서 가져가기, 또래에게 나도 놀이에 참여해도 되는가를 묻기 등
- 또래 간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위해 교사가 제안을 해 주는 경우, 일방적인 지시로 끝나지 않도록 유아에게 행동의 결과에 대한 또래의 긍정적인 반응을 설명해줌.
    - 예 : '○○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니?', '그래 ○○야, 고마워!', '○○가 나눠주니까 △△이가 참 좋아하는구나!' 등

-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유아 간에 양보하는 행동과 서로 나누는 말에서 작은 실천을 반복하도록 격려함.
  - 유아에게 '배려, 경청' 등과 같이 어려운 용어를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대집단 활동을 하지 않음.

영아

- 교사는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함.
  - 만1세 영아가 또래보다는 교사에게만 상호작용을 시도할 경우, 교사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영아끼리의 정서 표현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함.
    - 예 : 바라보기, 미소 짓기, 옹알이, 이름 부르기 등, 옆에서 놀기 등
  - 만2세 영아가 일상에서 또래 간에 관심을 갖거나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격려함.
- 교사는 영아가 옆의 친구를 바라볼 때, '○○이가 △△를 보고 웃고 있네, ○○이도 웃어줄까?' 등의 말이나 행동으로 바람직한 상호작용 모델을 보여줌.

친사회적 행동의 예

- 놀잇감 나누기
- 다른 영유아가 음식을 받고 있을 때 짧은 시간동안 순서 기다리기
- 신발 신는 다른 영유아가 있을 경우 조금 기다렸다가 지나가기
- 다른 영유아가 만들고 있는 블록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옆으로 돌아가기
- 그림책 읽을 때 나중에 온 다른 영유아를 위해 앉을 공간 마련해주기
- 다른 영유아가 넘어져 아플 때 다가와 아픈 것을 공감해주기 등

3 교사는 영유아의 서로 다름(생각, 행동, 모습)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를 영유아에게 설명한다.

- 교사는 일상에서 또래의 생각을 다양하게 묻고 이를 모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들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다르고 그 행동 모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과에서 말이나 행동, 태도로 보여주고 있음.
  - 또래가 자신이 생각한 행동이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할 경우에 교사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또래의 생각이 모두 존중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지도함.

또래의 생각 존중을 격려하는 상호작용의 예(△△이가 블록 위로 자동차를 굴리는 상황)

원아 : △△, 너 자동차 거기로 가게 하지 마, 나빠!
교사 : ○○야, △△이는 자동차를 그쪽으로 굴리고 싶었나봐. △△에게 물어볼까?
교사 : △△야, 자동차를 그 블록 위로 굴리고 싶었니?
그렇구나. △△이는 자동차를 블록 위로 굴리고 싶었구나.
교사 : ○○야, △△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블록 위로 자동차를 굴리는 것이었대. △△이는 자기 생각을 멋지게 나타냈는데, ○○이는 자동차를 다르게 굴리고 싶었니?

1-5-2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영아의 경우,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격려하며 교사가 언어적으로 표현해줌.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교사는 영유아가 또래 간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함.
-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영유아들 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도록 격려함.
  - 예 : '○○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볼까?' 등
- 만0-1세 영아의 경우, 교사가 다른 영아를 향해 시선을 주고 시선이나 손 흔들기 등의 간단한 행동으로라도 또래에게 말을 걸어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줌.
  - 이때, 교사는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 표현하는 등 상호작용의 모델을 보여줌.
    - 예 : '○○가 △△를 보고 웃고 있네. 서로 안녕 인사해볼까?', '○○야 안녕. 손을 흔들면 ○○이가 좋아하겠네. 손을 흔들어보자. 안녕' 등

1-5-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1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다.

2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다.

- 교사가 어린이집과 보육실 생활 중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영유아의 입장에서 약속과 규칙으로 함께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한 자료가 있음.
  - 예 : 흥미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 것 등

2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한다.

- 교사는 약속과 규칙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지시하지 않음.
- 약속과 규칙이 많을 경우, 오히려 이를 지속적으로 익혀나가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상 연령의 영유아가 지킬 수 있는 행동 중 최소의 것들로 선정하며, 교사는 연령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지도함.

약속과 규칙에 대한 연령별 상호작용의 예

- 유아(만3-5세)
  -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3~4가지 정도 상황을 정해서 몇 개월 동안 함께 지켜나가도록 반복하여 지도함.
    - 예 : 쌓기놀이 영역의 경우 다른 친구가 만든 것을 부수지 않기, 다른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놀잇감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한 후 기다렸다가 그 친구가 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사용하기, 블록을 던지지 않기 등
- 영아(만2세)
  - 가장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줌.
    - 친구를 때리지 않기, 다른 친구가 놀고 있는 놀잇감을 빼앗지 않기, 정리시간에 놀이했던 놀잇감을 가져다 두기 등
- 영아(만0-1세)
  - 분명한 약속과 규칙을 정하기보다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정도로 지도함.
    - 교사는 친숙한 놀잇감, 개인물품 등을 사용 후에 정해진 자리(개인사물함에 영아의 사진을 붙여둠)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영아와 함께 정리하거나 찾아봄.

1-5-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 시 적절히 개입한다.

1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자료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2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적절히 개입한다.

- 유아 교사는 먼저 유아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영아 교사는 문제 상황에 적절히 개입하여 영아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아의 행동에 대해 설명한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자료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영유아가 사용할 놀잇감을 충분히 마련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 하루 동안 영유아가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놀잇감
    - 예 : 단위블록, 종이벽돌 블록, 쌓기영역에서 소품으로 사용할 작은 동물 인형, 자동차 등
  - 영유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놀잇감
    - 예 : 소꿉 놀잇감, 블록류 등

    ※ 특히 영아의 경우 좋아하는 놀잇감을 영아 수만큼 모양, 색, 크기가 똑같은 것으로 구비
  - 같은 활동을 하는 또래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놀잇감
    - 예 : 밀가루 반죽이나 찰흙, 모래놀이의 찍기틀 등

- 교사는 놀이의 진행과정이나 활동참여 영유아 수에 따라 흥미영역 공간을 융통적으로 조정하여 각 흥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함.
  - 다른 또래가 우연히 팔을 뻗어 놀던 것을 치거나,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자기가 놀던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놀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2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적절히 개입한다.

- 교사는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보다 해당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하게 적절히 개입하여 원인이나 과정을 듣고 상황을 상세히 파악함.
  -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적인 나누기와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교사가 평소에 잘 살펴서 문제 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유아

- 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는 유아에게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유아가 직접적인 해결을 원하여 교사에게 또래의 잘못을 설명할 경우, 두 명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 예 : '○○이는 △△이가 하는 말을 들었지?', '△△이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에게 말해 줄 수 있겠니?' 등
- 유아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해 보도록 하며, 교사도 신중히 이들의 말을 듣는 모델을 보여줌.
  - 예 : '○○이가 만약 △△라면 △△이는 어떤 느낌일까?'
- 유아 간에 서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교사는 이들을 칭찬해 주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도록 함.

- 교사가 다툼의 원인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고, 교사가 주도하여 다툼을 종결시키고, 교사가 해결방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예 : 다투었던 두 유아를 벌세우기, '누가 이 놀잇감을 먼저 갖고 놀았니?', '그럼 ○○가 잠시 더 갖고 놀다가 △△에게 양보하자' 등 교사가 직접 해결방안 제시하기 등

영아

- 영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는 즉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 교사가 영아 간의 문제를 개입하여 안전을 유지한 후, 양쪽 영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며 교사가 모델링으로서 긍정적 행동을 보여 줌.
  - 예 : '○○이가 △△의 놀잇감을 가져가서 화가 났구나. 다음번에는 △△야 이것 가져가도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 그러면 △△이도 화가 나지 않고 같이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등

1-6 평가

영유아와 보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평가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교사의 교수방법 개선 및 보육의 효과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부모 면담 등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보육과정의 운영은 계획, 실행, 평가를 통하여 결과를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체계로 운영된다. 각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단계의 내용이 다음 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평가와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과 반응을 주기적으로 관찰, 기록하고 영유아의 개별특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결과물 등을 수집한다. 또한 수집한 영유아의 관찰기록, 활동결과물 등을 활용하여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 내용범주 및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영유아의 발달 변화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한다.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는 개별 영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 방법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교사는 보육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교수-학습 방법은 적절하였는지, 일과 운영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경험을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영유아 행동 관찰기록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지, 영유아 평가 결과를 보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하고, 부모 면담의 자료로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안에 반영하는지를 평가한다.

지표 1-6.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1-6-1	영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기록한다.	기록	□Y □N
1-6-2	보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기록, 면담	□Y □N
1-6-3	영유아 평가결과를 보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부모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기록, 면담	□Y □N
1-6-4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안에 반영한다.	기록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1-6-1 영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기록한다.

1 놀이, 활동, 일상생활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한다.

2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3 영유아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찰기록 외에 활동결과물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 원아 개별이 아닌 원 전체의 자료 수집 상황을 평정함.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놀이, 활동, 일상생활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한다.

- 교사는 영유아별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일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행동을 관찰하고, 영유아가 참여하였던 활동 정도와 내용을 기록함.
- 일상적 양육 및 기본생활습관(급·간식, 낮잠, 배변 등), 실내외 놀이 및 보육활동이 골고루 관찰, 기록되어 있음.
  - 영유아의 관찰 내용은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영아 관찰기록 작성 시 고려사항

- 영아 발달 특징상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관찰, 기록되는 부분이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으나 관찰기록을 통해 영아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놀이 및 보육활동 장면에 대한 관찰과 기록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

※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서식은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을 참조하여 활용 가능함.

궁금해요

Q. 영유아 관찰내용과 보육일지 실행기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관찰기록은 교사가 해당 영유아를 관찰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 만1세 ○○○ 책을 보다가 자동차가 나오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빠방~"이라고 이야기함). 반면, 보육일지는 반 전체 영유아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으로(예 : 교통기관 표지판을 탐색하고 미술영역에서 만든 자동차를 이용하여 쌓기영역에서 자동차 경주놀이가 이루어짐), 일부 실행기록에서는 특정 영유아의 행동이나 놀이 특성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2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교사는 영유아가 변화하는 발달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 유아 : 월 1회 이상 / 영아 : 월 2회 이상

궁금해요

Q. 영아의 경우 관찰일지를 월 2회 이상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월 2회라는 의미는 표준 보육과정 6개 영역을 각각 두 번씩 작성하라는 뜻인가요?

A. 교사는 영유아가 변화하는 발달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유아는 월 1회 이상, 영아는 월 2회 이상 관찰일지를 기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아의 경우 일상적 양육 및 기본생활 습관(급·간식, 낮잠, 배변 등), 실내외 놀이 및 보육활동이 골고루 관찰,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달에는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했다면, 9월 달에는 기본생활, 예술경험 영역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찰기록 외에 활동결과물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 원아 개별이 아닌 원 전체의 자료 수집 상황을 평정함.

유아

- 블록으로 구성한 입체물을 촬영한 사진, 언어 및 음률활동 동영상, 미술활동 결과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좀 더 심도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어휘력 검사, 발달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영아

- 끼적이기를 한 종이, 키와 몸무게를 잰 측정치, 신체, 언어나 음률활동에 참여하는 동영상, 종이벽돌로 쌓기놀이 하는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장애아전문

- 장애영유아의 활동결과물 분석, 일화기록,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좀 더 심도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언어발달 검사, 정서행동발달 검사 등의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 가정과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므로 부모와 전화, 알림장,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에 활용함.
- 교직원간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회의 결과를 평가에 활용함.

1-6-2	보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1 수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기술하고 있다.

2 영유아 평가는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 내용범주 및 세부내용을 준거로 한다.

3 영유아의 발달 변화의 정도를 연 2회 이상 기록한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수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기술하고 있다.

- 영유아 관찰기록, 놀이나 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 표준화된 검사 등의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
  - 영유아별 평가 기록에는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추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 성취 중심의 결과 평가가 아닌 변화 과정을 진술하는 평가가 이루어짐.

2 영유아 평가는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 내용범주 및 세부내용을 준거로 한다.

-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변화에 대해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하여 평가한 기록이 있음.
  -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내용을 경험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나 태도를 보이고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평가함.

3 영유아의 발달 변화의 정도를 연 2회 이상 기록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기록하고 있음.

교사

- 영유아를 평가하기 위해 관찰기록 이외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 관찰기록 외 종합적인 영유아 평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3	**영유아 평가결과를 보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부모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1 영유아 평가결과를 활동내용 선정, 환경 구성, 교수전략, 상호작용 방법 등에 반영한 근거가 있다.

2 영유아 평가결과에 대해 부모와 의사소통한 자료(근거)가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영유아 평가결과를 활동내용 선정, 환경 구성, 교수전략, 상호작용 방법 등에 반영한 근거가 있다.

- 보육계획안을 작성할 때 영유아의 개인차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영유아의 개별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있음.
  - 교사는 활동내용 선정, 환경 구성, 교수전략, 상호작용 방법 등을 계획 시, 영유아의 개별 평가결과를 반영한 기록(예 : 보육일지, 관찰기록 등)이 있음.

교사

- 계획안 작성 시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영유아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2 영유아 평가결과에 대해 부모와 의사소통한 자료(근거)가 있다.

-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영유아 발달 수준과 특성, 변화 정도 등 영유아 평가결과를 부모와 공유한 기록이 있음.
  - 부모와 개별면담 등을 통해 부모에게 평가결과를 공유한 기록(예 : 부모 면담 기록 등)이 있음.

원장, 교사

- 개별 영유아의 관찰기록 및 평가 자료를 부모와 공유하는가?
  -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는가?
  - ※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면담으로 확인

영유아 행동 관찰 · 평가 및 부모 개별 면담 관련 서식의 예

영유아 관찰 및 부모면담

담임교사	원장

1.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영유아별로 마련

_____ 반		이름 :	생년월일 :
구분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관련영역	관찰내용 및 평가	
3월	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영역		
4월			
5월			
· · ·			
영유아발달 평가*			

※ 표준보육과정(6개영역), 누리과정(5개영역)의 내용을 골고루 포함하여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영유아 발달 평가는 관찰기록, 활동결과물 등 영유아의 발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2. 부모 개별 면담

일시	2017. 4. 2.(상반기)	대상	○○○ 어머니	면담자	○○○ 교사
부모 의견					
교사 의견					
총평					

※ 부모면담 기록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연간 횟수, 시기(예: 상, 하반기)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출처 :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관련 평가항목 1-6-1〉

- 놀이, 활동, 일상생활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기록 (유아 월 1회, 영아 월 2회이상 영유아 별로 기록)
- 표준보육과정의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르게 관찰, 기록

〈관련 평가항목 1-6-2〉

- 영유아 관찰기록과 수집된 활동결과물을 활용하여 개별 영유아 별로 연 2회 이상 발달 특성과 변화의 정도 기록
-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 내용 범주 및 세부내용을 준거로 하여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

〈관련 평가항목 1-6-3〉

- 영유아의 종합평가 내용에 대해 부모와 공유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
- 총평에는 부모면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영유아에 대한 가정과 어린이집의 지원 방안 등 기록

* 영유아 평가 관련 서식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상, 하반기 또는 일정 주기에 따라 칸을 가감하는 등 변경하여 활용 가능하며, 어린이집 자체서식으로도 작성 가능

1-6-4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안에 반영한다.**

1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안 작성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각 반별 보육일지에 일일(또는 주간) 보육내용의 실행과 평가가 기록되어 있음.
  - 하루 일과(또는 주간) 운영에 관한 총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루 일과(또는 주간) 중 중점적으로 진행된 일부 활동의 평가가 포함됨.
  - 이때 일부 영유아에 대한 활동 위주로 평가하지 않음.

보육과정 평가 시 고려사항

- 활동과 자료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절한 수준이었는가?
-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신체리듬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 실행되었는가?
- 영유아의 개인차, 요구를 반영하였는가?
- 교수학습방법은 영유아의 흥미와 활동 특성에 적합하였는가?
- 하루 일과(또는 주간)의 활동 종류, 시간 배정은 적절하였는가?
- 진행된 활동 중 영유아의 참여 정도와 흥미가 높았던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 계획된 활동 중 변경되거나 추가된 활동 및 이유는 기록되었는가?
- 하루 일과(또는 주간)의 보육내용 중 수정·보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계획안 작성에 반영하고 있다.

- 각 반별로 보육일지에 평가된 내용이 다음 보육활동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1-7 일상생활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장시간 동안 보육되는 곳이므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가 영유아의 개별 특성을 배려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기본생활 습관과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교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가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사가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관심 갖고 존중하며 등원부터 하원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영유아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으며, 자존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교과목 형태로 구분한 활동이나 특별활동에 대한 참여를 최소화하고,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때, 영유아는 자신의 흥미와 내적 동기에 따라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된다.

본 지표는 2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특별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는지, 일상생활 경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도록 격려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1-7. 일상생활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1-7-1	특별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관찰, 기록	□Y □N
1-7-2	영유아의 일상 경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화되도록 격려한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적 합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개선필요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0개

1-7-1 특별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1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희망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2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3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된다.

4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기록	충족여부	□ Y	□ N

✔ 특별활동 미실시 시 Y로 평정

✔ 4개의 평가기준(1~4)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희망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희망 영유아에 한해 이루어짐.
  - 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특별활동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2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일과를 운영하고 있다.

-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일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된다.

-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짐.

4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 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 동의서가 필수기재사항(프로그램명, 영유아 이름, 부모성명(서명))의 누락 없이 구비되어 있음.

궁금해요

Q.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자체 사업(노인일자리 등)에서 제공하는 영어, 한자, 악기(장구 등) 배우기 등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 · 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영어, 한자 등과 같이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분절된 내용(영어, 한자 등)을 가르치는 것은 특별활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시 주체와 상관없이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영어, 한자 등의 내용은 특별활동 운영규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동의서를 구비하여 오후 시간대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7-2 영유아의 일상 경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화되도록 격려한다.

1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지도 한다.

2 식사와 간식 시간에는 서두르지 않고 안정되고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된 시간대(급·간식 전후, 바깥놀이 후, 배변 후 등)나 필요한 경우에 영유아가 스스로 씻고 닦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5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 만3세 이하의 종일반 영유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하며, 만4, 5세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낮잠 또는 휴식시간을 운영함.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5개의 평가기준(1~5)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지도 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등원할 때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개별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눈 맞춤,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나눔.
  - 등원하는 영유아를 맞이하느라 나머지 다른 영유아를 소홀히 하지 않음.

- 부모와 분리가 어려운 영아의 경우, 영아가 부모와 편안하게 헤어질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려줌.
  - 평소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자료, 활동 등으로 영아에게 일과에 대한 기대감과 흥미를 유발시킴.
  - 영아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거나 영아의 울음을 무시하고 달래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음.

영유아 맞이하기 방법의 예

- 영유아가 교사에게 먼저 보여주거나 자랑하는 것(옷, 소지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간단하게 주말 지낸 이야기, 어제 귀가 후나 등원 길에 일어난 이야기를 경청해 줌.
- 필요 시 영유아가 일과에 기대를 가지도록 오늘 진행될 활동에 대해 짧게 소개하거나 보여줌.
- 영유아가 늦게 등원하여 모든 교사가 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마중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활동 중 자기 자리에서 영유아와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며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함.

- 일부 영유아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있는 영유아들은 귀가할 때까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보호자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함.
  - 교사는 영유아가 흥미롭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상호작용 함.
  - 빠른 귀가를 위하여 영유아의 옷을 미리 다 갈아입히고 기다리게 하지 않음.
  - 영유아가 있는 공간 한쪽에서 보육실을 청소하는 등 영유아를 방치하거나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음.

2 식사와 간식 시간에는 서두르지 않고 안정되고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개별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급·간식 지도를 하며, 전반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 분위기를 조성함.
  - 교사가 정한 규칙과 식사 시간에 맞춰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음.
    - 예 : 교사-영유아 간 대화가 없고 일방적, 지시적이거나, 영유아 간 상호작용을 제지하는 등

유아

-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지도하되,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 등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함.
- 유아 혼자 먹도록 방치하지 않고,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아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도함.

급·간식 지도의 예

- **식습관 지도** : 음식 대하는 자세, 식사하는 자세, 먹은 자리 정리하기 등
- **식사예절** : 돌아다니지 않고 먹기, 손으로 먹지 않기, 식사도구로 장난치지 않기 등

영아

- 교사는 영아의 수유 시 영아를 팔에 안고 우유병을 잡아주며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함.
- 영아에게는 모든 음식이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영아의 먹는 속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함.
- 발달이 빠른 영아인 경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병행함.

3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된 시간대(급간식 전후, 바깥놀이 후, 배변 후 등)나 필요한 경우에 영유아가 스스로 씻고 닦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영유아는 일과 중 계획된 시간대(급·간식 전후, 바깥놀이 후, 배변 후 등)나 필요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씻거나 씻겨달라고 요구함.
- 교사는 손 씻기, 세수, 이 닦기, 배변 후 뒤처리 등 영유아의 신체를 만지거나 씻길 때, 영아를 안아서 이동할 경우에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설명해 줌.
  - 씻는 과정 또는 씻은 후의 모습, 개운한 기분 등을 이야기하거나, 씻기와 관련된 노래를 불러줌.
    - 예 : '세수하니까 더 깨끗해졌네!', '어디 보자! 양치하니까 이가 반짝반짝하네! ○○ 기분도 좋지?', '엉덩이가 뽀송뽀송 깨끗해졌네, 시원하고 좋지?' 등
- 교사는 씻고 닦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옷이 젖었을 때 귀찮아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고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하거나 갈아 입혀줌.
- 일과 중에 교사도 영유아와 함께 자주 손을 씻어 영유아를 위생적으로 보살피고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영유아들이 청결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함.

유아

- 교사는 유아가 씻기의 전 과정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하고 있음.
  - 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안내하고 지켜보며 개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을 말로 표현해 줌.
    - 예 : '소매를 걷을까?', '비누를 꼼꼼히 칠 해보자', '윗니, 아랫니, 어금니도 치카치카' 등

영아

- 영아(만2세)
  - 교사는 영아가 씻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언어화하여 안내함.
    - 예 : '소매를 걷고, 이제 물을 틀어보자' 등
  -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칭찬, 격려하여 자조성 발달을 돕되 과정 중 개별 영아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 교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줌.
- 영아(만0-1세)
  - 교사는 개별 영유아를 씻겨주며 그 과정에서 일부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편안하고 즐겁게 씻는 과정을 함께 즐김.
    - 예 : '볼도 씻고, 이마도 씻어보자', '거울 좀 봐봐, 얼굴이 깨끗해졌네!' 등

4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유아

- 화장실 사용 시 유아별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도움을 제공함.
- 화장실 사용 시 교사는 유아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배변 실수를 할 경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함.
- 청결습관 형성 및 올바른 화장실 사용방법(기다리기, 옷 벗기, 용변 보기, 뒤처리하기, 옷 입기, 손 씻기, 물 잠그기, 손 닦기 등)을 몸에 익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함.
  -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아에게는 손을 잘 씻었는지, 뒤처리는 잘 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묻고 살펴보며 확인함.

영아

- 영아(만2세)
  - 배변 훈련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배변 경험이 되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함.
  - 배변 실수의 경우 너그럽게 수용하며 차츰 영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함.
- 영아(만0-1세)
  - 기저귀 갈이 진행 시, 영아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도하고 다리 주무르기 등 영아의 신체를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진행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함.

5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 만3세 이하의 종일반 영유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함.
  - 만4세 이상 유아는 필요시 낮잠(또는 휴식) 시간을 운영함.
- 영유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함.
  - 편안한 복장과 자세로 잠자리에 들도록 하기
  - 창문의 커튼 등으로 보육실의 자연채광 조절하기
  - 조명을 어둡게 하기
  -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하기
  - 편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그림책 읽어주기 등
- 교사는 전반적인 낮잠 과정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낮잠이 되도록 지원함.
  - 낮잠시간 동안 보육실 비우기, 보육실에 있지만 영유아의 낮잠 양상을 살피지 않고 다른 업무만 보는 등 영유아의 관리 및 낮잠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음.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낮잠 자기 전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긴장감을 풀어주어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도움.

- 개별적인 영유아의 낮잠 습관을 수용하고, 개인차에 따라 개별적인 지도를 함.
  - 교사는 영유아가 잠이 드는 동안 등을 토닥이거나 옆에 함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줌.
- 잠이 깬 영유아를 안아 주는 등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기다려 주고,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영유아는 한 쪽에서 쉬거나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배려함.

유아

- 낮잠을 계획하여 시도하였으나 잠을 못 이루는 유아, 또는 만4세 이상 유아에게는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낮잠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함.

영아

- 오래 자거나 짧게 여러 번 자는 영아, 예민하여 작은 소리에도 깨는 영아, 우유병을 빨거나 애착물(베개나 이불, 인형 등)이 있어야 잠이 드는 영아, 너무 어두우면 잠들지 못하는 영아 등 매우 다양한 습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사는 이러한 개별 습관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려함.

궁금해요

Q. 일부 종일반 영유아의 경우, 잠들기 힘들어 하거나 부모님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만3세 이하의 종일반 영유아에게 낮잠(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를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낮잠을 자는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되므로 보육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보육환경은 영유아의 놀이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과 시설, 설비를 포괄하며, 영유아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교직원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영유아의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격려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구성, 유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관리는 운영방침 수립부터 원아관리, 재정관리, 사무관리, 교직원 인사관리, 가족지원 등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은 원아관리, 재정 및 사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해진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은 총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실내 공간이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외 공간은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기관 운영이 지침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린이집과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수요자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평가지표	
2 - 1	실내 공간 구성
2 - 2	실외 공간 구성
2 - 3	기관 운영
2 - 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2 - 5	어린이집 이용 보장

영역 평정기준

우 수	5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4개 이상
적 합	5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3개 이하
개선필요	5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어린이집은 D등급(불인증)

2-1 실내 공간 구성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일과를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효율적으로 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자율성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자발적 선택을 통한 탐구와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은 영유아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하며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과 발달 특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보육실은 다수의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지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영유아가 놀이와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영역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본 지표는 5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보육실 공간 배치 및 흥미영역 구성이 적절한지,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활동자료가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되었는지, 비품과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2-1. 실내 공간 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 구성한다.	관찰	□Y □N
2-1-2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관찰	□Y □N
2-1-3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관찰	□Y □N
2-1-4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을 영유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관찰	□Y □N
2-1-5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연령별, 주제별 또는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4개 이상
적 합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개선필요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이하

2-1-1	보육실 내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 구성한다.

1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육실 공간이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음.
  - 연령별 흥미영역 구성(예)
    - 만0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 만1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역할 및 쌓기놀이 영역
    - 만2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감각·탐색영역, 미술영역, 음률영역, 역할 및 쌓기놀이 영역
    - 만3-5세 : 언어영역, 미술영역, 음률영역, 수·조작영역, 과학영역, 역할놀이 영역, 쌓기놀이 영역
- 흥미영역은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실 내에 배치되어 있음.
  - 보육실의 공간이나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경우, 유사한 성격의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연계·확장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흥미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예 : 언어영역과 수·조작 또는 과학영역, 역할놀이 영역과 쌓기놀이 영역 등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 흥미영역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흥미영역은 영유아들이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2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 흥미영역은 해당 공간에서 놀이하는 영유아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 흥미영역별 최소 공간 크기(예)
    - 만0-1세 : 1~2명 이상, 만2세 : 2~3명 이상, 만3-5세 : 3~4명 이상
- 보육실에 활동자료장과 책상, 의자 등을 지나치게 많이 비치하여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활동자료장이나 책상 배치 시, 영유아의 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보육실 내 흥미영역 배치 시 고려사항

- 언어영역은 조용하고 밝은 곳에 배치하고 그림책이나 자료를 영유아들이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함.
- 미술영역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해 보고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용하고 밝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유아들이 손쉽게 자료를 꺼내고 정리할 수 있는 자료장을 구비하고 완성된 작품을 말리거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음률영역은 활동적이고 소리가 많이 나므로 조용한 영역과 떨어진 곳에 배치함.
- 수·조작 및 과학(탐색) 영역은 조용한 곳에 책상과 함께 배치하며, 특히 과학영역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경우를 감안하여 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함.
- 역할 및 쌓기놀이 영역은 놀이 확장이 가능하도록 가까이 배치하고, 조용한 영역과 떨어진 곳에 배치함.
- 신체, 역할, 쌓기영역 등은 영유아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크기로 구성함.
- 동시에 여러 명이 참여하는 흥미영역(예 : 역할 및 쌓기놀이 영역 등)의 공간은 다른 흥미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확보하여 충분한 공간을 마련함.
- 영유아의 흥미, 발달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함.

2-1-2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1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 공간, 양호 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다.

2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다.

3 영유아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거나 영유아가 만든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영유아의 수에 맞게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 공간, 양호 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다.

- 보육실 외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공간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있으며, 다음의 설비 및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음.
  -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희실이 마련되어 있고,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놀잇감 등이 있음.
  - 영유아가 그림책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책꽂이와 의자(소파) 등이 배치된 도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아픈 영유아가 쉴 수 있는 양호 공간이 어린이집 내(원장실 등)에 마련되어 있고, 비상약품, 간이침대(매트) 또는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음.
  - 영유아와 교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어린이집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시청각실 등 기타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은 인정함(예 : 원장실을 양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에서 거실을 유희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궁금해요

Q.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하여 미인가 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유희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공간을 대상으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인가 공간에 마련한 유희실의 경우,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원칙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지하공간에 설치된 보육실 등 영유아 활동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다.

- 영유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활동하는 등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보육실마다 마련되어 있음.
  - 휴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언어영역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 휴식공간을 배치할 수 있으며, 휴식공간은 영유아들이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영유아의 접근이 어렵거나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휴식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영유아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거나 영유아가 만든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영유아의 수에 맞게 마련되어 있다.

- 영유아의 개인 소지품이나 영유아가 만든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공간(사물함)이 영유아 수에 맞게 마련되어 있음.
  - 개별 사물함은 영유아가 자신의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이나 사진 등이 부착되어 있음.
- 개별 사물함은 영유아가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꺼내거나 보관해둘 수 있도록 보육실 내 또는 인근에 마련되어 있음.
  - 개별 사물함에 잠금장치 등이 없어, 영유아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

2-1-3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1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 및 높이로 영유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2 영아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장애아전문 실내외 시설 및 설비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 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어린이집에 해당 영아가 없는 경우는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장애아전문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어린이집에 해당 영아가 없는 경우는 2개의 평가기준(1, 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 및 높이로 영유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영유아용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하고, 영유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

  ※ 영아반 보육실에 높은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신체 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함.

- 실내 공간(보육실 외) 및 실외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설비 및 가구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함.
-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임.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성인용 변기 및 세면대는 안전발판, 보조변기 등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영아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일정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갈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 해당 영아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장애아전문 실내외 시설 및 설비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 실내외 시설 및 설비, 가구 등은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함.
  -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영유아를 위하여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 유도 블록, 핸드 레일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
  - 화장실에는 대·소변기의 높이가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피더시트, 기립보조 책상, 자세교정 의자, 앉아있는 채로 이동이 용이한 의자 등 장애유형에 맞는 기구들과 설비들이 마련되어 있음.

2-1-4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을 영유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1 영역별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구비하고 있다.

2 활동자료는 영아의 경우 영역별로 각각 3종 이상, 유아의 경우 영역별로 각각 4종 이상 구비되어 있다.

3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이 만0-1세의 경우 2개 이상, 만2세의 경우 4개 이상, 만3-5세의 경우 5개 이상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영역별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구비하고 있다.

- 유아반의 흥미영역별 활동자료는 유아(만3-5세)의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음.
- 영아반의 흥미영역별 활동자료는 영아(만0-1세, 만2세)의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음.

적합한 활동자료란? * 출처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2013)

- 적합한 활동자료란 활동내용과 관련되어 있되 질적으로 우수하고 흥미로우며, 안전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이 고려된 것을 의미함.

2 활동자료는 영아의 경우 영역별로 각각 3종 이상, 유아의 경우 영역별로 각각 4종 이상 구비되어 있다.

- 신체영역 : 다양한 신체(대근육)활동을 위한 자료
  - 유아는 4종 이상, 영아는 3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신체활동 자료는 영유아 수에 따라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음.
    ※ 신체활동 자료는 보육실, 옥외놀이터, 유희실 등에 비치 가능함.
- 언어영역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활동을 위한 자료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자료가 각각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언어활동 자료는 영유아 수에 따라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자유롭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음.
    ※ 영유아의 언어활동을 위한 자료로 학습지만 제공하지 않음.
- 미술, 음률영역 : 창의적 미술, 음악 및 동작활동을 위한 자료
  - (유아) 미술활동 자료 4종 이상, 음악 및 동작활동 자료 4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만2세 영아) 미술활동 자료 3종 이상, 음악 및 동작활동 자료 3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만0-1세는 감각 및 탐색 영역에 통합하여 비치 가능함.
  - 미술 및 음률 활동 자료는 영유아 수에 따라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자유롭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음.
- 감각 및 탐색 영역(영아) : 감각 탐색 활동 및 소근육 조작 경험을 위한 자료
  - 감각·탐색 활동 자료가 3종 이상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음.
  - 감각 및 탐색 활동 자료는 영유아 수에 따라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자유롭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음.
    ※ 생활주제, 영아의 흥미에 기초하여 다양한 감각자료와 자연물 등 직접 관찰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수 ·조작, 과학영역(유아) : 수·조작활동과 과학활동을 위한 자료
  - 수·조작활동 자료 4종 이상, 과학활동 자료 4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유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자연물 등 실물자료를 구비하고 있음.

    ※ 학습지, 평면자료 위주로 제공하지 않음.

- 역할, 쌓기영역 :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를 위한 활동 자료
  - (유아) 역할놀이 자료 4종 이상, 쌓기놀이 자료 4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만2세 영아) 역할놀이 자료 3종 이상, 쌓기놀이 자료 3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만1세 영아)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가 3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만0세는 감각 및 탐색 영역의 자료에 통합하여 비치함.
  -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는 영유아 수에 따라 다양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 영유아가 자유롭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음.

신체(대근육)활동 자료의 예

영아

-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제공함.
-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은 색, 모양, 크기가 똑같은 것으로 2개 이상 준비함.

  - **영아(만0-1세)** : 기어오를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부드러운 솜이나 스펀지를 넣은 것), 운동기구(손이나 발동작으로 이동, 비이동, 조작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벽을 따라 설치된 봉, 스펀지 블록, 큰 공(천이나 플라스틱), 밀고 당기는 놀잇감(단순하고 손에 쥘 수 있는 크기) 등
  - **영아(만2세)** : 미끄럼틀, 점핑 바운서, 조합 놀이대, 볼풀 놀이대 등 고정식 놀이기구, 목마, 자동차, 끌차 등 이동식 놀이기구, 공, 후프 등의 운동기구, 종이벽돌 블록, 스펀지 블록 등

유아

- 신체놀이를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조정하여 움직이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놀이기구를 제공함.

  - **유아(만3-5세)** : 조합놀이대, 놀이집, 그네, 미끄럼틀, 낮은 철봉, 시소 등 고정식 놀이기구, 차량 모형, 운전대, 타이어 오름대, 드럼통 터널, 안전 널빤지, 받침대, 사다리, 점핑 바운서, 평균대, 흔들목마, 구르기용 매트, 자전거, 손수레, 끌차, 이동식 농구대, 다양한 크기의 블록류(플라스틱 공간 블록 등), 크기와 종류가 다양한 공류, 줄넘기, 훌라후프, 던지기용 고리 등

언어활동 자료의 예

영아

- 만0-1세는 옹알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향상되고, 만2세가 되면 발음을 하는 조음능력, 어휘력 등이 향상되는 시기이므로, 소리를 구분하여 듣고 말소리와 몸짓으로 의사표현을 촉진하는 자료를 제공함.

[듣기·말하기활동 자료]
- 영아(만0-1세) : 그림자료, 사진자료, 전화기, 짧은 이야기와 노래 테이프 등
- 영아(만2세) : 손 인형, 사진자료, 친숙한 일상생활 용품의 사진과 이름이 있는 그림카드, 전화기,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카세트, 짧은 이야기와 노래 테이프 등

[읽기활동 자료]
- 영아(만0-1세) : 입으로 물거나 던져도 좋을 만큼 안전하고 견고한 재질과 형태의 그림책(헝겊책, 촉감책, 비닐책, 스펀지 책, 소리나는 책 등),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 자료(영아에게 친숙한 인물, 동식물) 등
- 영아(만2세) : 글자 수가 많지 않은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포함하여 재질과 형태가 다양한 책(촉감책, 퍼즐책, 소리나는 책 등), 그림이나 사진 자료(그림책의 주인공, 영아에게 친숙한 인물, 지역사회, 자연물) 등

[쓰기활동 자료]
- 영아(만0-1세) : 영아가 물거나 빨아도 안전한(무독성) 짧고 굵은 크레용이나 부드럽게 써지는 색연필, 전지, 쓰기판 등
- 영아(만2세) : 굵은 크레용, 굵은 색연필이나 4B 연필, 자석 쓰기판, 종이 등

유아

- 유아는 친숙한 글자나 주변의 인쇄물에 관심이 많아지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읽고 쓰기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언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자료를 마련함.

[듣기·말하기활동 자료]
- 교사나 부모 등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 CD 플레이어와 이야기 CD, 헤드폰, 유아가 스스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촉진시키는 소품(막대 인형이나 테이블 인형, 융판이나 자석 인형, 손인형, 손가락 인형, OHP 그림, 인형극 틀 또는 언어 놀이를 할 수 있는 수수께끼 상자나 순서대로 사건을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는 그림카드, 목소리를 녹음해 볼 수 있는 녹음기, 마이크 등)

[읽기활동 자료]
- 다양한 주제의 각종 그림책(창작그림책, 전래동화, 글 없는 그림책, 과학 동화, 생활동화 등), 사진첩, 유아들이 만든 그림책, 주제에 따른 화보 모음 책, 동요, 동시집, 어린이용 잡지나 카탈로그, 간판, 메뉴판, 광고나 포스터 등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인쇄물, 각종 글자 모양과 글자 퍼즐 등

[쓰기활동 자료]
-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종이, 굵은 색연필이나 연필, 사인펜 등의 다양한 필기도구, 소형 화이트보드와 마커 펜, 글자 상자, 단어 카드, 자·모음 카드, 독서 카드, 글자 도장, 컴퓨터와 프린터 등

미술, 음악 및 동작활동 자료의 예

영아

- 자신의 신체와 감각자극에 호기심을 보이며 주변 사물, 환경, 자연을 탐색하는 시기이므로 창의적 표현과 감각적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함.

[미술활동 자료]

- **영아(만0-1세)** : 벽이나 바닥, 책상 위에 넓게 붙인 큰 도화지와 무독성 크레파스, 부드럽게 써지는 색연필, 밀가루 점토, 스티커, 여러 가지 모양 도장 등
- **영아(만2세)** :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종이류, 색연필, 크레용, 크레파스 등 그리기 도구, 우유팩, 잡지책, 안전가위, 풀, 밀가루 점토, 스티커, 모양 도장 등

[음악 및 동작활동 자료]

- **영아(만0-1세)** : 소리 나는 물건을 흔들거나 두드리는 것을 좋아하므로 딸랑이나 안전한 방울, 마라카스, 녹음기, 음악테이프, 소리가 나는 놀잇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리 나는 물건
- **영아(만2세)** : 북이나 흔들고 두드릴 수 있는 단순한 리듬 악기(리듬막대, 마라카스, 탬버린 등), 녹음기, 음악테이프, 동작표현을 돕는 소품(여러 가지 색 보자기, 스카프, 리본 막대, 부드러운 수건 등)

유아

- 자연이나 생활,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음악, 움직임, 극놀이,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즐기게 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

[미술활동 자료]

- 필기구류(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사인펜 등), 물감류(수채화물감, 먹물 등), 종이류(도화지, 두꺼운 도화지, 색도화지, 신문지, 한지, 화선지, 색종이, 골판지, 박스종이, 소포지, 포장지, 광고지, 이면지, 잡지류 등), 만들기 도구류(풀, 가위, 펀치, 고무줄, 클립, 테이프 등), 만들기 재료류(수수깡, 모루, 솜, 나무젓가락 등), 점토류(찰흙, 지점토, 밀가루점토 등), 폐품류(우유곽, 요구르트병, 상자 등)

[음악 및 동작활동 자료]

- 리듬악기(리듬막대, 우드블록, 마라카스, 캐스터네츠, 탬버린, 트라이앵글, 소고, 작은북 등), 가락악기(실로폰, 멜로디언, 피아노, 키보드, 기타 등), 전통악기(소고, 장구, 북, 징, 꽹과리 등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악기와 외국의 전통악기), 음악가 및 악기 사진이나 악기 연주 또는 노래 부르는 모습의 사진, 그림이 있는 노래가사, 그림 악보, 음악 포스터 등, 이 밖에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 기회를 갖도록 녹음기, 헤드폰, 다양한 카세트/CD 플레이어, 음악 테이프 등, 동작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색 보자기, 스카프, 리본 테이프, 리본 막대, 한삼, 부드러운 수건, 각종 동물 가면이나 탈춤 소품, 거울 등

감각 · 탐색, 수 · 조작, 과학활동 자료의 예

영아

- 영아는 오감을 이용하여 환경을 탐색하므로, 풍성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자료를 제공함. 특히, 밝은 색상, 대비가 분명한 것, 단순한 디자인,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 것, 사람 얼굴 모양 등을 선호하므로 이런 특징을 갖춘 놀잇감을 제공함.
- 감각활동 자료는 영아가 만져보고, 들어보고, 맛보고, 냄새 맡아 볼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또한 영아가 삼킬 정도로 작은 크기(직경 3.5㎝ 이하)의 놀잇감은 비치하면 안 되며, 쉽게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안전한 재질로 준비하여야 함.
-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은 색, 모양, 크기가 똑같은 것으로 2개 이상 준비함.

[감각·탐색활동 자료]

- **영아(만0-1세)** : 감각활동 자료(여러 가지 재질과 질감의 촉각판, 다양한 소리가 나는 플라스틱 통 등), 탐색 및 조작활동 자료(누르면 튀어나오는 놀잇감, 오뚝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고리 끼우기, 모양 찾아 맞추기 등)
- **영아(만2세)** : 감각활동 자료(오감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감각 놀잇감, 소리상자, 촉감판 등), 탐색활동 자료(돋보기, 식물, 동물, 주변에서 찾아낸 여러 모양의 나무껍질, 조개껍질 같은 여러 가지 자연물), 조작활동 자료(큰 조각 퍼즐, 모양 찾아 맞추기, 크기 순으로 고리 끼우기, 색깔 맞추기 등)

유아

- 주변의 사물과 자연현상에 지속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기술을 활용하여 탐구적 태도를 기르는 시기이므로, 수·공간과 도형·규칙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과학영역의 활동자료는 계절, 생활주제, 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연물이나 실물을 제시함.

[수·조작활동 자료]

- 일대일 대응, 분류, 비교, 순서짓기, 부분과 전체, 측정, 공간과 도형, 규칙성 등의 개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생활주제와 연관된 수·조작 관련 자료
  - · 1~10까지 셀 수 있는 구체물(작은 동물 모형, 조개류, 솔방울 등), 크기가 점차 커지는 10개의 컵, 숫자카드, 수 세기 자석판, 빨래집게 수 세기판, 양팔저울, 큰 글자의 시계, 달력 등
  - · 보육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퍼즐(조각 끼우기, 그림 맞추기, 숫자 퍼즐, 색 퍼즐, 도형 퍼즐 등), 판 게임이나 게임자료(예 : 주사위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윷놀이, 칠교놀이) 등

[과학활동 자료]

- **기본 자료** : 거울, 자석, 돋보기, 프리즘 등의 도구, 바퀴와 부속품 등
- **생물 관련 자료** : 꽃, 야채, 나뭇잎, 열매, 씨앗, 나뭇가지, 꽃잎, 솔방울 등 자연에서 수집한 자연물과 식물 관련 자료, 거북이, 금붕어, 달팽이 등 기르는 동물과 먹이 등 동물 관련 자료
- **자연현상과 관련된 자료** : 자연현상 사진, 온도계, 습도계와 관찰 용지, 필기도구 등
- **도구와 기계류** : 간단한 도구와 기계, 기계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물건(나무토막, 상자) 등

역할 및 쌓기놀이 자료의 예

영아

- 영아가 상상놀이를 통해 자기 주변의 생활을 모방하는 놀이를 하고, 블록을 이용하여 길게 잇기, 단순히 쌓고 무너뜨리기, 끼우고 빼는 활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
-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은 색, 모양, 크기가 똑같은 것으로 2개 이상 준비함.

[역할놀이(상상놀이) 자료]
- **영아(만0-1세)** : 세탁이 용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크기와 촉감의 인형(가족인형, 소리나는 인형, 동물인형), 자동차류 등
- **영아(만2세)**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단순한 역할놀이용 자료(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 등의 소꿉놀잇감, 전화기, 인형 등)

[쌓기놀이 자료]
- **영아(만0-1세)** : 우레탄 블록이나 스펀지 블록, 종이벽돌 블록, 헝겊으로 감싸져 있는 블록 등
- **영아(만2세)** : 나무블록, 종이벽돌 블록, 우레탄 블록, 스펀지 블록, 재질이 부드럽고 구멍이 큰 끼우기형 블록 등

유아

- 유아가 역할놀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놀이로 표현해보고, 쌓기놀이를 통해 다양한 구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

[역할놀이 자료]
- **기본 가구류** : 유아 크기의 화장대, 식탁과 의자, 소품을 넣을 수 있는 장, 모형 씽크대 등
- **소꿉놀이류** : 질감이 다양한 인형류(아기 인형과 가족인형, 동물인형들), 유모차, 우유병과 각종 소꿉놀이 그릇류(냄비, 프라이팬, 밥솥, 접시세트, 커피잔 세트, 주전자 등), 모형 주방 기구들(뒤집개, 국자, 주걱, 숟가락, 포크, 플라스틱 또는 나무로 된 작은 도마와 칼, 작은 밀대 등), 모형 음식 등
- **각종 역할놀이 소품** : 옷입기 놀이를 위한 의상류(아빠 와이셔츠, 앞치마, 드레스류, 의사 가운 등 직업 의상, 남녀 한복 등), 다양한 신발류, 장신구 및 소품(악세사리, 빗, 선글라스, 모자, 구두, 가방, 스카프, 넥타이 등)
- 농장, 동물원, 음식점, 기차역, 인형집, 소방서 등 각종 모형

[쌓기놀이 자료]
- 종이벽돌 블록, 유니트(단위) 블록, 우레탄 블록, 속이 빈 공간블록, 스펀지 블록, 우유팩 블록 등 쌓기놀이형 블록과 자석 블록, 와플 블록, 띠 블록, 꽃 블록, 눈송이 블록 등
- 인형류(모형 동물, 사람인형, 로봇, 공룡 등), 탈것류(작은 자동차나 배 같은 운송수단 등), 기타 보육주제와 관련된 소품들(동물 가면, 교통 표지판, 신호등, 간판 표시물, 운전대, 경찰이나 오토바이용 모자, 소방관 모자, 모형 건물이나 집 등)

3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이 만0-1세의 경우 2개 이상, 만2세의 경우 4개 이상, 만3-5세의 경우 5개 이상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 각 반 보육실의 흥미영역에 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아래 제시된 기준 이상 비치되어 있음.
  - 만0-1세 2개 이상, 만2세 4개 이상, 만3-5세 5개 이상
    ※ 보육실 내 전체 흥미영역의 놀잇감을 대상으로 평정함.

활동자료의 구분

- 주제별 활동자료
  - 보육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자료
  - 교통기관이 생활주제인 경우, 운전대, 교통기관 퍼즐, 교통기관 관련 정보 그림책 등
- 기본 활동자료
  - 주제와 관계없이 보육실 흥미영역에 지속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활동자료
  - 쌓기놀이를 위한 나무블록, 종이벽돌 블록, 우레탄 블록, 예술활동을 위한 필기구류, 물감류, 점토류 등

2-1-5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연령별, 주제별 또는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1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창고나 자료실, 베란다 등)이 있다.

2 비품과 활동자료를 연령, 주제 또는 영역 등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창고나 자료실, 베란다 등)이 있다.

- 각 보육실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품과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장소(창고나 자료실, 베란다 등)에 보관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 창고나 자료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곳(예 : 교사실이나 원장실, 상담실 등)에 따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함.
- 별도의 장소가 없어서 복도나 유희실 등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선반을 만들어 보관하여 영유아의 이동이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은 별도의 장소가 없어도 실내에 자료장을 마련하여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정함.

2 비품과 활동자료를 연령, 주제 또는 영역 등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 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다.

- 비품과 활동자료를 연령, 주제 또는 영역 등 어린이집에서 정한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음.
  - 비품과 활동자료는 손쉽게 찾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명칭, 내용, 관련 영역이 표시되어 있음.

2-2 실외 공간 구성

실외 공간은 영유아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개방된 실외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뛰고 움직이면서 내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다양한 대·소근육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는 자연의 변화 등을 느끼고 환경을 탐색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친환경적인 사고와 탐구력을 기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대·소근육 활동이나 자연체험 등 다양한 실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집 자체 부지에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체놀이터인 옥내놀이터와 인근놀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는지, 구비된 놀이기구는 다양하며 발달에 적합한지, 다양한 실외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2-2. 실외 공간 구성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2-2-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관찰	□Y □N
2-2-2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관찰	□Y □N
2-2-3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적 합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2-2-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1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2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 또는 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 옥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2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 옥외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대체놀이터 이용이 가능함.
  ※ 인근놀이터의 사용승낙서 구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대체놀이터의 종류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 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초등학교 놀이터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않으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체(인근)놀이터로 인정하지 않음.

2-2-2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1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3종 이상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2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는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3종 이상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3종 이상 비치되어 있음.
  - ※ 조합놀이대의 경우, 기능에 따라 놀이기구의 종(개수)으로 인정함.
  - ※ 모래놀이터와 물놀이공간은 놀이기구 3종에서 제외함.

2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는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에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음.
  - — 영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 영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기능을 가진 놀이기구(고정식·이동식)가 마련되어 있음.

2-2-3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1 실외 공간에 두 가지 이상 다양한 활동 영역이 제공되고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실외 공간에 두 가지 이상 다양한 활동 영역이 제공되고 있다.

- 영유아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활동 영역이 구성되어 있음.
  - 대·소근육 발달을 위한 운동놀이 영역이 마련되어 있음.
  - 모래놀이터가 마련되어 있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도, 수로 및 수조 등 물놀이 놀잇감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영유아가 관찰하거나 탐색할 수 있도록 동물 관찰 영역 또는 자연체험 영역(텃밭, 나무, 꽃 등 자연물)이 마련되어 있음.
  - 실외 공간에서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작업 영역이 마련되어 있음.
  - 놀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놀이가 끝난 후 실외 놀잇감을 정리, 보관하는 영역이 마련되어 있음.

    ※ 대체(인근) 놀이터의 경우, 이동 가능한 자료(이젤, 책 등)을 이용한 활동 영역 구성도 인정함.

2-3 기관 운영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집단의 크기는 공간의 크기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세 가지 구조적 특성이다. 어린이집의 총 정원 내에서 모든 반의 구성이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과 집단 크기 측면에서 적합하게 유지되면, 교사는 영유아와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보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인 흥미나 요구에 원활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 특성에 맞게 구성된 반 내에서 교사 및 또래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재정 및 회계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물리적 자원의 계획적인 배분을 통해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영유아의 생활이 원활하게 전개되고 보육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총 정원 내에서 지역사회 및 가정의 요구, 어린이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 운영한다. 이때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반별 집단 크기 등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교사가 모든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영유아의 하루 일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예·결산서와 회계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고, 정부지원금을 별도 예산으로 수립하여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 반 편성 기준을 준수하는지, 영유아의 개별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신입원아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2-3. 기관 운영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2-3-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기록, 관찰	□Y □N
2-3-2	개별 영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기록	□Y □N
2-3-3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2-3-4	예·결산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기록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2-3-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1 모든 반이 반 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2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평가방법	기록,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모든 반이 반 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모든 반에서 연령별 교사 대 영유아 법정 비율을 지키고 있음.
-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경우,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고 있음.
  - ※ 반별 정원 탄력 편성, 농어촌 특례 등 보육사업안내에 준함(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은 불가능함).
  - ※ 반 구성 및 영유아 재원사항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장애영유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1:5	1:7	1:15	1:20	1:3

혼합반 운영 관련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3	1:5	-	-	1:15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함.

2 연령별 반 규모는 만0세의 경우 3배, 만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 여러 반의 영유아가 한 보육실에서 보육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의 수는 제시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 혼합연령반의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기준	3배	2배	2배	2배	2배
인원수	9명	10명	14명	30명	40명

※ 장애아전문의 경우,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장애영유아의 수가 최대 9명을 초과하지 않음.

2-3-2 개별 영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1 재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재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 모든 원아의 생활기록부가 구비되어 있음.
  - 생활기록부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음.
    - ※ 생활기록부 관련 서식은 보육사업안내 참조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생활기록부 전자 서식으로 대체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3-3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 신입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신입원아 적응 절차(실시기간,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마련되어 있음.
- 신입원아의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
  - 대상 : 신입원아(학기 초, 중간입소 모두 포함)
  - 기간 : 최소한 5일 이상(토·일 제외)
  - 방법 : 단계적으로 단축보육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응 과정을 진행함.

신입원아 적응 절차 관련 부모 안내

- 어린이집은 부모와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입원아의 적응 과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하여 안내함.
- 정규 등원 전에 부모와 신입원아가 어린이집을 사전방문 할 수 있음을 안내함.

원장, 교사

- 학기 초 또는 중간입소 원아에게 신입원아 적응 과정을 운영하는가?
- 신입원아를 위한 적응 과정은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가?
- 신입원아가 어린이집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배려하는가?

신입원아 적응 과정 운영 시 고려사항

- 부모의 여건상 단축보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유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긴밀하게 교환하며, 부모와 함께 노력함.
- 신입원아의 적응을 돕는 과정은 영유아의 연령, 개인적인 기질, 이전의 어린이집 경험, 부모의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함. 부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신입원아의 식습관, 잠자는 습관이나 시간 등의 생활리듬, 성격,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잇감, 특별한 질병이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함.
- 각 가정의 상황과 영유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적응 절차를 진행함.
- 신입원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재원아도 함께 배려하는 노력을 해야 함.

2 신입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 신입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
  - 대상 : 학기 초 신입원아 부모, 중간입소 원아 부모
  - 방법 : 집단 또는 개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원장, 교사

- 학기 초 또는 중간입소한 신입원아 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가?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원장이나 교사가 설명하는 시간 이외에 부모들의 문의사항이나 건의에 대한 질의 응답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가?

2-3-4 예·결산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1 정보공시 또는 홈페이지 탑재, 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방법으로 예·결산서가 공개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정보공시 또는 홈페이지 탑재, 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방법으로 예·결산서가 공개되고 있다.

- 어린이집의 예·결산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음.
  - 어린이집 정보공시, 어린이집 홈페이지 탑재, 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함.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영유아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들의 활동과 참여를 보다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부모는 어린이집의 경험을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가 가정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할 때 영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특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된 양육 및 교육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정에 제공하는 등 영유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간의 유기적 관계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본 지표는 5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어린이집 개방 안내, 다양한 부모교육 실시, 개별면담과 가정과의 의사소통, 영유아와 가족 문제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평가한다.

지표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2-4-1	부모와 상호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기록, (면담)	□Y □N
2-4-2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기록	□Y □N
2-4-3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록	□Y □N
2-4-4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면담	□Y □N
2-4-5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록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4개 이상
적 합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개선필요	5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이하

2-4-1 부모와 상호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1 부모에게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자료가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부모에게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자료가 있다.

- 부모에게 보육실 참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자료(예 : 참관 안내문, 운영방침을 안내한 문서)가 있음.

원장, 교사

- (원장) 영유아의 부모가 희망할 경우 자녀의 보육실을 참관할 수 있는가?
- (원장) 보육실 참관을 원하는 부모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원장) 보육실 참관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에 부모에게 공지하거나 안내하고 있는가?
- (교사) 부모의 보육실 참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면담으로 확인

2-4-2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1 연간 부모교육계획(보육계획과 연계성 있게 수립) 자료가 있다.

2 부모교육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 중 세 가지 이상을 실행하고 있다.

- 지면, 온라인 매체, 개별면담, 집단모임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연간 부모교육계획 자료가 있다.

- 부모교육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부모교육 계획은 보육계획과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 있음.

보육계획과 연계된 부모교육의 예

- 학기 초 신입원아 적응 과정 진행 시, 가정에서 영유아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적응 프로그램 관련 부모교육
- 여름 관련 주제 진행 시, 여름철 위생 및 질병 관련 부모교육

2 부모교육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 중 세 가지 이상을 실행하고 있다.

- 부모교육을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 기록이 있음.
  - 지면(예 : 가정통신문, 양육정보지, 양육안내 편지, 리플릿, 소책자 등)
  - 온라인 매체(예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 개별면담(예 : 영유아의 적응이나 문제행동 관련 면담 등)
  - 집단모임(예 : 소모임, 부모 강연회, 워크숍 등)

2-4-3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1 모든 영유아(90% 이상)의 부모와 연 2회(학기 당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2 영유아별로 부모와 면담한 주요 내용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3 부모와의 소통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 중 세 가지 이상을 실행하고 있다.
- 지면, 전화 및 온라인 매체, 수시면담, 집단모임, 부모만족도조사
  ※ 부모만족도조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4 부모와의 소통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4개의 평가기준(1~4)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연 2회 이상(학기 당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와의 개별면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부모 개별면담 시 고려사항

- 부모와의 개별면담은 연 2회 이상 면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면담의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음.
- 교사는 개별영유아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적 변화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부모와 면담함.
-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부모와 면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능한 많은 부모들이 개별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영유아별로 부모와 면담한 주요 내용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 모든 영유아에 대한 부모 개별면담 내용이 기록, 관리되고 있음.

3 부모와의 소통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 중 세 가지 이상을 실행하고 있다.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가정과의 의사소통 방법이 부모만족도조사를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임.
  - 지면(예 : 가정통신문, 알림장, 소책자, 게시판 등)
  - 전화 및 온라인 매체(예 : 문자메시지, SNS, 스마트알림장,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 수시면담(예 : 영유아의 특성이나 가정의 배경을 고려한 비정기적인 의사소통 등)
  - 집단모임(예 : 소모임, 부모 강연회, 행사 등)
  - 부모만족도조사
    - ※ 재원 중인 부모에게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의 서비스 전반 및 운영에 대한 부모만족도조사 실시(특정 행사나 프로그램을 주제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인정하지 않음)
    -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4 부모와의 소통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

- 어린이집과 가정 간 의사소통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기록(예 : 대화수첩, 소감이나 평가, 일일보고서 등)이 있음.

가정과의 의사소통 내용의 예

	영아	유아
내용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수유, 이유, 배변, 수면 상황과 영아의 전반적 기분과 건강상태, 참여한 놀이, 특이상황 등	**(어린이집 → 가정)** 참여한 보육활동이나 또래관계 등 어린이집 전반적인 생활 **(가정 → 어린이집)** 주말에 지낸 경험이나 특별한 상황 등

부모만족도조사의 예

- 부모만족도조사 설문 문항은 어린이집의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어린이집 부모만족도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질 개선, 부모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어린이집 부모만족도조사 설문 문항

범주	문항
어린이집 환경	1.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2. 어린이집에는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놀잇감(동화책, 교구 등)이 있다
건강 · 안전	3.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에 만족한다
	4.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적절한 조치(부모연락 및 응급처치 등)를 취한다
	5. 어린이집에서의 등·하원(차량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보육 과정	6.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및 행사계획을 잘 안내받고 있다
	7.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8.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상호 작용	9.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따뜻하게 대한다
	10. 우리 아이는 담임교사를 좋아하고 따른다
	11.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는 갈등문제가 없다
운영의 개방성 및 가정 연계	12. 어린이집은 부모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필요 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13.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생활 및 발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준다
	14.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15.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나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

* 출처 : 2015 어린이집 부모만족도조사 시범사업(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4-4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1 영유아의 문제나 영유아 가족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가방법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영유아의 문제나 영유아 가족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적응 문제나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영유아 관찰, 부모 개별면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원장, 교사

- 현재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 영유아나 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영유아나 가족 문제가 있어서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동사무소, 구청 또는 전문가(예 : 의사,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영유아나 가족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정보를 알고 있는가?

2-4-5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 유아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다.

2 지역사회 주민과 연계하는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 또는 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유아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다.

- 유아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 영아(만1-2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의 예

- 지역사회에 있는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 지역의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우체국, 초등학교, 노인센터, 마트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 지역에 있는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안전·건강에 대해 교육하는 활동 등

2 지역사회 주민과 연계하는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다.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기여활동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지역사회 주민과 연계하는 활동의 예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기여 활동의 예**
  - 어린이집 인근 노인정·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미니 공연
  - 아나바다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활동
  - 유아들이 만든 활동 결과물을 이용하여 거리에서 아동안전에 대한 미니 캠페인 실시 등

- **지역사회 주민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의 예**
  -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예절 교육, 동화책 읽어주기 등을 지원
  - 노인정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텃밭 가꾸기 지원 등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부모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즉,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부모 및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보다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재원하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희망 등·하원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일과시간 내 맞춤반 및 종일반 영유아 모두가 다양한 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종일반의 경우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보육활동을 경험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인해 일과 운영에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나 어린이집에서는 재원하고 있는 전체 영유아에 대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2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하며,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및 부모 안내, 종일반 및 맞춤반 운영 등을 평가한다.

지표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2-5-1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기록	□Y □N
2-5-2	종일반 및 맞춤반을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관찰, 기록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적 합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개선필요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0개

2-5-1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1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한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음.
  ※ 귀가동의서 등에 기재된 등·하원시간은 수요조사서로 인정되지 않음.
-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부모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
  — 만0-2세 맞춤반의 경우, 부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맞춤반 이용시간을 확정함.
  — 만0-2세 종일반 및 만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수요조사 결과가 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한다.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한 기록이 있음.
  — 부모에게 안내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는 시간대별 교사 배치 및 보육프로그램, 하원시간, 차량운행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만0-2세 맞춤반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절차와 방법을 안내함.
  — 만0-2세 종일반 및 만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을 안내함.

어린이집 운영계획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개요)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종일반·맞춤반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하여야 함.
- (절차)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어린이집 이용신청서는 보관)
  ※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나, 희망 등·하원시간 변경 희망 또는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어린이집 이용신청서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서로 대체 가능
- (내용) ① 시간대별 교사배치, ②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종일반, 유아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맞춤반의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맞춤반 이용시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안내)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종일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서 서식의 예

* 출처 : 보건복지부(2017).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수정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2017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를 읽어 보시고 기록하셔서 어린이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종일반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맞춤반은 부모님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반 명	원아 이름		부모 확인
(만 세반)			(서명)
보육료 자격	종일반 □	맞춤반 □	유아반 □
희망 보육시간대	등원시간		하원시간
	※ 종일반과 유아반은 07:30~19:30 내에서, 맞춤반은 08:00-16:00 내에서 희망하는 보육시간을 적어주세요.(맞춤반은 최대 6시간)		
등·하원방법	개별 등·하원 □	어린이집 차량 이용 □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인)
2017년 월 일

○ ○ ○ 어린이집

2-5-2 종일반 및 맞춤반을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 맞춤반 이용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종일반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급·간식을 제공한다.

2 17시 이후 남아 있는 종일반 영유아(만0-2세, 만3-5세)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종일반 영유아(만0-2세, 만3-5세)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평가방법	관찰, 기록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맞춤반 이용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종일반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급·간식을 제공한다.

- 맞춤반 이용 시간 동안 종일반과 동일하게 일과를 계획, 운영함.
  - 맞춤반 보육시간 내에 오전 자유놀이와 바깥놀이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운영함.
  - 맞춤반 보육시간 내에 간식, 점심식사와 낮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운영함.

2 17시 이후 남아 있는 종일반 영유아(만0-2세, 만3-5세)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17시 이후 남아있는 종일반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별도 프로그램(예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선택활동 등)을 운영함.

3 종일반 영유아(만0-2세, 만3-5세)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 종일반 영유아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충분한 시간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 종일반 영유아 중 실제 하원시간이 18시 이후인 영유아가 70% 이상임.
    - ※ 수요조사서에 기재된 하원시간이 18시 이후인 종일반 영유아에 한해 평정함.
    - ※ 수요조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 관련 평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정함.
    - ※ 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조기 귀가 시, 이를 감안하여 평정함.

3 건강 · 안전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동안 누려야 할 튼튼한 신체발달의 초석이 되므로 영유아가 건강한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는 면역력이 약해 질병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의 청결을 유지하고 영유아가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풍부한 식재료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청결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외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은 영유아로 하여금 보육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안정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예방과 훈련을 통한 대처능력을 키움으로써 영유아를 주의 깊게 보호하고, 어린이집의 일과에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강 · 안전' 영역은 총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보육실과 놀잇감, 실내외 공간 등이 청결하고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비상사태를 위한 대피시설 및 설비는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다음으로, 급 · 간식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식자재의 구입과 보관, 조리공간의 위생, 조리 및 배식과정의 청결에 대해 살펴보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 · 간식의 내용과 양이 이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지 평가한다.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예방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등원부터 하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차량 이용 시에는 안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대처방안의 마련 여부 등을 평가한다.

영역 3. 건강 · 안전

평가지표	
3 - 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 2	급 · 간식
3 - 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 4	등 · 하원의 안전
3 - 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영역 평정기준

우 수	5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4개 이상
적 합	5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3개 이하
개선필요	5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어린이집은 D등급(불인증)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어린이집의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여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조성되는 것은 영유아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청결한 어린이집 환경은 영유아의 질병 감염을 막아주고 신체 건강을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영유아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지냄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안전한 환경은 영유아로 하여금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욕구와 호기심에 따라 마음껏 탐색하고 궁금한 문제를 탐구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준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 공간을 늘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성인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영유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놀잇감과 실내외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구비하고 상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수리 보완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사고의 위험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실내외 공간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되는지, 실내외 공간과 놀잇감, 위험한 물건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평가항목		결과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Y □N
3-1-2	실내외 공간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하고 있다.	□Y □N
3-1-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 · 관리하고 있다.	□Y □N
3-1-4	안전시설 및 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 3-1-1 ~ 3-1-3 평가항목은 하위 평가요소의 'Y' 개수 충족여부로 평정

3-1-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간과 이에 설치된 시설·설비 및 가구, 영유아를 위한 놀잇감과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일과 중에 자주 환기를 하고 온·습도와 채광, 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의 관리를 통해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1-1-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찰	□Y □N
3-1-1-②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찰, 면담	□Y □N
3-1-1-③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찰	□Y □N
3-1-1-④	환기를 자주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관찰, 기록	□Y □N
3-1-1-⑤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관찰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5개 평가요소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1-1-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보육실 및 실내 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이 청결함.
  - 바닥과 벽, 천장, 기둥, 출입문과 창문 등이 청결함.
  - 가구, 활동자료장, 책상과 의자, 사물함 및 뒤편 구석진 곳 등에 먼지뭉치 등 없이 청결함.
  - 바닥에 깔려있는 공동매트, 쿠션 등이 찌든 때 없이 청결함.
  -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이 청결함.
  - 청소에 사용되는 청소도구와 보관함, 휴지통 등이 청결함.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서 해충(바퀴벌레 등)이 발견되지 않음.
- 실외 공간과 시설, 설비가 전반적으로 청결함.
  - 실외놀이터(옥상 및 옥외놀이터 포함)의 공간이 청결함.
  - 실외 고정식 놀이기구는 녹이 슬지 않고 청결함.
  - 놀이터 외 실외 공간(화단, 어린이집 출입구 등)이 청결함.
  - 별도의 실외 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 입구(예 : 아파트의 현관문 밖, 상가의 어린이집 입구, 주택의 마당 등)가 청결함.
- 모든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함.
  - 화장실과 세면장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이 건조하게 유지됨.
  - 변기 사용 후 매번 신속하게 오물(대 · 소변)을 처리하며, 변기가 청결하게 유지됨.
  - 휴지통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하여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영아

-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기저귀 가는 공간은 이동식(일시적)도 가능하며, 다른 반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저귀는 반드시 지정된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에서 갈아줌.

- 기저귀 가는 공간이 전반적으로 청결함.
  - 기저귀 갈이대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여러 영아를 연속하여 기저귀 갈이 시에도 개별 영아의 기저귀 갈이가 이루어지기 전, 후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기저귀 갈이대 위에 별도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저귀를 갈 때마다 깔개를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함.
  - 이동식 변기는 사용 후 빠른 시간 내(1시간 이내) 처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

3-1-1-②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보육실 및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함.
  - 놀잇감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찌든 때가 묻어있지 않고 청결함.
  - 특히,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여 매일 세척함.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신체놀이기구(예 : 이동식 놀이기구)에 찌든 때가 없고 녹이 슬지 않는 등 청결함.
- 보육실 및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을 넣어두는 보관함이나 바구니가 청결함.

교사

- 영아들이 사용하는 놀잇감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세척하는가?

놀잇감 세척 방법

- 원목 놀잇감, 나무 블록은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서 건조시킴.
- 헝겊 놀잇감은 자주 먼지를 털어내고 주기적으로 세탁함.
- 플라스틱 놀잇감은 따뜻한 비눗물에 담가 세척한 후 헹구어 말림.
- 고무 놀잇감은 영유아용 세제 등을 이용해 스펀지로 닦고 말림.

3-1-1-③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모든 영유아가 개별 침구(개별 이불, 개별 요, 개별 베개)를 사용함.
  - 영유아별로 각기 다른 모양의 침구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모양과 색깔일 경우에는 개별 구분의 표시가 있음.
  - 여분의 침구는 사용한 후에 즉시 세탁하여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함.
  - 놀이매트 등을 별도의 깔개 없이 침구로 사용하지 않음.
- 모든 개별 침구와 여분의 침구가 청결함.
- 침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함.

궁금해요

Q. 쌍둥이 형제는 하나의 침구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A.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유아는 개별 침구(이불, 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쌍둥이라 하더라도 침구는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침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등 개별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3-1-1-④ 환기를 자주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의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킴.
  - 특히, 보육실 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등원 전, 놀이 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시간 후 등 일과 중 수시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킴.
  - 겨울철에도 수시로 환기를 시킴.
  -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는 경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환기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이 있음.
  -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가 '양호'에 해당함.
    ※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인 경우, 관찰 결과로 평정함.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0호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10. 5월 배포)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3-1-1-⑤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예 : 복도, 유희실, 실내놀이터 등)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하여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음.
  - 필요 시 창문 개폐, 냉방기 또는 난방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있음.

실내 온도 및 습도 관련 기준 * 출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실내 온도는 18℃ 이상 28℃ 이하임.
  - 난방온도 18℃ ~ 20℃ / 냉방온도 26℃ ~ 28℃
- 비교 습도는 30% 이상 80% 이하임.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함.
  -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한지)를 부착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등 햇빛을 가리지 않음.
  - 가구, 가전제품, 적재물 등으로 햇빛을 가리지 않음.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며, 제대로 작동함.
  - 전등의 수가 부족하거나 조명의 조도가 낮아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가 유지됨.
  - 전등을 교체해야 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 적절한 밝기가 유지됨.

궁금해요

Q. 어린이집의 자연채광을 평정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A. 보육실 등 실내 공간은 영유아의 건강과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자연채광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창문의 2/3 이상이 불투명 썬팅지로 부착되어 있거나, 가구나 적재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자연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합니다. 또한 커텐이나 블라인드로 하루 종일 햇빛을 가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정합니다.

3-1-2 실내외 공간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간과 이에 설치된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전선, 세면대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온수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은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요인이 없도록 관리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1-2-①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관찰	□Y □N
3-1-2-②	전기설비 및 전선줄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관찰	□Y □N
3-1-2-③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관찰	□Y □N
3-1-2-④	세면대, 정수기 등에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관찰	□Y □N
3-1-2-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는다.	관찰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 5개 평가요소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1-2-①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음.
- 모든 출입문(예 : 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모든 출입문 문턱은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마감되어 있음.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실내 공간의 모든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특히 창문 아래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경우 등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함.
    ※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장, 바닥, 벽면 등에 균열이 없으며, 날카로운 못 등이 돌출되어 있지 않음.
-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설치되어 있음.
- 계단이나 화장실, 세면장 등의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3-1-2-② 전기설비 및 전선줄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기콘센트(이동식 콘센트 포함)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덮개로 덮여져 있음.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실내외 공간의 전선줄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음.
  - 전선줄 등이 영유아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경우, 영유아가 잡아당기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 컴퓨터 주변과 같이 전선줄이 다수 필요한 영역의 경우, 전선줄이 정리되어 관리되고 있음.
  - 선풍기 등을 벽면에 설치한 경우, 전선이 벽면에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음.

3-1-2-③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고정식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벽면에 설치된 게시판, 선반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음.
  - 에어컨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블라인드는 줄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음.
  - 온열기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돌출형 라디에이터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계절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음.
  - 화기시설, 가스밸브 등에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되어있음.
  - 세면대의 수도꼭지 등에 파손된 곳이 없고 표면은 거칠지 않고 매끄러움.
  - 샤워기 줄은 영유아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음.
  - 유희실이나 실내놀이터의 고정식 놀이기구(예 : 고정식 미끄럼틀, 볼풀장 등)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음.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의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책상, 의자, 활동자료장 등의 가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거나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
  -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등)은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음.
  - 흥미영역 등에 깔개가 있는 경우, 바닥이 평평하며 찢어진 곳이 없음.
- 실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 옥외놀이터의 바닥면은 평평하며, 웅덩이, 요철 등이 없음.
  - 옥외놀이터에 설치된 고정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곳이 없고 안전함.
  - 어린이집 건물의 외부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음.
  -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목재더미, 파손된 가구 등)이 없거나, 있을 경우 영유아 활동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

3-1-2-④ 세면대, 정수기 등에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보육실 및 실내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 정수기에서 뜨거운 온수가 나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도록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음.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조치 방법의 예

- 온수의 양 조절, 온도 조절, 잠금장치 설정 등

3-1-2-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는다.

- 교사실, 원장실 등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덤웨이터(요리 및 식기 운반용 소형 승강기)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어린이집 구조상 부엌 등의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3-1-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은 파손된 부분이나 위험요인이 없어 영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는 호기심이 강하여 위험한 물건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탐색해 보거나 놀이대상으로 삼기 쉬우므로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에 구비해야 할 물건 중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1-3-①	보육실 내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관찰	□Y □N
3-1-3-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관찰	□Y □N
3-1-3-③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관찰	□Y □N
3-1-3-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관찰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4개 평가요소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1-3-① 보육실 내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 보육실 내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으며, 파손된 부분이 없음.
- 보육실의 놀잇감 중에는 깨지거나 베일 수 있는 재질로 된 물건(예 : 끝이 깨진 사기그릇, 안전 처리되지 않은 깡통 등)이 없으며, 특히 조개껍데기 등의 실물자료를 제시한 경우 깨지거나 날카롭지 않음.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 있지 않음.

3-1-3-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으며, 파손된 부분이 없음.
-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중 깨지거나 베일 수 있는 재질로 된 물건이 없음.
-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 있지 않음.
-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평균대, 뜀틀, 자전거, 탈것 등의 이동식 놀이기구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임.

3-1-3-③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 보육실 내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음.
-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는 위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영아(만0-1세, 만2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가 없음.

위험한 물건의 예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스테이플러, 칼날이 드러나 있는 테이프 커터기 등 작업 시 자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살충제, 방향제, 어항수질 개선제, 각종 스프레이, 침핀, 건전지, 놀잇감으로 제시된 화장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립스틱, 매니큐어 등) 등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세척용 소독 스프레이 등
- 비상약품함, 영유아가 투약을 위해 가져온 약 등
- 만지면 다칠 수 있는 가시가 있는 식물(예 : 선인장, 밤송이 등)
- 삽, 호미 등 영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 영아(만0-1세, 만2세)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이나 활동자료
  -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예 : 블록이나 구슬, 솜공 등)
  - 직접 활동자료로 제공되거나, 영아가 쉽게 열 수 있는 통 안에 들어 있는 크기가 작은 자연물(예 : 콩, 팥, 은행, 도토리 등)

3-1-3-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 실내외 공간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음.
- 위험한 물건을 영유아 손이 닿는 위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3-1-4	안전시설 및 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비상구, 비상대피로 등)은 비상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설비(피난구 유도등, 소화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는 비상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은 비상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되고 있음.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임.
- 비상구나 비상계단에는 적재물 등이 없어 비상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음.
- 비상대피로에 위험한 물건이 없음.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설비는 비상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함.
-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가스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음.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

- 각종 대비시설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름(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 소화설비 : 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등
  - 피난설비 :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피난구 유도등 등
    ※ 위의 내용 중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임.
    ※ 옥상놀이터에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2 급 · 간식

영유아기는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어린이집에서는 양질의 급·간식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발달에 절대적인 요소로, 영유아는 청결하게 조리된 질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여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이루고, 면역력을 키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의 급·간식 시간을 즐겁게 경험함으로써 하루의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얻으며, 쾌적한 신체여건을 유지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일과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립된 식단을 토대로 영유아의 기호에 맞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식자재의 구입, 보관, 조리 및 배식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영양 균형을 맞춘 안전한 급·간식이 제공되는지,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 공간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조리 및 배식과정이 위생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지표 3-2. 급 · 간식

평가항목		결과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Y □N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Y □N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적 합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 각 평가항목은 하위 평가요소의 'Y' 개수 충족여부로 평정

3-2-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 ·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령 특성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식단에 따라 자연식품 위주의 급 ·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게 적절한 형태(크기, 맛, 조리형태 등)로 조리된 급 · 간식을 충분한 양으로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급 ·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2-1-①	영유아의 연령 및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고, 식단에 따른 급·간식을 제공한다.	기록, 관찰	□Y □N
3-2-1-②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 · 간식을 제공한다.	기록	□Y □N
3-2-1-③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 · 간식(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한다.	관찰	□Y □N
3-2-1-④	충분한 양의 급 · 간식을 제공한다.	관찰	□Y □N
3-2-1-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기록, 면담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5개 평가요소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2-1-① 영유아의 연령 및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고, 식단에 따른 급 · 간식을 제공한다.

-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 · 간식 식단표(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포함)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급 · 간식 식단표는 5대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전문 영양사(임용된 영양사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등)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음.
  - 토요일 운영 시 급 · 간식 식단표에 토요일 식단이 포함되어 있음.
-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월령,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영아용 식단표(급식)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영아의 월령별로 초기(4-5개월), 중기(6-8개월), 후기(9-11개월), 완료기(12-15개월)로 구분하여 수립 가능함.
- 실제 제공된 급 · 간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계획된 식단과 일치함.

- 사전에 수립된 식단과 실제 제공된 급 · 간식의 내용이 일치함.

궁금해요

Q.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때에도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 · 간식 식단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요구를 고려한 급·간식 식단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영유아가 불규칙하게 등원하더라도 사전에 토요일 급·간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예 : 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자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 제공하면 인정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식자재 수급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1개월 중 5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 N 평정됩니다.

3-2-1-②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 급·간식 식단표 및 제공 기록에 급·간식의 내용이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위주로 되어 있음.
  - 조리 절차가 간단하고 식품 첨가물(예 :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예 : 라면, 자장면 등)이나 냉동식품, 탄산음료, 과자류가 50% 이상 포함되지 않음.

3-2-1-③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한다.

- 급·간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은 조각이 크지 않아 쉽게 먹을 수 있음.
- 급·간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은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맵고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자극적이지 않음.
- 영아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이유식의 조리 형태가 유동식, 반고형식, 고형식 등으로 달라짐.
  - 영아에게 제공되는 이유식(고형식)은 영아가 쉽게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음식 조각이 작게 조리됨.

3-2-1-④ 충분한 양의 급 · 간식을 제공한다.

- 영유아의 연령, 개별 특성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 · 간식을 제공함.
- 배식할 음식은 여분이 있어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는 추가로 배식함.

영유아 적정 배식량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영유아에게 충분한 적정 배식량은 「영유아 단체급식 식품·음식별 1회 제공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되, 일일 총 급·간식 횟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3-2-1-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 어린이집 차원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한 자료(오리엔테이션 자료, 운영방침, 가정통신문 등)가 있음.
- 보호자에게 안내한 자료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①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예 :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예 등)
  ② 실질적인 대처방법(예 : 대체음식 제공 등)
-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기록이 있음.
-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급 · 간식의 조리나 배식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알림장 등).

원장, 교사

- 어린이집의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지침의 내용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였는가?
- 재원 중인 영유아 중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가? 어떠한 종류인가?
- 해당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궁금해요

Q.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입학원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A. 식품 알레르기는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발생률이 높고, 식품 알레르기의 급성 반응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갖추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어린이집의 지침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 관련 내용(예 :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식품의 예 등) 및 해당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법(예 : 대체음식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마련한 지침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예 : 부모동의 및 조사서, 입학원서 등)하여, 해당 영유아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 마련 시, 아래의 참고문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식품 알레르기 교육 및 급식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0)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급·간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자재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유통기한 내 사용하며, 식자재 보관 요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실은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는 곳이므로 공간과 시설·설비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2-2-①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관찰	□Y □N
3-2-2-②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가 없다. 필수	관찰	□Y □N
3-2-2-③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필수	관찰	□Y □N
3-2-2-④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찰	□Y □N
3-2-2-⑤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찰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5개 평가요소 중 4개 이상(요소 2, 3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2-2-①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 구입한 식자재는 외관, 색상, 냄새 등을 확인했을 때 변질되지 않은 상태임.

식자재별 변질 여부 파악방법 * 출처 : 주요식재료검수도감(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 식자재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변질 여부 파악방법
  - 예 : 감자
    ① 껍질이 말라 벗겨져 있거나 상처(긁힘)가 있는 제품은 피함(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 곰팡이 등이 쉽게 오염됨).
    ② 싹이난 것, 햇빛에 의해 녹변된 것이 없어야 함.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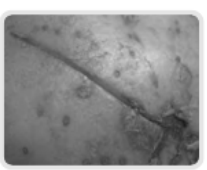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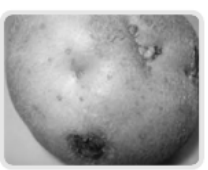
(X)

※ 식자재별 변질 여부는 「주요식재료검수도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진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음.

3-2-2-②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가 없다. 필수

- 어린이집 내의 식자재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전혀 없음.
  — 평정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음식(수입식품 포함)
    ※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 커피는 제외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직접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A.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본 평가요소에서는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간 경과 여부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예 :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은 유통기한 평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Q.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유치원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조리실도 평정대상에 포함되나요?

A.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이때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등)가 평정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실 공간 및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평정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가정어린이집에서 개인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자재는 평정대상에 포함됩니다.

3-2-2-③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필수

- 모든 식자재는 구입 후 육안으로 검수를 거쳐 밀봉한 상태로 보관함.
- 모든 식자재는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함.
- 식자재 보관 장소(창고, 싱크대, 베란다 등)는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함.
- 식자재 보관 장소가 청결함.
  - 식자재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을 경우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음.

바람직한 식자재 보관방법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식자재는 바닥에서 15cm 이상 띄워서 보관함.
- 일반채소는 건냉한 장소에 보관함.
- 전처리된 채소는 10℃ 이하에서 보관함.
- 냉장식품은 10℃ 이하에서 보관함.
- 신선편의식품(각종 샐러드, 절단 파인애플 등)은 5℃ 이하에서 보관함.
- 생선 및 육류는 5℃ 이하에서 보관함.
-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함.

3-2-2-④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조리실 바닥은 깨끗하고, 조리와 청소가 끝난 뒤에는 건조하게 유지됨.
- 조리실 바닥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조리실 벽과 천장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고 청결함.
- 조리실을 자주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
- 조리실의 창문 및 외부로 직접 연결된 모든 문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으며 파손 없이 청결함.

3-2-2-⑤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조리실 내 개수대와 조리대는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개수대의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함.
- 식기수납장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쓰레기통(음식물 등)과 그 주변이 청결함.
- 조리실의 가스레인지와 주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후드는 벽의 환기구에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외관은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환풍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외관 및 주변이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함.
- 조리실의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등 주방가전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하며, 심한 냄새가 나지 않음.
- 조리실의 오븐과 전자레인지, 전기밥솥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음.
- 조리실의 기타 소형 가전제품들(믹서기 등)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하며, 사용 후 정리 정돈되어 보관됨.

3-2-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간식의 조리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리된 음식은 청결한 식기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절차로 배식하여야 한다. 조리된 모든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원할 때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곳에 마실 물을 준비해 두어야 하고, 모유나 우유를 관리하는 과정도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2-3-①	조리 시 앞치마, 머릿수건,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위생화를 착용한다.	관찰	□Y □N
3-2-3-②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관찰	□Y □N
3-2-3-③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관찰	□Y □N
3-2-3-④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다. 필수	관찰, 면담	□Y □N
3-2-3-⑤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관찰	□Y □N
3-2-3-⑥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관찰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 6개 평가요소 중 5개 이상(요소 4, 6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2-3-① 조리 시 앞치마, 머릿수건,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위생화를 착용한다.

- 조리를 하는 교직원(예 : 조리사, 조리원, 조리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음.
  - 전용 앞치마(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덧신)이나 위생화를 착용함.
  -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은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함.
    ※ 단, 실내 공간과 조리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3-2-3-②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음.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고,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이루어짐.
- 모든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게 이루어짐.
- 조리 중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취급하지 않음.
- 조리 중 맛보기 할 경우 맛보기 숟가락을 별도로 사용함.

조리 시 주의사항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앞치마, 머릿수건,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한다.
- 식재료 준비 작업은 바닥에서 하지 않으며, 작업 시 맨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생장갑을 사용한다(맨손 조리 허용 작업 : 채썰기, 찢기, 껍질 벗기기, 과일 전처리).
-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귀걸이, 반지, 시계, 팔찌 등을 착용하거나, 매니큐어 등을 바르고 조리하지 않으며 조리 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의 상처 등).
- 식재료 준비 작업 후 싱크대를 세척, 소독한 후 조리작업을 실시한다.
- 조리된 음식의 맛을 볼 때에는 별도의 맛보기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
-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식중독균을 완전 사멸시키거나 안전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열온도로 조리해야 한다.
- 육류, 가금류, 어패류 등을 가열처리할 때 중심부가 완전히 가열되었는지 확인하고 음식을 수시로 저어 음식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3-2-3-③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식기류와 조리도구, 행주 등 조리실 비품은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 식기류는 충분히 건조하여 보관함.
- 도마와 칼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 식수대에는 청결한 컵을 여러 개 비치하고,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영유아가 물을 마실 때 매번 청결한 상태의 새로운 컵을 사용함.
- 영유아별로 개별 컵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 교사는 수시로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 관리함.
- 영유아용 물컵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함.
- 영아를 위한 수유용 젖병과 젖꼭지는 1회 사용한 후 소독하여 관리함.

조리실 비품의 위생적 관리 방법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세균 번식이 쉬운 도마는 용도별(육류, 어패류, 채소, 조리 완제품)로 서로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하나의 식칼로 생선, 육류, 채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다루게 되면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재료를 육류, 어패류, 채소, 조리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칼을 사용하고, 사용 후 위생적으로 소독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 행주는 용도에 따라 조리용, 기구용, 청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에는 매일 살균처리하여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펀지, 양면 수세미는 세균이 손이나 조리기구 등에 부착하여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척, 살균하여 건조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식기세척용, 조리기구 세척용, 오염된 물받이 등 기타 세척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3-2-3-④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다. 필수

-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함.
  - 1회 조리된 음식을 배식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함.

교사, 조리원

- 당일 급·간식의 배식을 완료한 후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전날 조리된 음식이 재배식된 경우가 있는가?

3-2-3-⑤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교사는 급 · 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음.
-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도구(집게 등)를 사용함.
  - 맨손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하나의 식기도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
-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함.
  - 공동접시를 사용하여 하나의 음식을 여러 명이 놓고 함께 먹지 않음.

3-2-3-⑥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 영유아들이 원할 때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컵이 비치되어 있음.
- 마실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함.
  -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 꼭지와 필터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짐.
-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함.
- 영아를 위한 모유나 우유는 반드시 냉장보관하며, 먹다 남은 모유나 우유는 즉시 폐기함.
- 영아를 위한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함.

정수기 관리 방법 * 출처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의 꼭지와 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정수기 꼭지가 외부에 노출되어 오염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정수기 꼭지를 소독함.
  - 업체 등을 통해 필터를 관리하되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록부를 비치하여 필터 교환 시기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영유아는 위생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영유아는 발달 수준에 적합한 건강·영양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관하여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교직원 역시 건강 관련 교육 및 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쾌적한 여건에서 영유아 보육에 임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손 씻기와 양치질 등의 위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를 사려 깊게 파악하여 심신을 돌보아주고 투약 등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감염병 관리수칙을 정해 이를 따름으로써 영유아들이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상시적으로 건강 및 영양교육을 받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영유아와 자신의 건강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영유아와 교직원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실천하는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표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결과
3-3-1	손 닦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Y □N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Y □N
3-3-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적 합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 3-3-2 ~ 3-3-3 평가항목은 하위 평가요소의 'Y' 개수 충족여부로 평정

3-3-1 손 닦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1 영유아와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영유아는 점심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으며 칫솔과 양치컵을 사용 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3 영유아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한다.

평가방법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영유아와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는다.

- 교사는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음.
  - 손 씻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연속 사용 후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음.

교사가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 영유아에게 음식을 먹이기 전(점심식사, 오전·오후간식 전)
- 음식을 다루거나 먹고 마실 때
- 실외활동 후
- 변기 사용 후,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유아의 변기 사용을 도와준 후
- 기타
  - 투약(특히 안약)을 하기 전
  - 상처를 소독하거나 밴드를 붙이기 전
  - 애완동물을 만진 후
  - 쓰레기통을 만지거나 사용한 후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 손이 더러운 경우 등

-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음.
  — 교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영유아가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지원함.

영유아가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 음식을 먹기 전(점심식사, 오전·오후간식 전)
- 실외활동 후
- 대소변 이후
- 기타
  - 손이 더러운 경우
  - 애완동물을 만진 후
  -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등

2 영유아는 점심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으며 칫솔과 양치컵을 사용 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모든 영유아는 점심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음.
  — 교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영유아가 깨끗하게 이를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함.

영아의 연령별 이닦기 방법

- 영아(만0-1세)
  - 이가 나기 전의 영아는 수유 후 가제 손수건에 끓였다 식힌 물을 살짝 적셔 잇몸을 닦아줌.
  - 이가 나기 시작하면 손가락 칫솔 등에 영아용 치약을 묻혀 잇몸을 마사지하고 이를 닦아줌.
- 영아(만2세)
  - 칫솔을 입 안에 넣어서 겨우 닦는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이나, 영아가 스스로 양치질을 하도록 격려하고 뒷마무리는 교사가 도움을 줌. 이때 개인차를 고려하여 도움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 칫솔과 양치컵은 사용 후 깨끗이 헹구고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건조시켜 매번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양치컵은 개별 영유아별로 사용함.

교사

- 칫솔과 양치컵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면담으로 확인

궁금해요

Q. 영유아의 이 닦기를 할 때 반별로 1-2개의 양치컵을 공동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A. 어린이집에서는 점심식사 후 영유아가 이 닦기를 하여 충치 예방 등 건강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닦기 후에는 칫솔과 양치컵을 깨끗이 헹구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건조시켜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1-2개의 양치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청결이 미흡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유아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해 줄 경우 휴지 등으로 충분히 닦고, 사용한 휴지 등은 즉시 휴지통에 넣어 2차 오염을 방지함.
- 배변 실수한 영유아의 뒤처리를 해 줄 때에는 가능한 물로 씻기고 여벌옷으로 갈아입힘.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기저귀는 항상 기저귀 갈이대나 화장실 등 지정된 공간에서 갈아줌.
-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는 영아의 엉덩이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줌.

3-3-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걸리기 쉽고, 몸이 아파도 자신의 증세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를 주변 성인에게 명백히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일과 중 수시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3-2-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기록	□Y □N
3-3-2-②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한다.	관찰, 면담	□Y □N
3-3-2-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한다.	관찰, 기록	□Y □N
3-3-2-④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관찰, 면담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4개 평가요소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3-2-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있을 때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어린이집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①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②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 해당 처리절차에는 영유아의 상해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교직원 업무분장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의 예
* 참고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5)

-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원장이나 주임교사에게 보고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치한다.
  -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의 경우
    ·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 등이 보살피며 쉬도록 해주거나 보육실의 한쪽 공간에서 자주 쉴 수 있도록 보호한다.
    ·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등)에서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투약의뢰 관련 기록에 근거하여 투약한다.
  - 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경우
    · 부상 종류(긁힘, 멍, 물림, 화상 등)와 정도에 따라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질식, 심한 부상 및 출혈, 충격, 이물질로 인한 응급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 119 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어린이집 이름, 반 이름, 도로나 거리명 등)
- 응급상황의 내용(무의식, 무호흡, 안전사고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원수 및 상태
- 영유아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등)
- 필요한 도움 등

궁금해요

Q.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즉,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교직원의 역할을 문서화하여 항상 숙지하고, 상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참고문헌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시설 응급처치 매뉴얼(중앙보육정보센터, 2008)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5)
- 2015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행동 매뉴얼(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5)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서울특별시, 2016)
- 2017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7)

3-3-2-②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한다.

- 교사는 매일 아침 등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콧물, 눈곱, 발진, 기분상태 등)를 눈으로 살펴보고, 필요 시 이마의 열을 짚어보거나 영유아에게 직접 묻는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
- 교사는 등원하는 영유아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보호자의 전언(전화, 알림장 등)으로 확인함.
- 교사는 일과 중 평소와 다른 모습(예 :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처지거나, 힘들어하거나, 움직임이 느리거나, 활동 중 조용히 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과도하게 흥분해있거나, 피곤해서 또래와 쉽게 다투거나, 울고 보채는 등)을 보이는 영유아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봄.
- 교사는 지치거나 과도하게 놀이에 몰입하여 피곤한 경우 등 휴식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을 경우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사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아픈 영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봄.

- 질병으로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있을 경우, 교사는 즉시 영유아의 증상과 어린이집에서의 처치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지침에 따라 조치함.
  - 감기 초기 등 아픈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귀가조치하지 않는 경우, 하원 시 알림장에 적거나 전화를 통하여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림.
  - 이미 발병하여 약을 가지고 등원한 영유아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을 경우, 즉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증상을 전화로 알림.
- 교사는 매일 일과를 끝내고 하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눈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이마의 열을 짚어보거나 영유아에게 직접 묻는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

원장, 교사

- 아픈 영유아가 발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호자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 영유아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가?

3-3-2-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한다.

-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함.
-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보관방법(상온, 냉장보관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보관함.
- 투약한 내용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보고함.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 관련 기록이 있음.
  - 투약의뢰 시에는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시간(횟수), 의뢰자가 기재되어야 함.
  - 투약보고 시에는 투약 여부, 투약자(확인)가 기재되어야 함.
    - ※ 투약의뢰 및 투약보고는 알림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3-2-④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약품(또는 구급상자)을 구비하고 있음.
- 견학, 산책 등의 실외활동 시 지참할 비상약품 등을 별도로 구비하여 활용함.
- 어린이집에 구비되어 있는 모든 약품에는 종류별로 사용(유효)기한이 표기되어 있음.
- 구비되어 있는 모든 약품은 사용(유효)기한 내에 있음.

구급상자에 갖추어야 할 내용물의 예 * 출처 :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중앙보육정보센터, 2008)

의료용 재료	외용제	주의 사항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등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어린이집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

- 어린이집 내에 견학, 산책 등의 실외활동 시 지참할 비상약품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가?
- 실외활동 시 비상약품을 지참하는가?

3-3-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영유아기는 건강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건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 역시 스스로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교직원을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3-3-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기록	□Y □N
3-3-3-②	영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관찰, 기록, 면담	□Y □N
3-3-3-③	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록	□Y □N
3-3-3-④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기록, 면담	□Y □N
3-3-3-⑤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면담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 5개 평가요소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3-3-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 모든 원아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확인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실시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내역으로 확인 가능함.
  -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신체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 등으로 갈음하여 비치할 수 있음.
- 모든 원아의 응급처치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음.
- 응급처치동의서에는 필수기재사항(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의료기관, 보호자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 응급처치 관련 동의는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활용하여 기록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 연령별로 부여된 주기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부모로부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 신입원아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전 영유아의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함.
  - 추가 검진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영유아검진기관 전문의 확인필)를 보관하여야 함.

궁금해요

Q.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하였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에 원장은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건강검진 서류나 응급처치동의서 등 원아 개별 문서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유아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는 전체 영유아에 대해 구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사례처럼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원의 10% 이내 미구비한 경우는 감안하여 평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3-② 영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영유아

- 일과의 일상적 양육 및 보육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건강·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함.
  - 특히,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대집단이 아닌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짐.
    - 예 : 바깥놀이, 손 씻기와 이 닦기, 수면, 편식하지 않고 먹기, 청결한 몸 관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

- 건강·영양 관련 주제로 보육활동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특히,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일과의 일상적 양육을 통해 건강·영양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관찰일지 등).

교사

- 일과 내에서 영유아에게 건강·영양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 일과 중 관련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 영아(만0-1세, 만2세)에게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건강·영양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건강·영양 교육

- 영유아가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사주도형 집합 전달 교육을 하기 보다 보육활동 내에서 교육적 기회와 경험이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야 함.
  - 예를 들면, '건강한 나의 몸'이라는 주제로 보육활동을 계획, 실행할 때, 영유아의 연령, 흥미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자료를 적합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손 씻는 방법에 대한 사진을 보며 손을 깨끗이 씻어보기, 치아 그림이나 모형을 활용하여 이 닦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여러 가지 음식 모형을 이용해 새로운 음식에 대해 탐색해보기 등

교직원

- 모든 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조리원 등
  - 내용 :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 실시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을 위한 교수 및 지도방법 등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종일제 보육교사란?

-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를 말함.

* 반을 맡고 있지 않으나, 담임교사로 등록된 보육교사 포함.

교사

-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영양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 건강·영양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 건강·영양 교육을 받고 영유아 보육과정 운영이나 일상생활 지도에 어떻게 적용해 보았는가?

3-3-3-③ 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교직원의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하고 있음.
  - 대상 : 미임용 보육교직원 중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파견자 등

    ※ 임용된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은 기본사항에서 확인함.

3-3-3-④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리수칙이 문서화되어 있음.
- 관리수칙에는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①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예 : 수두, 볼거리, 홍역, 수족구, 독감, 뇌염 등)의 증상
  ② 등원하지 않아야 할 감염병의 종류와 기간
  ③ 영유아나 교직원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증상 및 예방, 대처방법(어린이집 등원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안내한 자료가 있음.

원장, 교사

- 부모가 감염병에 걸린 영유아를 등원시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영유아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 교사 자신이 감염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3-3-3-⑤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원장, 교사

- 어린이집은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 어린이집은 교직원의 보육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온라인 전문상담 서비스 등)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가?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방법의 예

- 정신건강 관련 교육 참여(예 : 직무스트레스 관리, 인성 및 감성 체험 교사 연수 등)
- 직무스트레스 해소 기회 제공(예 : 직원회식, 단체소풍, 동호회 지원, 연수 등)
- 온라인 전문상담 서비스 안내 등

※ 어린이집 자체 실시 또는 유관기관(예 :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등) 프로그램 활용 가능.

궁금해요

Q. 교직원들에게 안내할 만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교육이나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직원 전문상담(심리상담) 서비스
- 한국보육진흥원 : 보육교사 인성교육(마음성장프로젝트)
-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건강센터 :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3-4 등·하원의 안전

어린이집에서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영유아는 성인의 안전한 보호 하에서 어린이집 일과를 즐겁게 경험하고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 시 어린이집과 지정된 보호자 간에 영유아의 인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인계절차와 관련 규칙을 수립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일과 중 상시 모든 영유아를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공간 이동이나 일과 전이 시에는 영유아 안전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가능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예: 등·하원이나 견학 등)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요건을 갖춘 운전자 및 책임 있는 성인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2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하며, 하루일과 중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와 차량운행 안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표 3-4. 등·하원의 안전

평가항목		결과
3-4-1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Y □N
3-4-2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적 합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개선필요	2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0개

※ 각 평가항목은 하위 평가요소의 'Y' 개수 충족여부로 평정

3-4-1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가 하루일과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수의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시간의 혼잡한 틈에 안전사고(예 : 미아, 유괴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를 인계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지켜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일과 중 항상 상황을 주시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4-1-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관찰, 기록, 면담	□Y □N
3-4-1-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다.	기록	□Y □N
3-4-1-③	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한다.	관찰	□Y □N
3-4-1-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한다.	관찰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4개 평가요소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4-1-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어린이집 등·하원 시 모든 영유아(차량 이용 영유아 포함)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함.
-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에는 사전에 보호자와의 통화나 서명으로 미리 확인을 받음.
- 혼자 등·하원하는 영유아가 없음.

-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귀가동의서 내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 포함 가능함.
- 규정에는 아래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①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예 : 등·하원용 차량 이용,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데리고 등·하원 등)
  ②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성인)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③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는 내용

원장, 교사

- 하원 차량 운행 시,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 보호자가 영유아를 혼자 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 영유아가 혼자 등·하원하는 사례가 있는가?

3-4-1-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다.

- 모든 원아의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음.
- 귀가동의서에는 필수기재사항(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귀가동의는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활용하여 기록 가능

3-4-1-③ 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한다.

- 보육실 환경은 교사가 전체 영유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교사는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한 많은 영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함.
- 교사는 일부 영유아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기적으로 전체 영유아를 살펴보는 등 전체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 영유아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보육실 밖으로 나갈 때는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고, 영유아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살펴봄.
  - 돌연사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함.
  - 산책이나 견학 등을 위해 영유아와 함께 어린이집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영유아가 교사의 보호 하에 있도록 유의하여 살펴봄.
  - 영아(만0-1세, 만2세)의 경우, 기저귀를 갈거나 우유를 타는 등 특정 행동에 몰두해 있을 때에도 자주 모든 영아를 살핌.
- 교사는 장소나 일과가 바뀔 때마다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가 안전한지 확인함.
  - 일과를 시작할 때, 전이활동 후, 보육실에서 유희실, 화장실 등으로 이동 시,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였을 때 등

3-4-1-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한다.

- 교사는 영유아만 남겨두고 활동공간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음.
- 교사가 등·하원 지도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활동공간에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나 다른 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움.

3-4-2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어린이집에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즉, 차량 내부에 영아용 보호장구 등을 설치기준에 맞게 구비하고, 매일 안전점검을 통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성인이 동승하며, 차량기사와 동승한 성인보호자는 차량 승·하차와 이동 과정에서 모든 영유아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호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4-2-①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영아용 보호장구,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를 구비하고 있다.	관찰	□Y □N
3-4-2-②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록	□Y □N
3-4-2-③	차량 운행 시 성인이 동승한다.	관찰, 면담	□Y □N
3-4-2-④	차량기사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관찰, (면담)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Y로 평정
- 4개 평가요소 중 4개를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3-4-2-①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영아용 보호장구,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를 구비하고 있다.

- 등·하원용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음.
  - 안전수칙에는 운전자 및 동승교사의 차량운행 관련 준수사항, 영유아 안전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차량 내부에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가 구비되어 있음.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충분함.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아용 보호장구와 개별 안전띠는 파손된 부분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단,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에 한해 W3 제품을 사용 가능함.
- 차량 내부에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모든 소화기의 안전핀이 빠져 있지 않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 차량 내부에 사용(유효)기간 내 약품이 들어있는 구급상자가 구비되어 있음.

등·하원용 차량이란?

- 등·하원용 차량은 등·하원용으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소유 차량, 지입 및 대여 차량도 모두 포함됨.

차량 안전 수칙의 예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웹진 홈페이지

차량안전수칙

- 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점검
    - · 차량 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차량 시동 후 엔진 및 각종 계기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지 확인한다.
    - ·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한지 확인한다.
    - ·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지 확인한다.
  - 차량 운행
    - · 영유아가 모두 탑승할 때까지 같은 차선의 뒤에 오는 차량이나 반대 방향의 차선에 있는 차량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 · 차량 출발 전 모든 탑승자의 개별 안전띠 및 문단속을 확인한다.
    - · 차량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장난치는 영유아, 창문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미는 영유아는 주의시킨다.
    - · 운전자는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 · 운전자는 운행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 차량 정차는 후방의 차량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곳에 한다.
    - · 영유아가 하차할 때에는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일어서지 않도록 지도한다.
    - · 차량을 출발 또는 후진시키기 전에 차량 앞, 옆, 뒤에 넘어지거나 횡단하는 영유아가 없는지 확인한다.
    - · 하차한 영유아가 모두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출발한다.

- 동승교사 준수사항
  - 차량 운행 준비
    - · 차량에는 탑승하는 영아의 수만큼 영아용 보호장구를 갖춘다.
    - · 차량 내 구급상자의 모든 약품의 사용(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 차량 내 비상소화기의 충전상태를 확인한다.
  - 차량 운행
    - · 차량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교사가 반드시 탑승한다.
    - · 교사는 차량에 영유아가 차례로 탑승하도록 한다.
    - · 탑승한 영유아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사 자신도 안전띠를 착용한다.
    - · 운행 중에는 영유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차량이 멈춘 후에 안전띠를 푼다.
· 차량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차량이 멈추면 교사는 먼저 하차하여 영유아가 차례로 하차하도록 도와준다.
· 교사는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 영유아는 항상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한다.
· 출발하기 전에 차량 앞, 옆, 뒤에 넘어지거나 횡단하는 영유아가 없는지 확인한다.
· 차량 운행을 종료할 때에는 차 안에 남겨진 영유아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영유아 준수사항**
· 의자에 등을 대고 바른 자세로 앉아 개별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 차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 유리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는다.
· 앞좌석을 발로 차지 않는다.
· 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한다.
· 차가 달리고 있을 때에는 차 문을 열지 않는다.
· 차에서 내릴 때에는 차가 완전히 멈춘 후 동승자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

참고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의 올바른 선택방법

1.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

2.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선택 방법은?

1) 먼저 통학차량의 승객석 안전벨트 종류를 확인한다.
   (Ⓐ 2점식 안전벨트 Ⓑ 3점식 안전벨트)
2) 확인된 안전벨트 종류에 맞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선택한다.
   Ⓐ 2점식 벨트 → W2
   Ⓑ 3점식 벨트 → W1, W2
3) 안전인증(KC)된 제품인지 확인한다(안전인증서, 인증번호).
4) 제품 사용설명서를 설치 전 자세히 읽어보고, 안전하게 장착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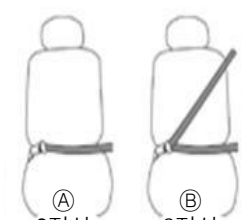

3.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
00000000

2011년 이전에 실시한
공산품 안전인증 마크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7항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사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 검사기준

구 분	체중 범위(kg)
W1	10kg 미만
W2	9kg ~ 18kg 이하
W3	15kg ~ 25kg 이하
W4	22kg 이상

※ '영아용 보호장구'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중 영아의 체중범위에 해당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을 선택, 사용하여야 함.

3-4-2-②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차량별로 안전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음.
- 운전자가 매일 차량 안전 상태를 점검한 기록이 있음.

3-4-2-③ 차량 운행 시 성인이 동승한다.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함.

원장, 교사

- 차량 운행 시 동승하는 성인은 누구인가?
- 차량 운행 시 동승하기로 예정된 성인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는가?

3-4-2-④ 차량기사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차량에 탑승한 교사(성인)와 모든 영유아는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함.
- 탑승 교사(성인) 및 영유아가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 후 차량이 출발함.
-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운전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함.

-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함.
- 차량에 탑승한 교사(성인)는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함.

원장, 교사

-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발견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면담으로 확인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영유아와 교직원이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영유아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령 등 발달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업무분장을 갖추고, 평상시 교직원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와 안전설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교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 영유아가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교직원 및 시설 보험에 가입하여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사고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하며,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등을 평가한다.

지표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평가항목		결과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Y □N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Y □N
3-5-3	영유아, 교직원 및 시설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적 합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 3-5-1 ~ 3-5-2 평가항목은 하위 평가요소의 'Y' 개수 충족여부로 평정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합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소방훈련 등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일과 중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계절이나 날씨에 맞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5-1-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록, 면담	□Y □N
3-5-1-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다.	기록, 면담	□Y □N
3-5-1-③	영유아가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관찰	□Y □N
3-5-1-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관찰, (면담)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4개 평가요소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5-1-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연간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주기)을 준수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함.
  - 영아의 경우, 대집단 활동이나 교사주도의 활동보다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
    ※ 영아의 경우는 만2세반 위주로 평정함.

교사

-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으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 (기록된) 안전교육을 통해 유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익히게 되었는가?
-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인가?
-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영유아 안전교육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는 다음과 같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 예방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 대비·대피요령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안전교육

- 유아(만3-5세)
  - 안전교육이 강사주도형 집단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유아들이 직접 모의상황에 참여하는 대·소집단 활동이나 역할극,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됨.
  - 안전교육의 내용은 지식 전달보다는 유아의 대처행동 능력을 직접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내용임.
  - 안전교육의 수준은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평이함.
- 영아(만0-1세, 만2세)
  - 대집단 활동이 아닌 소집단이나 개별 활동의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
  - 영아의 안전교육은 일과 중 영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고 있음.
  - 안전교육의 내용은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일상적인 양육활동이나 놀이 활동 시 일어난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룸.

궁금해요

Q. 영아에게는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경우에도 대집단 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대집단 활동이나 교사주도의 활동보다 영아의 개별적 요구,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놀이 시 쌓기영역에 횡단보도를 구성한 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과 중 영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계획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http://www.csia.or.kr)「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궁금해요

Q.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지표는 어떻게 평정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항목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종류), 실시주기를 평정하며, 영아의 경우는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만2세반 위주로 평정합니다.

3-5-1-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다.

- 영유아가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월 1회 이상 있음.
  - 소방대피훈련 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건물 외부로 대피함.
    ※ 지진 등 재난대피훈련도 포함 가능

원장, 교사

- 소방대피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비상벨이 울릴 때 영유아의 반응은 어떠한가?

연령별 소방대피훈련 실시 방법

- 유아(만3-5세)
  -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대피로와 비상구 및 비상계단(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 후 약속된 지점(건물 외부)에 모이도록 함.
- 영아(만0-1세, 만2세)
  - 영아들에게도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인들이 손을 잡고 도와주거나, 잘 걷지 못하는 영아의 경우 성인이 안고 정해진 대피로를 따라 신속하게 건물 외부로 대피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궁금해요

Q. 소방대피훈련을 할 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로 나가야 하나요? 영아들이 어려서 외부까지 나가기가 어려워요.

A.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여 교직원과 영유아의 대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실제 비상상황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외부까지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서는 소방대피훈련이 반드시 월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날씨, 행사 등을 고려하여 훈련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방대피훈련 절차와 방법

○ 가상으로 화재 발생지점을 설정한다.

※ 대피훈련 시마다 화재 발생지점을 다르게 설정하여 어느 장소에서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를 목격한 교사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린다.

○ 원장(또는 신고 담당 교사)은 사이렌이나 경보벨을 울려 각 반에 화재사실을 알린 후, 신속하게 119에 모의 신고한다.

○ 구급 담당 교사는 구급함(비상약품)을 들고 대피한다.

○ 영유아들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낮게 숙이고 교사의 인솔에 따라 비상대피로를 통해 이동한다. 이때 어린 영아는 교사가 안고 대피한다.

○ 대피장소(건물 외부)에 모여 인원점검과 화재상황을 체크한 후 보육실로 이동한다.

○ 소방대피훈련이 끝난 후에는 소방대피훈련 일지를 작성하며,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 대피훈련 시 반영하도록 한다.

화재 발생 시 교사의 역할

유형	교사의 역할
신고반	소방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함
방호·복구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
대피반	화재의 발생 위치에 따른 다양한 대피 경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 손전등과 각 반 영유아의 명단을 지참하고 대피한 후 모든 영유아의 대피 여부를 확인함
구급반	상비약을 지참하여 대피하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함
구조반	대피하는 영유아의 마지막에 따라 나오면서 남아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함

※ 소방대피훈련 및 비상시 업무분담표 구성 시, 상기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3-5-1-③ 영유아가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기구를 정해진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거나 안내를 해주는 방법으로 지도함.
- 교사는 영유아가 놀잇감을 던지거나 모래를 또래에게 뿌리는 등의 위험행동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함.
- 교사는 영아(만0-1세, 만2세)가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위험하게 사용하지 않는지 항상 주시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함.

3-5-1-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교사는 실외활동을 하는 영유아에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의 예

- 여름철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시간을 피해 실외활동 시간을 조정하도록 함.
-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영유아가 모자를 쓰거나 차양막 또는 그늘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함.
-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 영유아가 바깥놀이나 물놀이를 장시간 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
-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 산책을 할 경우 영유아는 필요에 따라 우산, 비옷, 장화 등을 갖추고 있음.
- 추운 겨울날 바깥놀이를 할 때 영유아는 따뜻한 겉옷과 장갑 등을 갖추고 있음.
-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신체활동으로 대체함.

원장, 교사

-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 바깥놀이를 나갈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는가?
-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어떻게 조치하는가?
  ※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면담으로 확인

3-5-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지침과 업무분장이 수립되어 있으며 모든 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시설 및 소화기 등의 설비를 적절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직원 중에는 응급사태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안전하게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요소		평가방법	결과
3-5-2-①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기록, 면담	□Y □N
3-5-2-②	교직원은 안전관리 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면담	□Y □N
3-5-2-③	비상시 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3-5-2-④	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	기록, 면담	□Y □N
3-5-2-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한다. 필수	기록, 관찰, 면담	□Y □N
충족여부	□ Y □ N	합 계	총 개

항목 평정기준

5개 평가요소 중 4개 이상(요소 5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3-5-2-①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안전교육 : 종일제 보육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원장, 교사

-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후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 등재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적극 활용

  ※ 어린이집 등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가능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이므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원장, 교사(보조교사 포함) 이외에 조리사(조리원), 차량기사, 사무원 등 임용된 기타 보육교직원도 모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또는 자체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3-5-2-② 교직원은 안전관리 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원장, 교사

- 지금 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가?
-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 비상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여는가?
- 비상시에 영유아용 미끄럼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평소 이를 위해 어떤 훈련을 하는가?

3-5-2-③ 비상시 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 어린이집에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비상시 대처방안에는 필수기재사항(비상사태를 대비한 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 대피요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원장, 교사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분장된 업무 중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 화재 발생 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궁금해요

Q. 업무분장표와 비상시 역할분담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업무분장표는 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반면 비상시 역할분담표는 화재나 재난,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궁금해요

Q. 매월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실행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도, 비상시 대피요령이 별도로 있어야 하나요?

A. 대피요령은 화재,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전반을 대비한 행동지침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방대피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대피과정의 일부 사례일 뿐 대피요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대피요령은 별도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 비상시 대피요령은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을 참고하여 교직원의 역할분담표와 함께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재난별 대피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참고

비상시 대처방안 관련 서식의 예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보육교직원 업무분장

담당	일반 업무 내용	환경정리 구역	비상 시 업무 내용
원장	예시) • 원의 전반적인 교육 및 운영 계획 / 견학 및 행사계획 • 업무분장, 감독, 근무평정 등 업무관리 • 시설설비 및 재정 관리 / 운영 및 교육 정보 수집	전체 청소, 구역 관리	
교사 공통	예시) • 보육활동 진행 및 준비 / 보육일지 작성 • 각 보육실의 환경 구성 및 청결 관리 / 학부모 상담 • 영유아에 대한 관찰 일지 및 보고서 작성	담당 교실 관리	
000	예시) • 영아반의 전반적인 교육내용 관리 • 연간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 작성 • 원아 관리 및 관찰지도 / 소모성 교재 점검 및 신청	- 계단 청소	
000	예시) • 입학상담 및 자원봉사자 담당 / 위생 소독 • 식단표작성 및 주문 담당 / 화분 관리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수건 관리	
000	예시) • 시청각 기자재관리 (O.H.P, 빔프로젝터, 비디오 카메라 등) • 안전관리(소화기 점검), 비상 대피 훈련 담당	- 외부 청소	

비상시 대피요령

- 침착하게 대처한다.
- 총지휘자에게 보고한다.
- 119 등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
- 교직원은 비상시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한다.
- 원아를 신속하게 인솔해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 남은 원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영유아들을 안정시킨다.

※ 비상시 대처방안 중 비상대피도는 별도 마련 필요

3-5-2-④ 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증(또는 자격증)이 있음.
  - 교육과정 내 실습이 포함되어 있음.
    - ※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 단,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함.

교육참여자(원장, 교사 등)

- 교육받은 내용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가?
-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 영유아 질식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3-5-2-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한다. (필수)

-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음.
-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 마련 시 아래의 참고문헌을 활용하도록 함.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교육부·보건복지부, 2016)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보건복지부, 2016)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 어떠한 경우에도 교직원이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음.

체벌의 범위

- 훈육의 목적으로 성인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에게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것
  - 예 : 때리거나, 꼬집거나, 약하게 깨무는 행위 등

원장, 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예 : 멍, 상처 등 신체적 상흔, 무단 결석,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가?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의 예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구분	내용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함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추행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학대의 징후

구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 학대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등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등
정서 학대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등
성학대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등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등
방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등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등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등에 신고하여야 함(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고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신고내용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3-5-3 영유아, 교직원 및 시설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1 관련 법률에 규정된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관련 법률에 규정된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집단 급식소로 등록된 어린이집)은 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어린이집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은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어린이집은 교직원을 위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증빙 확인 자료 : 모든 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증서, 정보공시 등

  ※ 모든 어린이집에서 가입하여야 하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화재공제(보험)의 가입 여부는 기본사항에서 확인함.

어린이집 보험 관련 법령 * 출처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7조(보험가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제5조(보험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4 교직원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대표적인 인적 환경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보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이처럼 교직원의 역량은 보육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원장은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은 개별 교사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하고 다양한 자료와 설비 등을 마련하여 교직원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처우 및 복지를 제공하여 직무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충족될 때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영유아에게 보다 우수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 영역은 총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원장이 협력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린이집에서 교직원이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교직원에게 적절한 처우와 안정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영역 4. 교직원

평가지표	
4-1	원장의 리더십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영역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지표 중 '우수' 지표가 2개 이하
개선필요	4개의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어린이집은 D등급(불인증)

4-1 원장의 리더십

원장의 리더십은 교사로 하여금 보육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는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수록 교사의 근무지속 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는 영유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신입교사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신입교사의 보육업무를 이끌어 줄 수 있어 영유아에게 전달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어린이집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밀접한 조직으로, 원장의 리더십이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따라서 원장은 질 높은 보육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교직원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원장 자신을 포함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직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원장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지 살펴보고,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의 비율 등을 평가한다.

지표 4-1. 원장의 리더십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담	□Y □N
4-1-2	원장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며, 면담을 실시한다.	관찰, 면담	□Y □N
4-1-3	원장은 정기적인 교사회의 등을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기록, 면담	□Y □N
4-1-4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기록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4-1-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평가방법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공통) 원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 (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원장)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가?

4-1-2	**원장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며, 면담을 실시한다.**

1 원장은 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원장은 교직원의 자기계발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세미나, 연수)를 제공한다.

3 원장은 교직원과 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방법	관찰, 면담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원장은 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원장은 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교사에게 "○○ 선생님" 등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함.
  - 교사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음.

교사

- 교사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 원장은 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대하는가?

2 원장은 교직원의 자기계발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세미나, 연수)를 제공한다.

원장, 교사

- (원장) 교직원의 자기계발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한 적이 있는가? 어떤 지원을 하였는가?
- (교사) 원장으로부터 교사로서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 등을 안내받은 사례가 있는가?

3 원장은 교직원과 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원장, 교사

- (공통) 교직원과 면담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는가?
- (공통) 주로 어떤 내용의 면담이 이루어지는가?
- (교사) 가장 최근에 원장과 개별면담을 한 시기는 언제인가?
- (교사) 원장과의 면담은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4-1-3	원장은 정기적인 교사회의 등을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1 교사회의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회의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회의 내용 관련 기록이 있음.

원장, 교사

- 교사회의에서 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는가?
- 최근 교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2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직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원장, 교사

- (원장) 교사회의 등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안건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
  - 안건을 해결할 때 교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
- (교사) 원장은 안건이나 사안을 결정할 때 교사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 의견을 낸 것 중 결정사항으로 수렴된 것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4-1-4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1 평가 직전 월까지 24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평가방법	기록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평가 직전 월까지 24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 대상 : 종일제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제외)
    - ※ 출산전후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인 경우에 근무교사로 인정함.
    - ※ 개원 2년 미만 어린이집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교사가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 ※ 교사가 3인 이하인 어린이집은 2년 이상 근속 교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인정함.

종일제 보육교사란?

-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를 말함.
- * 반을 맡고 있지 않으나, 담임교사로 등록된 보육교사 포함.

궁금해요

Q.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전체 교사 중 현장평가 직전 월까지 2년 이상 근속한 교사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에 현장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10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 Y 평정됩니다.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영유아 위주로 조성되어 있다. 교사를 배려한 근무환경은 교사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며, 교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만족감을 높이고, 질 높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는 교사를 위해 성인용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여 불편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참고자료와 업무지원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여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하며, 교사실 및 개인사물함, 업무지원 자료 및 설비, 성인용 화장실 마련 등을 평가한다.

지표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4-2-1	교사실과 개인사물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관찰	□Y □N
4-2-2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료 및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관찰	□Y □N
4-2-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적 합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4-2-1 교사실과 개인사물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1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2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개인사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인정)

①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어린이집 내에 교사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활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교사실)이 마련되어 있음.
  - 교사실은 영유아 활동공간과 분리된 공간으로, 업무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 사용함.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실내 공간에 교사용 책상을 두는 것도 인정함.

②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③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탁자나 휴식용 의자, 쿠션 등이 마련되어 있다.

-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어린이집 실내 공간(예 : 교사실, 베란다, 조리실 등)에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탁자나 휴식용 의자, 쿠션 등이 마련되어 있음.

2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개인사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이 마련되어 있음.
  - 보육실이나 교사실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되어 있음.
    - ※ 사물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해두는 경우는 개인사물함으로 평정하지 않음.

4-2-2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료 및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1 교사용 참고자료를 연령별,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2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지원 설비(컴퓨터, 프린터 등)가 마련되어 있다.

3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장애영유아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용 참고자료를 연령별,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 교사용 참고자료가 총 30권 이상 구비되어 있음.
  - 연령이나 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
    ※ 전문도서 이외에 시청각 자료도 포함됨.
- 자료실이나 교사실 등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언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음.

교사용 참고자료의 예

- 보육계획과 보육활동, 놀이, 영유아 생활지도, 아동발달, 심리, 부모교육과 상담 등 보육 관련 전문 자료
- 교사가 보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예 : 표준보육과정, 누리 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영상자료 등)
- 보육환경 구성 관련 자료집 등

※ 연령별 프로그램 자료 등 세트로 구성된 자료는 1권으로 평정함.

2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지원 설비(컴퓨터, 프린터 등)가 마련되어 있다.

-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음.
-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카메라, 캠코더, 빔 프로젝터, OHP 등 보육업무에 필요한 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 보육실이나 교사실, 자료실 등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3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 및 발달 수준에 맞는 진단·평가 도구 및 자료가 3종 이상 구비되어 있음.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함.

장애영유아 교육진단·발달평가 도구 및 자료의 예

- **선별도구** : 한국덴버발달검사, 유아용 발달 선별검사, ASQ부모작성형 유아모니터링체계, 한국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한국영아발달검사, 한국유아발달검사 등
- **진단도구** : 베일리영아발달검사, DTVP, VMI, Frostig 시지각발달검사, 한국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 등
- **교육과정에 기초한 검사** : 0-3세 캐롤라이나 교육과정, 3-6세 캐롤라이나 교육과정,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서, AEPS 등
- **수행평가자료** : 활동결과물 분석, 일화기록, 사진 및 동영상 분석 자료 등

4-2-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1 부모, 방문객,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2 영유아용 화장실 내에 성인용 변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평가방법	관찰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 또는 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부모, 방문객,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부모와 교직원 등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에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2 영유아용 화장실 내에 성인용 변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어린이집 내 화장실이 1개인 소규모 어린이집(정원 20인 이하)의 경우, 평정 제외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교사는 부모와 더불어 영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으로, 교사가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을 때 근무의욕이 향상될 수 있다. 교직원의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복무규정)을 통해 교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교사는 적절한 처우와 재교육, 기타 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을 때, 직무만족도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 보람, 소속감, 근무의욕 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보수, 근무시간, 업무량, 연차 휴가 등 적절한 처우와 교육 훈련의 기회, 기타 후생복지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직원들이 직무만족감과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가지고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보육활동과 질 높은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지표는 3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하며,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 수립과 준수 여부,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한다.

지표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4-3-1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4-3-2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4-3-3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3개
적 합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2개
개선필요	3개의 평가항목 중 'Y' 개수가 1개 이하

4-3-1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1 모든 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3개의 평가기준(1~3)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모든 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모든 교직원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상호 날인함.
  - 대상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원장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됨.

원장, 교사

- 근로계약 갱신은 언제 하는가?
- 근로계약에 대한 동의와 확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

-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교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3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취업규칙(복무규정)은 교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교직원에게 회람하여 내용을 공지하고 있음.
  ※ 취업규칙(복무규정)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교사

- 취업규칙(복무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취업규칙(복무규정)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의 예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복무의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상황(출근, 결근, 외출 등), 퇴직, 퇴직급여 등
  ※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안) 참고

4-3-2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1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직원의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준수함.
  - 보수 관련 규정에는 임금, 경력,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원장, 교사

- (원장) 교사의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였는가?
- (교사)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는가?
- (교사) 규정에 준하여 지급받고 있는가?

급여 관련 확인 자료

- 근로계약서, 교직원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확인 서류 등

4-3-3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교직원의 복지 제도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직원의 복지 제도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음.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교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 골고루 제공됨.

원장, 교사

-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가? 어떤 제도인가?
- 어린이집의 복지 혜택이 전체 교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예

- 출산전후휴가, 연차, 포상휴가, 상여금, 명절 선물, 교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철학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은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원은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지속적인 재교육,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제언 등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맡은 업무와 영유아발달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고, 최신 교수방법 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교직원으로서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지표는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정한다. 신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가 제공되는지, 교사의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 근무평가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지표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
4-4-1	신규 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4-4-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4-4-3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4-4-4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록, 면담	□Y □N
합 계			총 개

지표 평정기준

우 수	4개의 평가항목 중 'Y' 충족개수가 3개 이상
적 합	4개의 평가항목 중 'Y' 충족개수가 2개
개선필요	4개의 평가항목 중 'Y' 충족개수가 1개 이하

4-4-1 신규 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1 모든 신규 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모든 신규 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신규 교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문서로 구비하고 있음.
- 신규 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기록(예 : 운영일지 등)을 관리하고 있음.
  - 대상 : 신입교사, 대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예 :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운전자 등), 보육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교사

- 신입교사 등 신규 교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가?

신규 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의 예

대상	내용
신입교사 (대체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포함)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 목표, 보육과정의 내용, 프로그램 특성, 직무에 관한 설명, 고용과 관련된 조건과 용어들에 대한 설명,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지침,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방법, 아동학대 예방 등
보육실습생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 보육과정의 내용, 프로그램 특성, 보육실습생의 역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침,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방법, 아동학대 예방 등
자원봉사자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 자원봉사자의 역할, 근무 내용,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침,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방법, 아동학대 예방 등

4-4-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 교사의 경력을 고려한 연간 교사교육(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모든 교사에게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2개의 평가기준(1~2)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의 경력을 고려한 연간 교사교육(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연간 교사교육 계획이 교사의 경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음.
  - 직무교육과 기타 다양한 재교육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

원장

- 연간 교사교육 계획 수립 시 어떤 점을 고려하는가?

2 모든 교사에게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원장과 교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음.
  - 증빙서류 :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증,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경력증명서 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교육에 한함.
-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이 1회 이상 이루어진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내용 : 보육, 아동발달 등에 관한 다양한 재교육

※ 직무교육은 다양한 재교육으로 중복 인정 안 됨.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교육(학회, 워크숍,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 온라인 교육 등

※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 및 실시 현황 등은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을 활용하여 기록 가능

※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기록 확인

원장, 교사

- 가장 최근에 직무교육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가?
- 어떤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가장 최근에 참석한 재교육은 언제이며, 어떤 내용이었는가?

보육교직원 교육 관리 관련 서식의 예 * 출처 :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보육교직원 교육 관리

1.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

분기	교육구분	교육명	대상	비고
1분기	신입교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직무교육			
2분기	승급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3분기				
4분기				

2. 교육 결과(참석 및 이수 현황)

교육구분	교육명 (주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내용(강사)	비고 (수료증 및 교육자료 수령 여부 등)
신입교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교사 건강·영양 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 수령
표준보육과정 등 교육					
· ·					

4-4-3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1 교사의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진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의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진다.

✎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나 경력교사, 외부전문가가 보육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관찰한 후 이에 대해 지도함으로써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야 함.

- 교사별로 상호작용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 및 지도 관련 기록이 연 1회 이상 있음.
  - 대상 : 반을 맡고 있는 종일제 보육교사
  - 관찰 및 지도 관련 기록에는 필수기재사항(일시, 관찰자, 보육주제 및 실시된 보육활동, 관찰내용, 평가 및 지도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 교수법 관찰 및 지도는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을 활용하여 기록 가능
    -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원장, 교사

-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 관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 관찰과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 관찰 후에 관찰내용에 대한 토의 및 지도시간이 있는가?
-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 관찰 시 어떤 내용을 지도 받았는가?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 관찰 시 고려사항

- 원장 또는 경력교사를 중심으로 멘토교사 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멘토링을 실시함.
-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의 관찰은 보육활동 및 놀이 진행, 교사의 상호작용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짐.
- 관찰을 위하여 일과표, 관찰항목(예 : 교사 상호작용 등)을 준비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함.
- 관찰 후에는 토의 및 지도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며, 이때는 멘토와 멘티가 교수-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수정·보완하는 단계로 진행하여, 멘토링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 관찰과 지도에 관해 기록하고 관리함.
-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보육교직원 평가 관리 서식의 예 * 출처 :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

보육교직원 평가 관리

1. 교수법 관찰 및 지도 ※ 교사 개별로 마련

교사명		담당 반(연령)	
일시		관찰자	
주제			
보육활동			
관찰 내용			
평가 및 지도 내용			

2. 근무평가 ※ 교사 개별로 마련

일시		평가자	

구분	평가내용(※원 상황에 맞게 작성 가능)	우수	보통	개선 필요
업무 태도		③	②	①
		③	②	①
		③	②	①
전문성		③	②	①
		③	②	①
		③	②	①
원아 관리		③	②	①
		③	②	①
		③	②	①
부모와의 관계		③	②	①
		③	②	①
		③	②	①
동료 관계		③	②	①
		③	②	①
		③	②	①

Tip	○개별 보육교사의 교수법 관찰 및 지도, 업무 수행 평가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보육교직원 평가 관리 내용 포함 ○원장, 경력교사, 외부전문가 등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및 놀이 진행,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고 지도한 후 기록 ○근무평가의 내용은 업무태도, 전문성, 동료관계 등 원 상황에 맞는 내용을 포함

4-4-4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	기록, 면담	충족여부	☐ Y	☐ N
✔ 1개의 평가기준(1)을 충족해야 Y로 평정				

1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교사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기록이 연 1회 이상 있음.
  ※ 교사 근무평가는 보육사업안내 서식(부록)을 활용하여 기록 가능
  ※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원장

- 교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언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가?

교사의 근무평가 시 고려사항

- 교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실행한 업무의 수준과 앞으로의 시행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료가 됨. 따라서 교사의 업무수행 평가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근무평가의 내용으로 업무태도(근태), 교사로서의 전문성, 동료관계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원장은 모든 교사가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 원장은 평가 전에 평가시기를 예고하고,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부 록

「자체점검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1

「자체점검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어린이집 정보

참여유형 / 기수		작성일	
어린이집 ID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어린이집유형		정원 / 현원	/
어린이집특성	☐ 일반 ☐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시간연장형 ☐ 휴일보육 ☐ 24시간 ☐ 일시보육		
정부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농어촌특례여부	☐ 예 ☐ 아니오
인증구분	☐ 평가인증 ☐ 공공형 ☐ 서울형 ☐ 부산형		

자체점검보고서 서식 및 작성(입력) 요령

평가지표	2-2. 실외 공간 구성

평가항목		①Y	N	②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	□	
2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	□	
3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2영역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	○	○

③ (2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2영역(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5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특장점 및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1,000자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 역		영역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	□
3	건강·안전	■	□	□
4	교직원	■	□	□
소 계		3	1	0

어린이집 등급	A	B	C	D
	○	●	○	○

1.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방법

- 작성방법

① 통합지표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항목별로 Y 또는 N에 체크합니다.

②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항목별 50자 이내)를 작성합니다.

※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 개수에 따라 지표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이 표기됨

※ 영역별 평가지표 중 '우수' 등급 지표 개수에 따라 영역등급(우수, 적합, 개선필요 중 1개)이 표기됨

③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특장점 및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여 수정·보완 및 개선되었거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개선하기 어려웠던 점, 우수한 수준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영역별 1,000자 이내)

※ 4개 평가영역의 등급 종류(우수, 적합, 개선필요) 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이 표기됨

2.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출완료] 전 [세부내역(자체점검)] 클릭 후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오류 체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때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저장하고 이전 이동]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 [제출완료] 클릭 후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완료 확인방법

  - 자체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된 경우, [나의상태]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상태]가 [참여수수료 입금 요망]로 자동 변환됩니다.
  - [제출 완료]된 최종 자체점검보고서는 [출력(자체점검)] 클릭 후 [보고서 보기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 약 서

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평가인증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보고서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와 협력하여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보고서 제출 후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방문에 동의하며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장명: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확인

○ 해당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이전 1년 동안, 아래 사항 중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공문 시행일이 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결과란에 체크한 후 반드시 행정처분 통지공문 등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관련 서류를 첨부함

  ※ 행정처분 통지공문 등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첨부함

○ 기본항목 위반사항

항목	관련기준	확인결과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항목	관련기준	확인결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평가인증 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장명:

자체점검보고서 서식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평가지표	1-1. 보육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을 반영한다.	□	□	
2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작성한다.	□	□	
3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의 목표 및 내용이 적절하며, 연계성이 있다.	□	□	
4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의 영역을 반영하여 보육활동을 실시한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평가지표	1-2. 일과 운영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계획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 일상생활 경험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	□	
2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	□	
3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	□	
4	놀이나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	□	
5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일반) 지표등급	○	○	○	
(장애) 지표등급	○	○	○	

평가지표	1-3. 교수-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주제에 적합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	□	
2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	□	
3	교사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	□	
4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를 지원한다.	□	□	
5	교사는 영유아가 다양하게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	□	
6	교사의 태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1-4.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교사는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한다.	□	□	
2	교사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한다.	□	□	
3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	□	
4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	□	
5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	
6	교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에게 자신감을 준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1-5. 영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격려한다.	□	□	
2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	
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	□	
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 시 적절히 개입한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1-6. 평가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영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기록 한다.	□	□	
2	보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	□	
3	영유아 평가결과를 보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고, 부모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	□	
4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안에 반영한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1-7. 일상생활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특별활동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	□	
2	영유아의 일상 경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화되도록 격려한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1영역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	○	○

(1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1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7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특장점 및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1,000자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평가지표	2-1. 실내 공간 구성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보육실 내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에 구성한다.	□	□	
2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	□	
3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	□	
4	계획안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자료들을 영유아의 연령 수준에 맞게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	□	
5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연령별, 주제별 또는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2-2. 실외 공간 구성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	□	
2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	□	
3	실외 공간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2-3. 기관 운영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	□	
2	개별 영유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	□	
3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	
4	예·결산서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평가지표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부모와 상호 협의 하에 어린이집을 개방한다.	□	□	
2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	□	
3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	□	
4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	□	
5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평가지표	2-5. 어린이집 이용 보장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	□	
2	종일반 및 맞춤반을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2영역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	○	○

(2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2영역(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5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특장점 및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1,000자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안전

평가지표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	□	
①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	
②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	
③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	
④	환기를 자주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	□	
⑤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	□	
2	실내외 공간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하고 있다.	□	□	
①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	
②	전기설비 및 전선줄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	
③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	
④	세면대, 정수기 등에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	□	
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는다.	□	□	
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	□	
①	보육실 내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	□	
②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	□	
③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	□	
④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	□	
4	안전시설 및 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평가지표	3-2. 급·간식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	□	
①	영유아의 연령 및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고, 식단에 따른 급·간식을 제공한다.	□	□	
②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한다.	□	□	
③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한다.	□	□	
④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한다.	□	□	
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	□	
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①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	□	
②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가 없다.(필수)	□	□	
③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보관한다.(필수)	□	□	
④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	
⑤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	
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①	조리 시 앞치마, 머릿수건,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위생화를 착용한다.	□	□	
②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	
③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	
④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다.(필수)	□	□	
⑤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	
⑥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필수)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평가지표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손 닦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	□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	□	
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	
②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한다.	□	□	
③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한다.	□	□	
④	비상약품이 용도별 (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	□	
3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	□	
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	□	
②	영유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	□	
③	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	□	
④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	
⑤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평가지표	3-4. 등·하원의 안전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	□	
①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	□	
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다.	□	□	
③	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한다.	□	□	
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한다.	□	□	
2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	□	
①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영아용 보호장구, 차량용 소화기, 구급상자를 구비하고 있다.	□	□	
②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③	차량 운행 시 성인이 동승한다.	□	□	
④	차량기사와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한다.	□	□	
③	영유아가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	
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	
2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	□	
①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	
②	교직원은 안전관리 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	□	
③	비상시 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	□	□	
④	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	□	□	
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한다.(필수)	□	□	
3	영유아, 교직원 및 시설 보험에 모두 적합하게 가입하고 있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3영역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	○	○

(3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3영역(건강·안전) 5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특장점 및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1,000자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교직원

평가지표	4-1. 원장의 리더십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2	원장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며, 면담을 실시한다.	□	□	
3	원장은 정기적인 교사회의 등을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	□	
4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4-2. 교직원의 근무환경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교사실과 개인사물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	□	
2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료 및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	□	
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	□	

지표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등급	○	○	○	

평가지표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교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	□	
2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	□	□	
3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평가지표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항목		Y	N	자체점검결과가 Y 또는 N인 사유 (항목별 50자 이내)
1	신규 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	□	
2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	
3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찰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	
4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	

지표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총 개(Y 개수)
	○	○	○	

4영역 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	○	○

(4영역) 특장점 및 개선 노력
** 4영역(교직원) 4개 평가지표에 대한 어린이집의 특장점 및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1,000자 이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 역		영역등급		
		우 수	적 합	개선필요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	□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	□
3	건강 · 안전	□	□	□
4	교직원	□	□	□
소 계				

어린이집 등급	A	B	C	D
	○	○	○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2017년 7월 인쇄
2017년 7월 발행

발 행 인 **한국보육진흥원장**
발 행 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전 화 • 1661-5666(代) 팩 스 • 02-6901-0151
인 쇄 처 **경희정보인쇄(주)** TEL. 031-907-7534(代)
I S B N 978-89-98842-19-2 13370

사전 승인 없이 안내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